

발간물 등록번호

11-1520000-000121-10

20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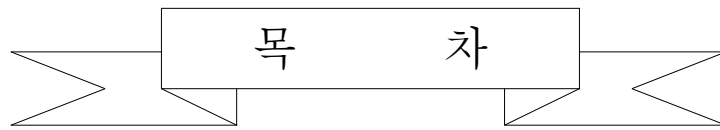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 차 보 고 서**

해 양 수 산 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의 통계 자료중 전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연도에서 정정된 것임
2. 본 보고서의 일부 통계는 사사오입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목 차

제 I 편 2006년도 수산업 동향	1
제1장 세계 수산업 동향	19
제2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28
제 II 편 2006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71
제1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71
제2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89
제3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99
제4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117
제5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130
제6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154
제7장 어업인 지원 강화	181
제8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199
제 III 편 2007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205
제1장 기본 방향	207
제2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215
제3장 어장환경 개선과 양식어업 육성	226
제4장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어촌조성	228
제5장 안전하고 품질좋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233
제6장 수산기술개발 및 성장동력의 확보	243
제7장 국제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263
제8장 WTO/DDA, FTA 협상 대응	276
제 IV 편 제도와 체제의 정비·개선	295
제1장 제도의 정비	297
제2장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및 정비	307

세 부 목 차

[제 I 편 2006년도 수산업 동향]	17
제1장 세계 수산업 동향	19
제1절 수산물 생산	19
제2절 수산물 교역	20
제2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23
제1절 어업 구조	23
1. 어가인구	23
2. 어업 총생산	25
3. 어선등록 현황	27
4. 이용어장	29
5. 어업경영체	33
제2절 어가 경제	39
1. 어가소득	39
2. 어가 가계지출	41
3. 어가자산	42
4. 어가부채	43
제3절 수산물 생산	44
1. 생산동향	44
2. 연근해어업	44
3. 양식어업	50
4. 내수면어업	53
5. 원양어업	54

제4절 수산물 수출·입	56
1. 수 출	56
2. 수 입	60
제5절 수산물 수급 및 가격	63
1. 수 급	63
2. 소 비	64
3. 가 격	65
제6절 어업 및 어장환경	66
1. 어 황	66
2. 자원동향	67
3. 연안어장 환경변화	69
 [제Ⅱ편 2006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Ⅶ
 제1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73
제1절 자율관리어업	73
제2절 수산자원 조성	76
1. 인공어초시설	76
2. 종묘방류	77
3. 바다목장 조성	79
4. 총 허용어획량제도	80
5. 수산자원관리수면	81
제3절 양식어업 육성	82
1. 양식어장 개발	82
2.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82
제4절 내수면어업 개발	84
제5절 어장정화	85
제6절 적조대책	86

제7절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88
제2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89
제1절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89
제2절 어업질서 확립	90
1.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90
2. 안전조업 지도	91
3.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92
4. 어업질서 지도홍보 강화	93
제3절 WTO/DDA, FTA 협상대응 국내대책	94
1. 추진방향	94
2. 세부추진계획	94
3. 법령 제·개정 등	96
4.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투융자계획 수정·보완	97
5. 의견수렴 및 홍보체계 정비	97
제3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99
제1절 수산물 가격안정	99
1. 정부 비축사업	99
2. 민간 가격안정사업	100
3.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100
제2절 유통구조 개선	101
1. 유통시설 확충	101
2. 유통기능 강화	101
제3절 수산물 검사	106
1. 수산물검사 강화	106
2. 검사기능 강화	108
제4절 수산물 수출·입 대책	110

1.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관리대책	110
2. 수산물 수출진흥대책	110
제5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13
1. 가공제품 생산	113
2. 가공산업 지원	114
3.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115
제4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117
제1절 어촌개발	117
1. 어촌종합개발	117
2. 어촌관광 활성화	119
제2절 어항시설 확충	125
1. 어항개발의 개요	125
2. 어항개발현황	125
제3절 어선건조 및 장비·설비 현대화	128
1. 친환경 어선건조 지원 및 안전설비 지원	128
2.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지원	128
제5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130
제1절 국제 어업협력 강화	130
1.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130
2.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138
3. 남북수산협력 추진	143
제2절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146
1. 기존 어장의 확보	146
2.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150
3. 해외 신어장 개발	151
4.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153

제6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154
제1절 어업인력 육성	154
제2절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156
제3절 해양수산교육	157
1. 해양수산교육	157
2. 해기사 양성 및 어업기술 훈련	157
제4절 해양환경 연구	159
1. 해양변동 연구	159
2. 해양환경 오염 연구	160
3. 적조대책 연구	161
4.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162
제5절 어업자원 조사연구	163
1.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163
2.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163
제6절 수산공학기술 개발	165
1.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165
2.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165
3.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166
4.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167
제7절 양식기술 개발 연구	169
1.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169
2.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169
3.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170
4.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171
5.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172
6.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173
제8절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174
1.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174
2.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174

제9절 수산기술 지도·보급	176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176
2.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177
3. 수산기술보급 관리기반 조성	177
제10절 수산특정연구개발	178
제7장 어업인 지원 강화	181
제1절 수산자금 공급 확대	181
1. 영어자금	181
2. 수협 자체자금	183
제2절 어업인 부담 경감	185
1.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185
2. 각종 이차보전	186
3.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188
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189
제3절 수산 관련 세제 개선	190
1. 수산세제 지원 연장	190
2.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190
제4절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192
제5절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195
제6절 해양수산재해 및 복구 지원	197
제8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199
제1절 일선수협 구조조정	199
1.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199
2. 부실수협 구조조정	199
3.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
4. 부실책임조사 실시	200
제2절 신용사업의 『OK ACE 0506 운동』 전개	201
제3절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202

[제Ⅲ편 2007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205
제1장 기본 방향	207
제1절 수산업의 여건변화	207
제2절 중점 추진시책	210
제3절 예산 및 자금지원	213
제2장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215
제1절 수산자원회복계획	215
1.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229
2. TAC제도 확대	230
3. 인공어초 시설	229
4. 종묘방류 및 종묘배양장 기능 조정	230
5. 바다목장 조성	229
제2절 자율관리어업	222
제3절 환경친화적 낚시관리제	222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 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215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15
1. 연근해어선 감척	229
2. 어업허가관리 강화	230
제2절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222
제3절 불법어업 근절	222
제4장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대책 마련	215
제1절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215
제2절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222
1. 영어자금 공급확대 및 대손보전기금 건전화	229
2.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229

제3절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222
1. 일선수협외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229
2. 신용사업의 BLUE 0707 1차년도 운동 전개	229
3. 수협 혁신방안 추진	229
제4절 어업보험 확충	222
1.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229
2.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229
제5장 살기좋은 어촌 모델 개발기반 구축	215
제1절 어촌어항 기초조사	228
제2절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229
1. 어촌종합개발	229
2.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및 붐 조성	230
제3절 어항인프라 지속적 확충	232
1. 국가어항	232
2.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232
제6장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15
제1절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222
1. 어업인 후계자 양성	232
2. 해기사 양성 및 수산기술 훈련	232
제2절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224
제3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225
제7장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226
제1절 국내생산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226
제2절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227
제8장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228

제1절 친환경 양식생산 228

제2절 수급조절 강화 229

제3절 어장환경 개선 232

제4절 내수면어업 육성 232

제9장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233

제1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233

제2절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235

제3절 수산물 가격안정 239

 1. 가격안정 사업 232

 2.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232

제10장 국제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233

제1절 WTO/DDA 협상력 강화 233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232

 2. FTA 추진전망 및 대응방안 232

제2절 국제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235

 1. 국제수산기구 협력 232

 2.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232

 3. 국제수산기구 협력 232

 4.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232

제3절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233

제4절 원양어업 육성 235

 1.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232

 2. 원양업체 경영지원 232

 3.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232

 4. 해외 신어장 개발 232

[제IV편 제도와 체제의 정비·개선]	295
제1장 제도의 정비	297
제1절 행정규제 개선	297
제2절 수산통계 조사 활용	300
제3절 수산관계 법령 개정·폐지	301
1. 개정	301
2. 폐지	304
3. 2007년도 입법계획	㉠
제2장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및 정비	307
제1절 배경	307
제2절 주요내용	308
1. 2006년 개편내용	㉠
2. 2007년 개편계획	㉠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311

표 목 차

〈표 1〉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20
〈표 2〉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21
〈표 3〉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22
〈표 4〉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23
〈표 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24
〈표 6〉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25
〈표 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25
〈표 8〉 어업생산 현황	26
〈표 9〉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26
〈표 10〉 어선등록 현황	27
〈표 11〉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28
〈표 12〉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28
〈표 13〉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1
〈표 14〉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32
〈표 15〉 2006년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33
〈표 16〉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34
〈표 17〉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35
〈표 18〉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36
〈표 19〉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7
〈표 20〉 2006년도 내수면어업 경영체 추이	38
〈표 21〉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38
〈표 22〉 어가소득	39
〈표 23〉 어업소득	40

〈표 24〉	어업외 소득	40
〈표 25〉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40
〈표 26〉	가계지출	41
〈표 27〉	소비지출	41
〈표 28〉	비소비지출	42
〈표 29〉	어가자산	42
〈표 30〉	어가부채	43
〈표 31〉	어업생산 현황	44
〈표 32〉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50
〈표 33〉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52
〈표 34〉	내수면 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53
〈표 35〉	원양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55
〈표 36〉	수산물 수출현황	56
〈표 37〉	품목별 수출현황	57
〈표 38〉	국가별 수출현황	58
〈표 39〉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59
〈표 40〉	수산물 수입현황	60
〈표 41〉	품목별 수입현황	61
〈표 42〉	국가별 수입현황	62
〈표 43〉	수산물 수급동향	63
〈표 44〉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64
〈표 45〉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64
〈표 46〉	소비자 물가동향	65
〈표 47〉	2006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현황	75
〈표 48〉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실적	76
〈표 49〉	국·도립 수산종묘생산시설 종묘생산 방류 현황	77
〈표 50〉	2006년도 시·도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현황	78

〈표 51〉 어종별 종묘 매입·방류 실적	78
〈표 52〉 2006년도 어종별 총 허용어획량 현황	B
〈표 53〉 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8
〈표 54〉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시기와 특징	8
〈표 55〉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현황	8
〈표 56〉 불법어업 단속실적	9
〈표 57〉 어업인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 실적	9
〈표 58〉 어선원 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9
〈표 59〉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실적	9
〈표 60〉 2006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9
〈표 61〉 2006년도 수산물유통보급시설 지원현황	10
〈표 62〉 수산물 규격출하촉진 지원대상품목과 거래규격	10
〈표 63〉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물량	10
〈표 64〉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금액	10
〈표 65〉 수산물 수출·입 검사실적	107
〈표 66〉 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113
〈표 67〉 가공업체 지원실적	114
〈표 68〉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115
〈표 69〉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116
〈표 70〉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116
〈표 71〉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118
〈표 72〉 시·도별 어촌관광 지원 실적	119
〈표 73〉 어촌관광 모델개발사업(시범사업)	121
〈표 74〉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122
〈표 75〉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투입현황	122
〈표 76〉 연도별 어촌관광홍보 예산 현황	124
〈표 77〉 어항지정 현황	125

〈표 78〉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126
〈표 79〉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126
〈표 80〉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지정현황	127
〈표 81〉	2006년도 친환경 어선건조 투자실적	129
〈표 82〉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131
〈표 83〉	양국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132
〈표 84〉	2006년도 한·일 양국간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133
〈표 85〉	2006년도 한·중 양국간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134
〈표 86〉	명태생산 추이	135
〈표 87〉	연도별 한·러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137
〈표 88〉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140
〈표 89〉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142
〈표 90〉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155
〈표 91〉	연도별 어선원 교육실적	158
〈표 92〉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179
〈표 93〉	수산특정연구개발 주요성과	179
〈표 94〉	영어자금 공급 실적	182
〈표 95〉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	183
〈표 96〉	수협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184
〈표 97〉	2006년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191
〈표 98〉	2006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실적	193
〈표 99〉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195
〈표 100〉	2006년도 해양수산시설 피해 및 복구상황(시기별)	198
〈표 101〉	200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203
〈표 102〉	2007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212
〈표 10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217
〈표 104〉	출조빈도에 따른 낚시인구	225

〈표 105〉 유어행위에 의한 조획량과 상업적 어업의 어획량 비교	25
〈표 106〉 2007년도 시·도별 연안어선 감척계획	225
〈표 107〉 연안어업 허가정수(안)	25
〈표 108〉 근해어업 허가정수(안)	25
〈표 109〉 어업별 어구사용량 제한내용	25
〈표 110〉 2007년 영어자금 공급 계획	㉞
〈표 111〉 2007년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예산현황	㉞
〈표 112〉 어선규모별 보험료 지원율	25
〈표 113〉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25
〈표 114〉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25
〈표 115〉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25
〈표 116〉 2007년도 정부비축사업계획	㉞
〈표 117〉 양국간 어업협정체결 현황	25
〈표 118〉 2007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268
〈표 119〉 2007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269
〈표 120〉 2007년 러시아 EEZ 조업 계획	㉠
〈표 121〉 2007년도 수산분야 입법계획	㉡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311

제 I 편

2006년도 수산업 동향

제 1 장

세계 수산업 동향

제 1 절 수산물 생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05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수산식물 제외)은 141,403천 톤으로, 2004년도의 140,475천 톤보다 72천 톤(0.7%)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양식생산(aquaculture production) 뿐만 아니라, 해면 및 내수면 생산(capture production)도 증가하여 전년보다 4.1% 증가한 49,467천 톤을 생산,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페루(Peru)는 전년보다 2.3% 감소한 9,416천 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India)는 전년 보다 231천 톤 (3.8%)이 증가한 6,319천 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인도네시아, 칠레,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의 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전년의 1,981천 톤보다 94천 톤(4.7%)이 증가한 2,075천 톤을 생산,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1.47%를 차지하여 세계 15위에 머물렀다.

세계 양식생산량은 48,150천 톤(수산식물 제외)으로 세계 수산물생산의 34.1%를 차지하였고, 이중 중국이 32,414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양식생산량의 67.3%를 점하고 있다. 연간 4백만 톤 이상 생산되는 양식어종은 참굴(Crassostrea gigas)과 백련어(Hypophthalmichthys molitrix)로서, 참굴의 2005년 생산량은 4,497천 톤으로 세계 양식 생산량의 9.3%를 차지했다.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표 1〉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02	'03	'04	'05	'05/'04
순위	합 계	132,989	132,524	140,475	141,403	100.7
1	중 국	44,320	45,648	47,507	49,467	104.1
2	페 루	8,775	6,103	9,635	9,416	97.7
3	인 도	5,963	5,904	6,088	6,319	103.8
4	인도네시아	5,271	5,672	5,856	5,578	95.3
5	미 국	5,419	5,483	5,566	5,361	96.3
6	칠 레	4,817	4,185	5,610	5,029	89.6
7	일 본	5,435	5,456	5,178	4,819	93.1
8	태 국	3,334	3,590	4,018	3,743	93.2
9	베 트 남	2,027	2,604	3,078	3,367	109.4
10	러 시 아	3,566	3,390	3,051	3,306	108.4
:	:	:	:	:	:	
15	대 한 민 국	1,966	2,035	1,981	2,075	104.7
비율	한국 / 세계	1.48%	1.53%	1.41%	1.47%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s-2004

주 : 수산식물 제외

주 : 수산물 생산순위 11 ~ 14위 : 러시아(11위), 필리핀(12위), 방글라데시(13위), 미얀마(14위)

제2절 수산물 교역*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05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78,419백만\$로 2004년도 수출액 71,774백만\$에 비해 9.5%가 증가하였다.

나라별 수출추이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13.3% 증가한 7,519백만\$로 1위, 노르웨이가 4,885백만\$로 2위, 태국이 4,4366백만\$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139백만\$ 보다 8.4%가 감소한 1,043백만\$로서 23위에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머물렀다. 특히 칠레와 러시아는 전년에 비해 각각 19.4%와 28.1%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표 2〉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백만\$, %)

구 분		'03	'04	'05	'05 / '04
	합 계	63,774	71,609	78,419	109.5
1	중 국	5,243	6,637	7,519	113.3
2	노 르 웨 이	3,624	4,132	4,885	118.2
3	태 국	3,906	4,034	4,466	110.7
4	미 국	3,399	3,851	4,232	109.9
5	덴 마 크	3,213	3,566	3,685	103.3
6	캐 나 다	3,300	3,487	3,596	103.1
7	칠 레	2,134	2,484	2,967	119.4
8	네 덜 란 드	2,183	2,452	2,820	115.0
9	베 트 남	2,202	2,403	2,741	114.1
10	스 페 인	2,224	2,565	2,579	100.5
11	러 시 아	1,483	1,525	1,953	128.1
12	영 국	1,670	1,812	1,872	103.3
13	인도네시아	1,551	1,654	1,803	109.0
14	아이슬란드	1,508	1,770	1,783	100.7
15	대 만	1,299	1,801	1,665	92.4
16	페 루	1,031	1,387	1,633	117.7
17	인 도	1,307	1,409	1,592	113.0
18	프 랑 스	1,326	1,526	1,584	103.8
19	독 일	1,277	1,415	1,501	106.1
20	일 본	923	1,077	1,254	116.4
:	:	:	:	:	:
23	대 한 민 국	1,003	1,139	1,043	91.6
	기 타	17,968	19,483	21,246	109.0

자료 : FAO, Yearbook of statistics, 2005

주 : 고래, 물개, 기타 수산 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 제외

주 : 수산물 수출순위 16 ~ 20위 : 페루(16위), 인도(17위), 프랑스(18위), 독일(19위), 일본(20위)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75,293백만\$로서 전년에 비하여 11.8%가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전년 대비 17.52% 증가한 14,560백만\$로 1위, 미국이 11,967백만\$로 2위, 스페인이 5,222백만\$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1,935백만\$에서 2004년에는 2,233백만\$로 15.4% 증가하여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표 3〉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단위 : 백만\$, %)

구 분		'03	'04	'05	'05 / '04
순위	합 계	67,359	75,436	81,529	108.1
1	일 본	12,396	14,560	14,438	99.2
2	미 국	11,655	11,967	11,982	100.1
3	스 페 인	4,904	5,222	5,632	107.9
4	프 랑 스	3,771	4,176	4,563	109.3
5	이 탈 리 아	3,559	3,904	4,224	108.2
6	중 국	2,389	3,126	3,979	127.3
7	독 일	2,635	2,805	3,235	115.3
8	영 국	2,508	2,812	3,174	112.9
9	덴 마 크	2,084	2,286	2,555	111.8
10	대 한 민 국	1,935	2,233	2,351	105.3
11	네 델 란 드	1,701	1,837	2,079	113.2
12	홍 콩	1,752	1,908	1,883	98.7
	기 타	16,070	18,600	21,434	115.2

자료 : FAO, Yearbook of statistics, 2005

주 : 고래, 물개, 기타 수산 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 제외

제 2 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제1절 어업 구조

1. 어가인구*

2006년 말 현재 전국의 어가는 77,001호로 2005년도의 79,942호 보다 2,941호 (3.7%)가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 역시 211,610명으로 2005년도의 221,132명 보다 9,522명(4.3%)이 감소하였다.

〈표 4〉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단위 : 호, 명,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어 가 호 수	73,124	72,760	72,513	79,942	77,001	96.3
어 가 인 구	215,174	212,104	209,855	221,132	211,610	95.7
·여 성 인 구 (구 성 비)	107,486 (50.0)	105,720 (50.0)	104,493 (49.8)	110,474 (50.0)	105,270 (49.7)	-
호당평균어가인구	2.94	2.92	2.89	2.77	2.75	99.3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p)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어업종사자는 2005년도에 비해 1.9% 감소된 128,048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70,307명(53.8%), 여자가 60,282명(46.2%)이며,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36.5%, 50대가 31.7%, 40대가 22.8%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은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종 사 자		127,694	125,023	122,384	130,589	128,048	98.1
성 별	남 자	69,666 (54.6)	67,870 (54.3)	66,380 (54.2)	70,307 (53.8)	68,244 (53.3)	97.1 -
	여 자	58,027 (45.4)	57,153 (45.7)	56,004 (45.8)	60,282 (46.2)	59,803 (46.7)	99.2 -
연 령 별	30세 미만	3,817 (3.0)	3,854 (3.1)	3,313 (2.7)	2,456 (1.9)	3,044 (2.4)	123.9 -
	30~39세	13,067 (10.2)	11,600 (9.3)	10,490 (8.6)	9,684 (7.4)	8,396 (6.6)	86.7 -
	40~49세	35,401 (27.7)	33,974 (27.2)	32,097 (26.2)	31,067 (23.8)	29,250 (22.8)	94.2 -
	50~59세	37,994 (29.8)	36,916 (29.5)	37,171 (30.4)	40,084 (30.7)	40,580 (31.7)	101.2 -
	60세 이상	37,414 (29.3)	38,680 (30.9)	39,312 (32.1)	47,298 (36.2)	46,778 (36.5)	98.9 -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표 6〉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73,124	72,760	72,513	79,942	77,001	96.3
전 업	28,267 (38.7)	25,423 (34.9)	23,580 (32.5)	25,342 (31.7)	23,932 (31.1)	94.4 -
겸 업	44,858 (61.3)	47,337 (65.1)	48,933 (67.5)	54,600 (68.3)	53,068 (68.9)	97.2 -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표 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총어업가구	73,124	72,760	72,513	79,942	77,001	96.3
·어선사용가구	37,106 (50.7)	37,342 (51.3)	37,748 (52.1)	36,733 (45.9)	36,088 (46.9)	98.2 -
·어선비사용가구	14,517 (19.9)	13,604 (18.7)	14,069 (19.4)	19,134 (23.9)	16,924 (22.0)	88.4 -
·양식어업가구	21,502 (29.4)	21,814 (30.0)	20,696 (28.5)	24,075 (30.1)	23,989 (31.2)	99.6 -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2. 어업 총생산*

2006년도 어업 총생산량은 3,032천 톤으로 전년 2,714천 톤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어업 총 생산액도 4.69% 증가한 5조 286억원으로 나타났다.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은 <표 8>과 같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한편, 2006년도 어업생산액 5조 286억 원 중 중간 투입재를 제외한 부가가치는 1조 9,612억원으로 이는 국내 총 생산(GDP) 721조 4,910억원의 0.27%, 국내총부가가치(GVA) 642조 6,230억원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어업생산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05		'06		증 감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합 계	2,714	50,493	3,032	52,859	318	2,366
연 근 해	1,097	27,060	1,109	27,513	12	453
양 식	1,041	13,484	1,259	14,432	218	948
내 수 면	24	1,757	25	2,004	1	247
원 양	552	8,192	639	8,910	87	718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표 9〉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05		'06p		증 감 륜	
	경상	'00불변	경상	'00불변	경상	'00불변
국내총생산(GDP)	723,127	721,491	759,234	693,996	5.0	4.0
국내총부가가치(GVA)	643,985	642,623	675,537	617,752	3.4	4.0
○ 농 립 어 업	25,447	25,223	24,785	25,258	△2.6	△0.1
- 어 업	1,730	1,962	1,811	1,954	△4.5	0.4
· GDP 구성비	0.21	0.27	0.23	0.28	-	-
· GVA 구성비	0.24	0.30	0.26	0.31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3. 어선등록 현황*

2006년 말 어선등록 현황은 86,113척에 673,719톤으로 2005년 말에 비하여 척수는 4,622척(5.1%)이 감소하였고, 톤수도 27,091톤(3.9%)이 감소하였다.

전체 어선중 동력어선은 83,358척으로 96.8%, 톤수는 671,299톤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별 척수는 연근해어선이 73.7%, 양식어선이 19.0%, 내수면어선이 4.8%, 원양어선이 0.6%, 기타가 1.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10〉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4	'05	'06	'06 / '05
합 계	척 수	91,608	90,735	86,113	94.9
	·동 력	87,203	87,554	83,358	95.2
	·무동력	4,405	3,181	2,755	86.6
	톤 수	724,980	700,810	673,719	96.1
	·동 력	721,398	697,956	671,299	96.2
	·무동력	3,582	2,854	2,420	84.8
연 근 해	척 수	66,063	64,579	63,518	98.4
	톤 수	330,203	322,811	312,580	96.8
양 식	척 수	18,792	18,244	16,337	89.5
	톤 수	27,296	27,131	23,955	88.3
내 수 면	척 수	3,991	4,164	4,150	99.7
	톤 수	3,102	3,518	3,558	101.1
원 양	척 수	491	493	483	98.0
	톤 수	261,237	257,614	258,422	100.3
기 타	척 수	2,271	3,255	1,625	49.9
	톤 수	103,142	89,736	75,204	83.8

자료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선질별로는 합성수지선(FRP선)이 전체 어선척수의 75.3%, 목선이 22.0%, 강선이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수에 있어서는 합성수지선(FRP선)이 29.8%, 목선이 6.0%, 강선이 64.2%를 차지하고 있다.

* 안전정책담당관실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6.7%로서 전체 톤수의 18.4%를 차지하고 있고,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11.1%,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2.2%, 6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4	'05	'06	'06/ '05
합 계	척 수	91,608	90,735	86,113	94.9
	톤 수	724,980	700,810	673,719	96.1
목 선	척 수	24,817	22,281	18,954	85.1
	톤 수	56,990	49,697	40,313	81.1
강 선	척 수	2,678	2,623	2,344	89.4
	톤 수	469,570	445,359	432,664	97.1
합성수지선 (FRP선)	척 수	64,113	65,831	64,815	98.5
	톤 수	198,420	205,754	200,742	97.6

자료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표 12>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4		'05		'06		'06/ '05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합 계	91,608	724,980	90,735	700,810	86,113	673,719	94.9	96.1
1톤 미만	31,974	20,645	30,962	20,069	29,753	19,390	96.1	96.6
1~5톤 미만	46,920	110,529	47,253	111,343	44,892	104,709	95.0	94.0
5~50톤 미만	10,701	124,974	10,607	123,424	9,586	114,916	90.4	93.1
50~100톤 미만	1,084	80,414	1,024	75,783	1,012	75,147	98.8	99.2
100~200톤 미만	369	53,877	346	50,640	341	49,914	98.6	98.6
200톤 이상	560	334,541	543	319,551	529	309,643	97.4	96.9

자료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4. 이용어장

가. 연근해어장*

수산업법상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의 해역범위는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60년대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라어장’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 어장’까지 조업어장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일 3국이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이하 EEZ라 함)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 질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6년 5월 이후 17차에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으로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한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정부와 협상한 결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30일 동 협정을 정식 발효시키게 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EEZ내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이 각각 EEZ로 편입되어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일간의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담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주변수역은 완전히 EEZ 어업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도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나. 원양어장*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시협조업 진출을 시발로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과동과 1977년부터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 어장은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 유자망조업이 중지되었으며,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으로 공해조업도 해역 단위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강화 및 다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공해수산자원 이용도 상당히 규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19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의 전면 철수 등으로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2005년도 원양어업은 총 410척이 5대양 29개 연안국에 출어하여 명태, 오징어, 참치 등을 주로 어획하여 횡감용 참치의 대 일본 수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 수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으며, 2005년도 생산실적은 참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1%가 증가된 552천 톤을 생산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도 총 393척이 5대양 28개 연안국에 출어하여 명태, 오징어, 참치 등을 주로 어획, 횡감용 참치의 대 일본 수출 및 국내 수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으며, 2006년도 생산실적은 참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가 증가된 639천 톤을 생산하였다.

다. 양식어장

1) 해면양식*

2006년 말 현재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 13만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어업이 2천ha가 개발되었다. 이중 어촌계(수협)가 전체 면허어장의 80%인 약 10만6천ha를 소유·경영하고 있다.

<표 13>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122,243	121,853	123,169	124,668	130,890	105
어 류	2,302 (1.9)	2,136 (1.8)	2,002 (1.6)	1,822 (1.5)	1,986 (1.5)	109.0
패 류	47,138 (38.6)	47,381 (38.9)	47,087 (38.2)	48,194 (38.7)	49,550 (37.9)	102.8
해 조 류	69,209 (56.6)	68,062 (55.8)	69,348 (56.3)	69,502 (55.7)	74,757 (57.1)	107.5
기 타 수산동물	3,594 (2.9)	4,274 (3.5)	4,732 (3.9)	5,150 (4.1)	4,597 (3.5)	89.3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주 : ()는 구성비임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표 14〉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2,109	2,061	2,162	2,017	1,971	97.7
수조식양식 (어류·패류 등)	289 (13.7)	374 (18.1)	379 (17.5)	299 (14.8)	268 (13.6)	89.6
축제식양식 (어류·새우 등)	1,820 (86.3)	1,687 (81.9)	1,783 (82.5)	1,718 (85.2)	1,703 (86.4)	99.1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주 : ()는 구성비임

우리나라의 해면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에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의 양식에서 1970년대에는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진주조개 등 고소득 어·패류양식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돔, 조피볼락, 굴, 피조개, 바지락, 김, 미역, 톳, 우렁쟁이, 새우, 가리비, 전복, 해삼 등 약 50여 종이며, 매년 새로운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품종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2) 내수면양식*

우리나라 내수면 수면적은 5,696km²로서, 전 국토 99,585km²의 5.7%에 해당되며, 수면별로 보면 강·하천이 2,800km²(49%), 댐·호(湖)가 1,108km²(20%), 수로가 1,770km²(31%)로 구성되어 있다.

내수면양식장은 2,649개소(3,980ha)가 개발되었으며 뱀장어·미꾸라지·송어 등 25종을 생산하여 국민단백질 공급은 물론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유어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표 15〉

2006년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단위 : ha)

구분	합 계		뱀장어		미꾸라지		송어류		기 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649	3,980.36	480	263.27	365	164.96	250	307.17	1,554	3,244.96
부 산	52	13.33	1.00	0.49	4.00	0.50	-	-	47	12.34
대 구	4	1.69	-	-	-	-	-	-	4	1.69
인 천	31	24.06	4	0.48	-	-	-	-	27	23.58
광 주	5	0.34	-	-	-	-	-	-	5	0.34
대 전	2	0.23	-	-	-	-	1	0.07	1	0.16
울 산	13	4.53	1	0.98	-	-	2	0.25	10	3.30
경 기	234	99.44	17	13.47	10	2.30	15	3.39	192	80.28
강 원	157	340.27	6	4.80	6	14.63	110	283.32	35	37.52
충 북	185	43.76	3	0.71	2	0.20	43	7.57	137	35.28
충 남	246	306.13	25	14.54	10	2.61	9	2.11	202	286.87
전 북	914	1,749.91	132	58.94	314	139.20	10	1.11	458	1,550.66
전 남	473	1,232.59	263	129.00	12	4.16	3	0.18	195	1,099.25
경 북	122	33.93			1	0.30	49	8.40	72	25.23
경 남	203	95.10	24	5.52	6	1.06	7	0.47	166	88.05
제 주	8	35.05	4	34.34	-	-	1	0.30	3	0.41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5. 어업 경영체

가. 연안어업*

2006년말 현재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150,111개로서 2005년도의 153,570개보다 3,459개가 감소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허가어업중 연안허가어업은 연안자망, 연안복합어업, 연안통발어업 등 전 업종이 감소하여 총 83,334개로 되었으며, 연안 면허어업은 3,279개로 전년과 변화가 없었고, 연안 신고어업은 투망어업이 5개 감소하였으나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이 증가하여 총 1,601개가 증가하였다.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안어업은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등 소규모 어업으로 겸업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 이후부터 임해공단시설 및 도시의 확장 등에 따른 공장폐수와 도시하수 등의 유입 그리고 대형선박 또는 유조선 등 사고에 의한 유류피해와 서해안 중심의 대단위 매립·간척사업으로 어장축소 등 어장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어업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과 FTA체결 가속화로 인한 수산물 수입이 증가 경향에 있어 연안어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표 16>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152,458	151,565	148,232	153,570	150,111	97.7	
허가	소 계	94,233	91,466	89,760	88,394	83,334	94.3
	연안유자망	25,909	25,473	25,034	24,825	23,320	93.9
	연안복합어업	44,415	43,422	42,263	41,703	39,374	94.4
	연안통발	10,521	10,344	10,248	10,161	9,436	92.9
	구획어업	8,445	8,242	8,292	7,876	7,611	96.6
	기타어업	4,943	3,985	3,923	3,829	3,593	93.8
면허	소 계	2,991	3,095	2,926	3,279	3,279	100
	마을어업	2,439	2,539	2,447	2,726	2,726	100
	정치망어업	552	556	479	553	553	100
신고	소 계	55,234	57,004	55,546	61,897	63,498	102.6
	맨손어업	49,679	51,535	49,954	56,348	57,561	102.2
	나잠어업	5,439	5,374	5,506	5,507	5,900	107.1
	투망어업	116	95	86	42	37	88.1
	외출어업	-	허가어업으로 전환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나. 근해어업*

근해어업 경영체는 2006년도에 4,246개로서, 전년도 4,359개보다 2.6%가 감소(113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의 전면 억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2003년 8월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 또는 신설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경영체를 보면, 근해채낚기·근해자망·근해통발·근해형망·근해연승 등은 소폭 감소하였고, 대형기저·대형트롤·중형기저·근해선망·근해안강망·잠수기·근해봉수망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7〉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06 / '05
합 계	4,637	4,467	4,359	4,246	97.4
대 형 기 저	98	96	93	91	97.9
중 형 기 저	101	97	100	96	96.0
근 해 트 롤	101	102	98	97	99.0
근 해 선 망	92	86	85	84	98.8
근해채낚기	1,011	1,003	1,002	985	98.3
기선선인망	100	97	84	83	98.8
근 해 자 망	968	946	922	912	98.9
근해안강망	318	272	271	274	101.1
잠 수 기	237	237	237	236	99.6
근 해 통 발	466	455	437	421	96.3
근 해 형 망	173	159	143	136	95.1
근 해 연 승	889	839	809	753	93.1
근해봉수망	83	78	78	78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다. 양식어업*

2006년 말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9,297건이며, 품종별로는 굴 1,186(12.7%), 김 971(10.4%), 새고막 847(9.1%), 피조개 868(9.3%), 바지락 614건, 어류 574건, 미역 495건, 우렁챙이·복합양식 기타 3,742건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인 해상종묘생산어업이 888건, 육상양식어업 1,794건(육상 수조식양식 1,417건, 축제식양식 377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263건으로 허가 어업의 경우 총 3,945건이다.

<표 18>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소,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8,717	8,839	9,046	9,110	9,297	102.0
김	1,208	1,166	1,159	944	971	81.4
굴	1,201	1,170	1,211	1,215	1,186	102.8
피 조 개	856	851	852	862	868	100.7
새 고 막	901	901	895	876	845	96.4
바 지 락	601	640	607	631	614	97.3
미 역	714	733	547	499	495	99.2
어 류	653	612	596	570	574	100.7
우 령 쉹 이	478	500	488	473	503	106.3
기 타	2,105	2,266	2,691	3,040	3,241	106.6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품종별 경영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양식은 개인과 협업경영체가 주로 경영하고 있으며, 해조류양식은 어촌계의 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김, 미역 등 해조류양식의 경우,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자본 또한 적게 들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는 반면, 어류와 전복·진주조개·우렁챙이·새우·가리비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9〉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122,243	121,853	123,169	124,668	130,892	105.0
어촌계 및 수협	96,377	96,302	98,169	100,208	106,649	106.4
개인 및 협업	25,866	25,551	25,000	24,460	24,243	99.1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라. 내수면어업*

2006년 말 내수면양식어업의 경영체 수는 2,649개소(3,980ha)로 전년 보다 137개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값싼 수입수산물의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속적인 경영유지가 곤란한 소규모 양식업체가 감소하는 대신 환경친화적인 첨단양식시설을 갖춘 규모가 큰 양식업체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풀이 된다.

〈표 20〉 2006년도 내수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2,897	3,124	2,923	2,786	2,649	95.1
잉 어	283	335	317	320	343	107.2
향 어	157	155	140	105	86	81.9
뱀장어	356	389	417	457	480	105.0
송 어	315	321	296	268	250	93.3
기 타	1,786	1,924	1,753	1,636	1,490	91.1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마. 원양어업*

2006년도 원양어업 경영체는 2005년도 112개사 보다 3개사가 줄어든 109개사이며, 업체별 규모를 살펴보면 1~2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한 업체가 71개사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원양업체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도에 조업한 원양어선은 전년도 410척보다 17척이 감소한 393척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참치선 197척, 오징어선 31척, 트롤선 126척, 기타 39척이었다.

우리나라 원양업체 및 어선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경영체의 부도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단위 : 개사, %)

구 분	'03	'04	'05	'06	'06/'05
합 계	129	121	112	109	97.3%
1척	62	58	53	51	96.2
2척	28	28	21	20	95.2
3~5척	25	20	23	24	104.3
6~10척	4	4	6	6	100.0
11~20척	8	9	7	6	85.7
21척 이상	2	2	2	2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제2절 어가 경제 *

1. 어가소득

2006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8,006천원으로 전년(28,028천원)에 비해 7.1%(1,978천원) 증가하였고, 전년에 비해 어업소득은 3.9% 감소한 반면, 어업외 소득은 10.2% 증가하였으며, 어가 소득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38.7%로 전년에 비해 3.9%p 감소하였다.(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92.9%, 도시가계소득의 72.6%)

〈표 22〉

어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어 가 소 득]①	21,590	23,916	26,159	28,028	30,006	107.1
경 상 소 득	21,590	20,221	22,604	23,594	24,692	104.4
어업소득	9,060	10,741	11,959	11,950	11,603	97.1
어업외 소득	7,944	8,619	9,168	9,399	10,361	110.2
이전소득	4,586	861	1,477	2,245	2,728	121.5
비 경 상 소 득	-	3,695	3,555	4,434	5,315	119.9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	(4,556)	(5,032)	(6,679)	(8,043)	(120.4)
[농 가 소 득]	24,475	26,878	29,001	30,503	32,303	105.9
[도시가계소득]	33,509	35,280	37,360	39,010	41,321	105.9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① 어가소득=경상소득(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표 23〉

어업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02	'03	'04	'05	'06	'06/'05
어업소득	9,060	10,741	11,959	11,950	11,603	△2.9
어업총수입	17,846	23,114	25,144	26,576	25,910	△2.5
어업경영비	8,786	12,373	13,185	14,626	14,307	△2.2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표 24〉

어업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02	'03	'04	'05	'06	'06/'05
어업외소득	7,944	8,619	9,168	9,399	10,361	10.2
겸업소득	4,724	4,176	4,350	4,559	5,082	11.5
사업외소득	3,220	4,443	4,817	4,840	5,279	△9.1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25〉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02	'03	'04	'05	'06	'06/'05
합계	4,586	4,556	5,032	6,679	8,043	20.4
이전소득	4,586	861	1,477	2,245	2,728	21.5
비경상소득	-	3,695	3,555	4,434	5,315	19.8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2. 어가 가계지출

2006년도 어가가계지출은 23,88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3%(989천 원) 증가하였는데, 소비지출은 18,156천 원으로 전년(17,682천원)에 비해 2.7%(474천원) 증가하였고, 비 소비지출은 5,729천 원으로 전년(5,214천원)에 비해 9.9% (515천원) 증가하였다.

〈표 26〉

가 계 지 출

(단위 : 천원,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가 계 지 출	16,660	20,019	21,081	22,896	23,885	4.3
소 비 지 출	16,660	16,249	16,602	17,682	18,156	2.7
비 소 비 지 출	-	3,770	4,479	5,214	5,729	9.9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27〉

소 비 지 출

(단위 : 천원,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소 비 지 출	16,660	16,249	16,602	17,682	18,156	2.7
식 료 품 비	3,211	4,129	4,452	4,699	4,746	1.0
주 거 비	920	1,088	1,078	1,215	1,256	3.3
광열수도비	906	1,166	1,184	1,236	1,247	0.9
피복신발비	543	637	655	642	695	8.3
보건의료비	1,331	1,091	1,199	1,409	1,358	△3.6
교 육 비①	1,957	778	683	620	638	2.8
교양오락비	174	400	502	532	535	0.7
교통통신비	1,858	2,295	2,391	2,485	2,573	2.1
기 타②	5,760	4,665	4,458	4,845	4,536	7.6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① 2003년부터 교육비 중 출타자녀 교육비는 비소비지출로 분류변경

② 2003년부터 교제증여비 중 각종 성금 및 출타자녀 생활비를 비소비지출로 분류 변경

<표 28>

비 소 비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02	'03	'04	'05	'06	'06/'05
비 소 비 지 출	-	3,770	4,479	5,214	5,729	9.9
가계부문조세	-	210	218	203	249	22.5
공 적 연 금	-	298	351	374	377	1.0
사 회 보 험	-	381	382	355	338	△4.9
기타 비소비지출	-	2,879	3,528	4,282	4,765	11.3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3. 어가자산

2006년 말 현재 어가의 평균자산은 209,644천원으로 전년(183,841천원)에 비해 14.0%(250,803천원)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15.6%(19,850천원), 10.5%(5,926천원) 증가하였다.

<표 29>

어 가 자 산

(단위 : 천원)

구 분	'02	'03	'04	'05	'06	'06/'05
어 가 자 산	139,188	140,477	160,698	183,841	209,644	14.0
고정자산① (구 성 비)	98,229 (70.6)	100,400 (71.5)	111,870 (69.6)	127,397 (69.3)	147,247 (70.2)	15.6 -
유동자산② (구 성 비)	40,959 (29.4)	40,077 (28.5)	48,828 (30.4)	56,443 (30.7)	62,369 (29.8)	10.5 -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② 미처분농수산물, 사용중인어업용자재 등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4. 어가부채

2006년 말 현재 어가부채는 가구당 34,422천 원으로 전년(34,531천 원)에 비해 0.3%(109천원) 감소하였는데,

어업용 부채는 6.9% 감소한 반면, 어업용 이외 부채가 7.4% 증가하였으며,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63.9%로 전년(72.5%)에 비해 다소 개선(8.6%p 하락) 되었다.

〈표 30〉

어 가 부 채

(단위 : 천원,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어 가 부 채(A)	23,673	29,836	32,544	34,531	34,422	△0.3
어업용 부채 (구 성 비)	9,893 (41.8)	16,696 (56.0)	17,665 (54.3)	18,560 (53.7)	17,275 (50.2)	△6.9 -
어업용이외 부채 (구 성 비)	13,780 (58.2)	13,140 (44.0)	14,880 (45.7)	15,971 (46.3)	17,148 (49.8)	7.4 -
당 좌 자 산(B)	33,439	32,585	40,159	47,608	53,865	13.1
단기상환능력[(A/B)×100]	70.8	91.6	81.0	72.5	63.9	△8.6%p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제3절 수산물 생산

1. 생산동향*

2006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전년(2,714천 톤) 보다 11.7%(318천 톤) 증가된 3,032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근해, 양식 및 원양어업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된다.

〈표 31〉

어업 생산 현황

(단위 : 톤,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2,476,188	2,487,042	2,519,101	2,713,908	3,031,746	111.7
연근해어업	1,095,787	1,096,526	1,076,687	1,097,016	1,108,828	101.1
양식어업	781,544	826,245	917,715	1,041,058	1,258,827	120.9
내수면어업	18,511	19,680	25,299	23,738	24,842	104.7
원양어업	580,346	544,591	499,400	552,096	639,249	115.8

자료 : 해양수산부, 2006 어업생산통계

2. 연근해어업

2006년도 연근해어업(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1,108천 톤으로 전년도 (1,097천 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 3,032천 톤 중 3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체 수(허가건수)는 2006년도 90,859개로서 전년(96,032개)에 비해 5.7%(5,173개)가 감소되었고,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이중 생산량의 비중이 큰 근해어업의 경영체는 2006년에 4,246개로, 전년(4,359개)에 비해 2.6%(113개)가 어선감척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체 생산량과 경영체당 생산량은 전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별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경영체의 감소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는 단위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 [예,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경영체 당 생산량 : (1995) 603톤 → (2006) 1,929톤, 220% 증]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패류 및 해조류 등 품종별 생산량 동향은 어류의 생산량이 715천 톤으로 전년(722천 톤)에 비해 1.0%(7천 톤) 감소, 갑각류의 생산량은 73천 톤으로 전년(62천 톤)에 비해 15.1%(11천 톤) 증가, 패류의 생산량은 80천 톤으로서 전년(81천 톤)에 비해 1.2%(1천 톤) 감소, 연체동물의 생산량은 220천 톤으로 전년(212천 톤)에 비해 3.6%(8천 톤) 증가하였고, 해조류의 경우는 생산량이 14천 톤으로서, 전년(15천 톤)에 비해 7.1% (1천 톤)가 감소하였다

가.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30톤급 어선에 의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흑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정어리·전갱이·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근해어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종의 하나이다.

특히, 선망어업은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한 달간의 자체 휴어기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대상종인 고등어 어황의 내유량 감소로 전년(174천 톤)에 비해 15.5% 감소한 147천 톤에 머물렀다.

나.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어업’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어업’으로 구분되며, 서·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로 갈치·가자미·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이다. 그 간 대폭적인 감척으로 단위 생산성이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 생산량은 96천 톤으로 전년(86천 톤)보다 10.4%가 증가하였다.

다.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가자미·도루묵·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과, 서·남해에서 가자미·아귀·강달리·새우·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어업’과 ‘쌍끌이어업’으로 구분)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 어업의 어획량은 매년 감소하다가 2002년도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 생산량은 전년(22천 톤)과 동일한 22천 톤을 생산하였다.

라.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오징어·갈치·복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주 어획대상이 되고 있는 오징어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어기를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퇴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 잠정조치 구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은 오징어의 어획량이 소폭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66천 톤을 생산하여 전년(63천 톤) 보다 4.6% 증가하였다.

마.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조기·멸치·강달리·아귀·꽃게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 간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갈치·조기 등의 어황이 호조를 보여 2006년도에는 74천 톤을 생산하여 전년(68천 톤)보다 8.1% 증가였다.

바.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기선선인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종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을 비롯, 가공선·어탐선·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루어,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해황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에는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중심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생산량은 143천 톤으로 전년(132천 톤) 보다 7.7% 증가하였다.

사. 자망어업

자망어업은 동·서·남해에서 조기·멸치·꽁치·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조기는 서해남부해역에 목이생물이 풍부하여 어장이 형성되면서 2006년도 생산량은 102천 톤으로 전년(100천 톤)보다 2.0% 증가하였다.

아.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70~140톤급 어선으로 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갈치·병어·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가자미·도루묵·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트트롤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쥐치의 대량어획으로 호황을 이루다 이후 대상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간 어선감척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해구트트롤어업은 처음에는 새우트롤어업으로 번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다가 최근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이 되고 있는 오징어 내유량이 증가하여 2006년 생산량은 108천 톤으로 전년(102천 톤)보다 5.6% 증가하였다.

자. 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장어통발, 기타통발(어류·게류·고둥류), 문어단지로 구분된다.

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1990년대 들어 자원 감소 및 어장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통발 중 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어,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어업과 경쟁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64천 톤을 생산하여 전년(61천 톤)보다 4.7% 증가하였다.

차. 연승어업

연승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으로 갈치·옥돔·아귀·복어·가자미·장어·불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망어구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 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06년도에는 16천 톤을 생산하여 전년(15천 톤) 보다 6.3% 증가하였다.

〈표 32〉

연근해 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3	'04	'05	'06	'06/'05
합 계	1,096,526	1,076,687	1,097,041	1,108,815	101.1
대 형 선 망	158,662	220,004	173,795	146,839	84.5
대 형 기 저	69,486	77,041	86,215	95,971	111.3
중 형 기 저	22,252	17,637	21,718	23,790	109.5
근 해 채 낚 기	73,802	66,845	62,891	66,082	105.1
근 해 안 강 망	40,887	44,145	67,691	74,496	110.1
권 현 망	133,954	104,846	132,146	142,618	107.9
자 망	92,052	82,877	99,891	102,874	103.0
근 해 트 롤	143,761	123,692	101,606	108,386	106.7
통 발 어 업	53,899	54,411	60,756	63,533	104.6
연 승 어 업	14,755	11,373	14,830	16,472	111.1
마을·구획어업	73,553	51,142	75,805	78,447	103.5
기 타 어 업	219,463	222,674	199,697	189,307	94.8

자료 : 해양수산부, 2006 어업생산통계

3. 양식어업*

2006년도 천해양식어업은 입식물량의 증가, 입식원 물량의 본격 출하, 적조 등의 자연피해 감소 등의 이유로 전체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21%가 증가한 1,259천 톤으로 나타났다.

어류양식의 경우 2005년도에는 81천 톤이 생산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입식물량 증가, 입식물량의 본격 출하, 자연피해 감소로 12%가 증가한 91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주요 생산어종은 넙치·조피볼락·돔·숭어·농어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패류양식의 경우, 안정된 해황의 장기간 지속과 양호한 생육으로 굴, 홍합, 바지락, 키조개, 전복 등의 생산이 늘어난데 힘입어, 2006년도 생산량은 전년도 326천 톤 보다 7%(65천 톤)이 늘어난 391천 톤을 생산하였다. 품종별로는 굴이 283천 톤으로 패류 생산량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홍합(82천 톤), 바지락(14천 톤), 고막류(5천 톤)의 순을 보였다.

미역과 김·다시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양식은 전년도(621천 톤) 대비 23.1%(143천 톤)이 늘어난 765천 톤을 생산하였다. 그 중 미역이 322천 톤으로 42%를 차지하였고, 김이 28%인 217천 톤, 다시마는 26.4%인 202천 톤을 생산하였다. 기타 툇·청각·과래 등은 전년도 33천 톤에 비해 30.8%(10천 톤) 감소한 23천 톤이 생산되었다.

기타 수산동물양식은 우렁챙이·미더덕·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우렁챙이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전년(11천 톤) 대비 3% 줄어든 10천 톤이 생산되었다.

〈표 33〉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 분		'03	'04	'05	'06	'06/'05
합 계		826,245	917,715	1,041,058	1,258,827	120.9
어류	소 계	72,393	64,476	81,421	91,093	111.9
	넙 치	34,533	32,141	40,059	43,834	109.4
	조피볼락	23,771	19,576	21,297	27,517	129.2
	기 타	14,089	12,759	20,065	19,742	98.4
패류	소 계	291,063	304,889	326,255	391,041	120.3
	굴	238,326	239,270	251,706	283,278	112.5
	홍 합	15,785	20,409	43,953	81,617	185.7
	피 조 개	4,696	3,134	2,548	2,064	81.0
	바 지 락	27,494	27,570	17,401	14,327	82.3
	기 타	4,762	14,506	10,647	9,755	91.6
해조류	소 계	452,054	536,748	621,156	764,515	123.1
	미 역	198,172	261,574	281,871	322,371	114.4
	김	193,553	228,554	197,610	217,161	109.9
	다 시 마	25,259	22,510	108,327	201,919	186.4
	기 타	35,070	24,110	33,348	23,064	69.2
기타수산 동물		10,735	11,602	12,226	10,495	85.8

자료 : 해양수산부, 2006 어업생산통계

주 : 기타 수산동물은 우렁쟁이, 미더덕 등

4. 내수면어업 *

2006년 내수면어업 생산은 전년도 24천 톤에 비해 4.2%가 증가한 25천 톤이었다. 이 중 어로어업의 생산량이 7.1천 톤 수준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은 17.7천 톤으로 환경친화적인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 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4〉

내수면 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18,511	19,680	25,299	23,839	24,843	104.2
어로어업	5,690	6,080	10,302	7,500	7,139	95.2
가 물 치	8	6	24	13	14	107.7
메 기	266	99	146	229	214	93.4
미꾸라지	0	6	0	1	0	-
뱀 장 어	10	20	37	35	46	131.4
붕 어	1,552	1,004	1,397	1,145	1,051	91.8
송 어 류	9	0	0	0	0	-
잉 어	883	947	1,430	1,211	961	79.4
피 라 미	247	120	50	21	46	219.0
패류(재첩 등)	636	1,465	3,981	1,400	1,171	83.6
기 타	2,079	2,413	3,237	3,445	3,636	105.5
양식어업	12,821	13,600	14,997	16,339	17,704	108.4
가 물 치	291	314	278	252	287	113.9
민 물 돔	756	717	302	268	272	101.5
뱀 장 어	2,968	4,312	5,168	5,775	7,966	137.9
잉 어	283	190	231	429	320	74.6
향 어	962	920	702	973	706	72.6
송 어 류	2,860	3,521	3502	3320	1878	56.6
기 타	4,701	3626	4814	5322	6275	117.9

자료 : 해양수산부, 2006 어업생산통계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5. 원양어업*

2006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원양 봉수망이 부진하였으나, 원양 참치선망 및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어획 호전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639천 톤을 생산하였다.

가. 참치어업

우리나라의 참치어업은 참치선망어업과 참치연승어업으로 구분된다. 참치선망어업은 통조림 원료인 가다랑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28척이 출어,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249천 톤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용 통조림 원료로 공급하였으며,

참치연승어업은 횡감용인 눈다랑어, 황다랑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 2006년도에는 169척이 출어, 전년도 생산량 50천 톤 보다 7% 감소한 46천 톤을 생산하여 대부분 일본에 횡감용으로 수출하였다.

나. 오징어어업

원양 오징어생산은 채낚기어업과 트롤어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채낚기어업은 포클랜드, 페루 어장 등에 출어하여 전년 대비 211% 증가한 88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남서대서양 및 뉴질랜드 수역 등에 출어한 트롤어선에서도 전년대비 56% 증가한 83천 톤이 어획되어 전체 원양 오징어류는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70천 톤을 어획하였다.

다. 트롤어업

트롤어업은 원양어업 중 참치어업과 함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2006년도에는 전체 원양생산량의 37%인 236천 톤을 생산하였다.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이는 명태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는 북양트롤어업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2006년도에 약 6천 톤의 쿼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전년 수준인 26천 톤의 명태를 어획하였다.

또한, 해외 트롤어업도 라스팔마스를 중심으로 한 서부아프리카, 남서대서양 및 인도네시아 등에 출어하여 전년 대비 12% 증가한 210천 톤(오징어 트롤 어획 83천 톤 포함)을 어획하였다.

〈표 35〉

원양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3	'04	'05	'06	'06/'05
합 계	544,591	499,400	552,096	639,249	116
참 치 선 망	190,452	184,985	210,777	249,340	118
참 치 연 승	48,794	53,667	49,619	46,124	93
오 징 어 채 낚 기	80,871	25,010	28,144	87,668	311
꽁 치 봉 수 망	31,219	22,943	40,509	12,009	30
북 양 트 롤	23,401	21,985	26,726	26,373	99
해 외 트 롤	161,720	183,738	187,929	209,636	112
기 타	8,134	7,072	8,392	8,099	97

자료 : 해양수산부, 2006 어업생산통계

제4절 수산물 수출·입 *

1. 수 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까지 15억\$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국내외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도에 12억\$로 감소한 이래 최근 5년간 11억\$ 내외의 정체를 보임에 따라 총 수출액에서 수산물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도의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물량은 44천 톤 감소(△10.8%)하였고, 금액도 104백만\$ 감소(△8.7%)하였다.

〈표 36〉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

구 분	'03	'04	'05	'06	'06/'05
총 수 출	193,817	253,845	284,419	325,465	114.4
수 산 물	1,129	1,279	1,193	1,089	91.3
구 성 비	(0.6)	(0.5)	(0.4)	(0.3)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가. 품목별 수출현황

활어는 2001년 이후 넙치, 붕장어 등의 지속적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5년에 90백만\$을 수출하였으나, 2006년에는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한 75백만\$을 수출하였다. 신선·냉장품의 경우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37백만\$을 수출하였고 2006년에도 전년 대비 6.0% 감소한 128백만\$을 수출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수산물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냉동품의 경우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5년에는 전년 대비 9.1% 감소한 595백만\$을 수출하였으며, 2006년에도 9.5% 감소한 538백만\$을 수출에 그쳤다.

〈표 37〉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04		'05		'06		'06/'05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합 계	406,435	1,278,638	411,878	1,193,117	367,498	1,088.948	89.2	91.3
활 어	7,344	91,572	8,514	89,695	6,238	74,712	73.3	83.3
신선·냉장	27,076	144,090	24,237	136,795	21,648	128,473	89.3	93.9
냉 동	270,793	654,680	278,865	595,113	252,891	538,462	90.7	90.5
기 타	101,222	239,296	100,262	371,514	86,721	347,301	86.5	93.5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나. 국가별 수출현황

2006년도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60.6%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은 2005년도 제3위의 국가에서 2006년에는 제2위의 수출대상국가로 부상하였으나 중국은 전년도에 비하여 수출이 대폭 감소(△30.2%)함으로써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 되었다. 멕시코, 대만, 홍콩, 러시아 등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본, 중국,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06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117개국이며, 국별 비중은 일본 60.6%, 미국 8.8%, 중국 6.9%, 태국 5.7%, 뉴질랜드 3.6% 등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구 분	'03	'04	'05	'06	'06/'05
합 계	1,129,385	1,278,638	1,193,117	1,088,948	91.3
일 본	740,447	834,649	741,062	659,523	89.0
미 국	80,385	81,130	88,174	95,613	108.4
중 국	70,769	124,102	108,031	75,414	69.8
태 국	38,354	37,565	57,383	61,688	107.5
뉴 질 랜 드	30,487	44,544	60,478	39,383	65.1
스 페 인	46,148	36,702	31,519	28,167	89.4
대 만	17,305	20,177	13,196	18,453	139.8
홍 콩	14,350	15,334	8,895	12,514	140.7
이 탈 리 아	11,356	14,030	11,253	11,620	103.3
러 시 아	2,714	4,249	4,468	8,015	179.4
캐 나 다	8,011	6,172	9,025	7,247	80.3
멕 시 코	1,593	1,006	1,644	6,834	415.7
인도네시아	5,502	4,337	5,869	6,466	110.2
베 트 남	6,740	6,551	4,570	5,194	113.7
기 타	59,531	53,345	47,550	52,817	111.1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표 39〉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구 분	'03	'04	'05	'06	'06/'05
합 계	1,129,385	1,278,638	1,193,117	1,088,948	91.3
참 치	224,640	249,915	226,399	227,964	100.7
김	41,646	45,031	54,244	61,730	113.8
굴	74,699	76,641	61,204	55,508	90.7
넙 치	51,475	55,423	63,684	51,969	81.6
오 징 어	83,425	113,020	102,131	47,399	46.4
캐비아(대용)	49,240	46,817	56,741	44,019	77.6
붕 장 어	52,075	51,939	49,161	43,009	87.5
계 살	36,149	46,426	41,163	36,210	88.0
툰	36,325	30,614	23,939	23,773	99.3
미 역	21,900	35,885	29,868	21,761	72.9
한 천	7,821	8,550	15,529	18,535	119.4
바 지 락	21,177	24,998	18,040	17,766	98.5
전 복		3,375	9,024	17,123	189.7
삼 치	12,232	16,465	21,086	15,535	73.7
피 조 개	25,548	19,729	19,054	14,379	75.5
새 우		4,162	5,836	14,012	240.1
이 빨 고 기		9,565	6,607	11,653	176.4
전 갱 이	7,971	17,712	11,848	11,035	93.1
돔	8,991	7,392	9,005	10,940	121.5
새 꼬 리 민 태	10,042	11,829	15,315	9,565	62.5
기 타	364,029	403,150	353,239	335,063	94.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 수 입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국내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증가, 1997년도 수입 자유화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도 무역수지 적자 전환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224백만\$씩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5년전인 2001년도의 수입이 1,648백만\$(물량 1,056천 톤)이었으나 2006년도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6.1%(385백만\$) 증가한 2,769백만\$을 보였다.

이렇게 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국내 수산물 소비량 증가의 결과이며 <표 40>에서 보듯이 연도별 총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 점유비율도 1%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표 40>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톤, 백만\$, %)

구 분	'03	'04	'05	'06	'06/'05
총 수 입	178,827	224,463	261,238	309,383	118.4
수 산 물	1,961	2,261	2,384	2,769	116.1
구 성 비	(1.1)	(1.0)	(0.9)	(0.9)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가. 품목별 수입현황

수산물 수입의 약 60%를 점유하는 냉동품이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0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1% 증가한 1,661백만\$의 수입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신선·냉장의 경우도 전년대비 13.3% 증가한 375백만\$을 보였고 활어 및 기타 수산물도 각각 11.9%, 13.9% 증가하였다.

〈표 41〉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톤, 천\$, %)

구 분	'04		'05		'06		'06/'05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합 계	1,280,915	2,261,356	1,256,142	2,383,574	1,377,101	2,769,348	109.6	116.2
활 어	54,486	201,175	38,363	176,449	43,108	197,501	112.4	111.9
신산냉장	129,164	318,305	120,772	330,782	146,220	374,837	121.1	113.3
냉 동	904,471	1,337,986	897,493	1,406,323	977,301	1,660,663	108.9	118.1
기 타	192,794	403,890	199,514	470,020	210,472	535,135	105.5	113.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나. 국가별 수입현황

2006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의 37.3%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일본, 동남아국가, 남미 및 노르웨이 등 대부분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액이 2005년도 보다 16.2% 증가한 2,769백만을 보인 가운데 특히 칠레, 페루,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46.3%, 42.8%, 54.7%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영국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21.8% 및 1.3% 감소하였다.

2006년도 현재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126개국으로 전년도 107개국에 비해 19개국이 증가하였으며, 국별 수입비중은 중국 37.3%, 러시아 12.5%, 일본 8.1%, 베트남 7.5%, 미국 5.4%로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70.8%를 점유하여 전년도의 71.4%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2〉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천\$, %)

구 분	'03	'04	'05	'06	'06/'05
합 계	1,961,145	2,261,356	2,383,574	2,769,348	116.2
중 국	713,538	909,536	936,351	1,034,192	110.4
러 시 아	299,252	276,783	277,216	347,079	125.2
일 본	148,699	180,620	173,140	224,311	129.6
베 트 남	129,878	143,524	163,642	206,482	126.2
미 국	152,677	136,225	152,555	150,544	98.7
태 국	95,616	106,521	125,147	144,463	115.4
대 만	42,827	61,668	63,533	85,698	134.9
칠 레	32,362	43,935	57,076	83,513	146.3
캐 나 다	51,355	46,582	42,474	50,157	118.1
노 르 웨 이	25,229	35,226	29,146	41,609	142.8
페 루	12,660	23,809	23,910	36,977	154.7
인도네시아	26,630	29,008	33,630	35,645	106.0
인 디 아	17,427	24,035	19,981	27,350	136.9
필 리 핀	26,773	28,097	21,800	26,788	122.9
영 국	25,302	25,543	30,182	23,594	78.2
기 타	160,920	190,244	233,791	250,946	107.3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제5절 수산물 수급 및 가격*

1. 수 급

2006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동향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증가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6.7% 증가한 6,190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4,568천 톤을 소비하였고, 1,047천 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575천 톤은 2007년도 재고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일반 해면어업 1,109천 톤, 천해양식어업 1,259천 톤, 그리고 원양어업에서 639천 톤 등 3,032천 톤이 생산되어, 국내소비도 9.6%로 늘어났으며, 공급 부족분은 수입 2,646천 톤과 전년도 재고량 512천 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43〉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공 급	생 산	2,476	2,486	2,519	2,714	3,032	111.7
	수 입	2,226	2,268	2,477	2,557	2,646	103.5
	전년재고	641	769	573	531	512	96.4
합 계		5,343	5,523	5,569	5,802	6,190	106.7
수 요	국내소비	3,433	3,578	3,922	4,169	4,568	109.6
	수 출	1,140	1,202	1,116	1,121	1,047	93.4
	차년이월	770	743	531	512	575	112.3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소 비

2005년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48.1kg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한 소비형태를 보였으며, 국민들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비율에 있어서도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43.0%에 비하여 2005년에는 41.7%로 낮아졌다.

〈표 44〉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단위 : kg/연간,%)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42.2	44.7	44.9	49.0	48.1	98.2
어 패 류	35.6	36.3	38.5	41.1	38.5	93.7
해 조 류	6.6	8.4	6.4	7.9	9.6	121.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5)』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표 45〉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단위 : g/1인당 1일, %)

구 분	'01	'02	'03	'04	'05	'05/'04
합 계	44.66	45.85	46.11	46.66	45.26	97.0
축 산 물	27.18	28.06	27.54	26.61	26.37	99.1
어 패 류	17.48	17.79	18.57	20.05	18.89	94.2
(점 유 율)	(39.1)	(38.8)	(40.3)	(43.0)	(41.7)	(97.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5)』

3. 가격

2006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일반 해면어업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생산자물가(도매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요 대중성 해면어종인 오징어, 조기 등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소비자 물가동향

(단위 : %)

구 분	'01	'02	'03	'04	'05	'06
총 소비자물가	4.1	3.7	3.4	3.0	2.6	1.9
수 산 식 품	6.3	4.0	0.7	6.0	△1.3	1.7
- 선 어 개 류	5.4	4.6	1.4	1.4	△4.2	1.8
- 염 건 어 류	12.1	2.8	△1.7	7.8	7.2	0.9
- 해 조 류	△0.8	0.3	1.0	0.7	3.1	1.9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자료

주 1 : 전년 말 대비 등락률임

2 :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기준년도를 '2000년' → '2005년'으로 변경함

2006년도 수산식품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인 갈치·명태 등은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고등어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가 상승하였으며,

염건어류는 액젓·마른오징어·복어 등의 생산 증가로 가격이 0.9% 상승하였고, 해조류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9% 상승하였다.

제6절 어업 및 어장환경*

1. 어 황

가. 해역별

2006년도 동해에서는 봄철 북상하는 꼴치를 대상으로 주로 조업이 이루어졌고 전체 어획량은 전년 및 평년 비 매우 부진하였으나 척당 어획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전년 및 평년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동해구 중형외끌이어업은 가자미류,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전년수준을 나타내었다.

남해에서는 멸치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기선저인망, 유자망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강달이, 갈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나. 어종별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나 봄철 난류세력의 약세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 비 다소 부진하였다. 멸치는 기선권현망 및 유자망어업에 의해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밀도 높은 어군의 어장이 형성되어 전년 및 평년 비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참다랑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어황은 전년 비 다소 부진하였다.

* 국립수산물과학원

기선저인망어업의 주 대상어종인 갈치, 참조기는 내유 자원량의 증가로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어황은 전년 비 순조로웠다. 한편 도루묵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수준의 어황이었으나, 명태는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의 어획량을 나타내었다. 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전 해역에서 활발히 조업이 이루어져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꽁치는 주로 봄철에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전체어획량은 전년 및 평년 비 매우 부진한 어황을 보였다.

2. 자원동향

가. 연근해 어업자원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귀치, 붕장어 등 9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 생산력의 변동과 연급 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6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와 붉은대게 등 9종과 추가 예비대상종인 오징어, 갈치, 멸치 3종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업 초기인 1970년대 초반에는 15~40만 톤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 100만 톤을 생산하여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약간 감소한 70~80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약 64만 톤을 어획하였다.

다랑어류는 원양어업 초기에는 연승어선에 의한 어획이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초부터 대형선망어선이 진출하여 중서부 태평양에서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주로 어획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295천 톤을 어획하여 전년 비 13% 증가하였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다랑어 관련 6개 국제수산기구에서 평가한 다랑어류 자원상태의 경우, 태평양 서부해역에서는 가다랑어 양호, 황다랑어 감소, 눈다랑어 안정 상태이며, 동부해역은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양호, 눈다랑어 감소 추세이다. 대서양은 가다랑어 양호,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감소 추세이며, 인도양에서는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양호, 눈다랑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방참다랑어는 전 대양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북태평양 명태는 1980년대에 어획량이 최고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자원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원양 어업국들은 북태평양 오호츠크공해 및 베링공해에서 자율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였으나, 최근까지도 베링해의 명태 자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러시아 경제수역에 5척의 트롤어선이 입어조업을 실시하여 27천 톤을 어획하였다.

오징어류의 경우, 2006년도에는 남동태평양 페루 근해 아메리카대왕오징어를 목표어종으로 하는 오징어채낚기어선은 출어하지 않았으나,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근해의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오징어는 알젠틴 대륙붕 연안수와 포클랜드 해류에 의한 강한 수렴대가 조업수역에 형성되어 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오징어채낚기어업의 경우 2005년 어획량인 24천 톤 대비 약 3배 정도 높은 88천 톤을 어획하였다. 트롤어업의 경우에도 2006년에는 83천 톤을 어획하여 2005년 어획량 53천 톤에 비하여 56% 증가되었다.

꽂치류의 주 조업어장이 일본의 200해리 EEZ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어장 개발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러시아 남쿠릴수역에도 입어하여 조업하였다. 그러나 동 수역도 일본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함에 따라 2002년 이후에는

남쿠릴의 북부수역과 인접 공해 및 일본 EEZ에서 조업을 실시하여 2005년에는 19척이 41천 톤을 어획하였고, 2006년에는 13척이 12천 톤을 어획하였다.

3. 연안어장 환경변화

가. 연안어장 오염

해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동해안은 대부분의 연안에서 해역기준 I, II등급(2 mg/L 이하) 이내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일부 해수유통이 불량한 항내 정점들에서 해역기준 III등급(4 mg/L 이하) 이내의 농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남해안 중 오염강도가 비교적 적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해역기준 I 등급 수준을 나타냈으며, 반 폐쇄성만이며 오염강도가 큰 마산·진해만, 부산, 울산연안에서 해역기준 III등급 수준이었다. 서해안의 경우 시화호를 제외한 전 해역에서 해역기준 I, II등급의 상태를 나타냈다.

해저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부영양화가 진행된 진해만, 마산만, 시화호 등의 해역에서 오염퇴적물 기준(20mg/g.d,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을 초과하였고, 산취발성황화물(AVS) 역시 항만 및 반 폐쇄성만(진해만, 마산항, 울산항, 시화호 등)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나. 적조발생

2006년도는 전 연안에서 총 28건의 적조가 발생하였으며, 일반 적조 16건,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Chattonella* spp. 적조 12건이 발생하였다. *C. polykrikoides* 적조는 8월 7일 여수 가막만 남부~금오수도 및 나로도 인근 해역에서 최초 발생한 후 전남 완도~남해도 해역에 확산되었고, 8월 29일 소멸되었으나, 10월 18일 남해도 동부와 사천에서 재 발생되어 10월 30일 완전 소멸

되었다.

2006년도는 쿠로시오해류가 외해 측에 분포하였고, 수온약층이 발생부터 소멸 시까지 계속 지속되었으며 강한 냉수대가 형성되어 적조의 지속적 발생을 억제하여 조기 소멸되었다. 또한 *Chattonella* spp. 적조는 충남 태안~보령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월 21일 완전 소멸되었다.

다. 대형 독성해파리의 대량 출현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의 대량 발생은 최근 7~8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 7월초부터 동중국해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늦가을까지 우리나라의 전 해역에 대량 확산되었다.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해수욕객 및 어민들에 대한 해파리와 의 접촉으로 인한 독성으로 인한 피해 보고가 있었으나, 수산업 피해는 발생 밀도가 높았던 2003년이나 2005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 Ⅱ 편

2006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제 1 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제1절 자율관리어업*

그 동안 정부 주도하의 어업자원관리는 어업인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 심화 및 주인의식을 약화시켜 자원남획 및 어업질서 문란을 야기 시키는 등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WTO체제 출범, UN해양법협약 발효,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은 국내의 수산업의 여건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어업환경 악화는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절감케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어업인의 주인의식 및 자조·자립심 함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자율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2월부터 자율관리공동체 63개소가 신청하여 본격 추진되었으며, 시행 6년차인 2006년에는 참여공동체수가 445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조성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심화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2006년도에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60개소를 선정하여 96억원의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는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고,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전담 어촌지도사를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도자들로 구성된 시·도별 지역협의회(12회), 전국 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2회) 등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공동체지도자의 의식개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동·서·남·해로 구분한 권역별 워크숍(3회), 지방해양수산청 중심의 지역단위 워크숍 및 현장견학(24회), 자율관리어업 지도자양성교육(1회),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 선진국(일본)의 어업현장 방문(3회)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동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수산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위촉(2006. 9, 4명)하고 자율관리어업에 성공한 어업인을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2006. 11, 22명)하는 등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2006. 11.22~23),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례집(30개 공동체)과 영상물(3개소)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동체별 활동실적에 따라 공동체별 등급을 부여(풍요공동체 34개소, 모범공동체 26개소, 협동공동체 248개소, 참여공동체 137개소)하고, 등급에 따라 포상 및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풍요 2~3억원, 모범 1억원)하여 공동체간 승급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관리어업 5년 실시에 대한 평가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2006. 8~2007. 4)을 추진하였다.

〈표 47〉

2006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	445	10	16	13	15	28	51	27	147	47	60	31	
육성사업	지원수	60	1	3	2	2	4	5	5	20	7	7	4
	사업비	96	1	5	3	4	6	8	7	32	15	10	5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제2절 수산자원 조성*

1. 인공어초시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과 수산자원의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71년부터 추진해 온 인공어초 시설은 적지 306,751ha 중 2006년까지 191,748ha를 시설하여 63%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역별·어종별 특성에 적합한 어초 다양화를 위해 2006년에는 정삼각 뿔형어초 등 2종을 일반어초로 선정·시설토록 하였고, 테트라형어초 등 5종을 시험어초로 선정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어초어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2,420백만 원을 투입 145,799ha에 대한 어초위치, 상태 조사 및 3,976톤의 폐어망 등을 수거하고 갯녹음현상 발생어장 361ha에 8,063백만 원을 투입 해중림을 조성하였다.

〈표 48〉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실적

(단위 : ha, 백만 원, %)

구분	'03		'04		'05		'06		'06/'05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 계	7,908	38,343	5,668	43,976	5,263	42,997	5,450	40,205	103.6	93.5
부산	164	607	108	890	104	990	88	900	84.6	90.9
인천	758	923	492	4,038	522	4,047	328	3,938	62.8	97.3
울산	76	795	52	1,000	68	849	64	788	94.1	92.8
경기	32	2,043	324	1,423	178	1,415	192	1,501	107.9	106.1
강원	590	3,460	350	2,500	354	2,494	240	2,250	67.8	90.2
충남	528	3,993	612	4,500	772	4,404	516	4,050	66.8	92.0
전북	528	2,473	535	2,184	176	2,184	1,142	5,000	648.9	228.9
전남	2,397	7,037	1,341	8,903	1,310	8,832	896	6,750	68.4	76.4
경북	428	3,270	364	3,045	140	3,045	104	2,507	74.3	82.3
경남	1,174	6,171	560	7,333	424	7,332	516	5,771	121.7	78.7
제주	1,233	7,571	930	8,160	1,215	7,405	1,364	6,750	112.3	91.2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2. 종묘방류

1971년 국립수산과학원 북제주수산종묘배양장 개설을 시작으로 국·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수산종묘배양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을 시험장별로 특성화된 전문연구센터로 전환하여 수산종묘생산 기술개발 연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에서 생산된 넙치, 조피볼락 등 정착성 고부가가치 품종 871백만 미를 매입·방류하는 등 연안 수산자원을 조성하였다.

〈표 49〉 국·도립 수산종묘생산시설 종묘생산 방류 현황

(단위 : 천마리, 천개, %)

배양장	시설 년도	주요 생산 품 종	'05	'06	'06/'05
			생산방류	생산방류	생산방류
합 계			127,120	242,249	190.6
인 천	'02	넙치, 꽃게, 전복, 대하	10,730	5,450	50.8
강 원	'97	넙치, 전복, 성게, 우렁쉥이	8,080	8,560	105.9
충 남	'06	넙치, 전복, 대하, 농어	-	630	-
전 북	'00	넙치, 전복, 대하, 꽃게	30,948	32,668	105.6
전 남	'99	감성돔, 민어, 전복, 대하	10,082	12,610	125.1
경 북	'98	참돔, 전복, 우렁쉥이, 해삼	3,040	2,930	96.4
경 남	'99	볼락, 굴, 전복, 우렁쉥이	61,840	177,571	287.1
제 주	'99	참돔, 돌돔, 전복, 오분자기	2,400	1,830	76.3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표 50〉 2006년도 시·도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현황

(단위 : 천마리, 백만원)

구분	'03		'04		'05		'06		'06/'0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26,302	5,717	100,670	8,101	92,267	8,958	128,359	10,642	139.1	118.8
부산	404	155	488	208	789	254	1,706	400	216.2	157.5
인천	684	554	990	711	3,373	917	4,080	1,094	121.0	119.3
울산	398	271	1,153	396	2,043	600	1,948	536	95.3	89.3
경기	910	343	1,968	583	1,829	939	1,913	900	104.6	95.8
강원	1,859	741	3,322	1,287	4,454	1,293	6,280	1,531	141.0	118.4
충북	581	86	1,296	129	723	142	1,295	184	179.1	129.6
충남	76,106	507	44,720	660	24,219	722	43,493	636	179.6	88.1
전북	27,887	392	16,022	649	410	152	9,603	443	2,342.2	291.4
전남	11,998	774	24,201	1,004	46,555	1,002	48,973	908	105.2	90.6
경북	1,795	613	1,180	797	1,947	611	1,881	814	96.6	133.2
경남	2,924	652	4,543	861	4,313	862	4,621	950	107.1	110.2
제주	756	629	787	816	1,612	1,464	2,566	2,246	159.2	153.4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표 51〉 어종별 종묘 매입·방류 실적

(단위 : 천마리, 백만원, %)

품종별	'03		'04		'05		'06		'06/'0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26,302	5,717	100,670	8,101	92,294	8,958	128,359	10,642	139.1	118.8
조피볼락	242	110	999	299	2,787	783	1,586	674	56.9	86.1
넙 치	2,518	1,001	6,093	1,968	4,482	1,608	3,843	1,236	85.7	76.9
감 성 돔	1,791	385	1,988	499	2,967	562	2,598	514	87.6	91.5
돌 돔	568	261	909	348	1,045	520	2,183	867	208.9	166.7
볼 락	188	67	464	174	920	284	1,887	457	205.1	160.9
해 삼	-	-	1,059	253	1,532	358	4,310	997	281.3	278.5
대 하	110,227	547	73,435	564	61,214	205	89,903	379	146.9	184.9
전 북	3,105	2,423	3,415	2,885	3,856	2,913	3,516	3,122	91.2	107.2
내 수 면	4,908	592	6,724	716	8,744	932	12,541	1,433	143.4	153.8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3. 바다목장 조성

19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06년도 사업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동안 조성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이용체계 확립 및 단위 사업별 종합 매뉴얼 또는 사업지침서를 마련하는 한편, 조성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이용을 위한 사후관리방안도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인 2007년 6월말까지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동안 바다목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사업효과를 2007년 12월까지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바다목장 사업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2단계 최종년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34억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연구·조사와 더불어 인공어초, 해중립 등 구조물 설치와 감성돔, 볼락류 등 110만 미의 종묘를 방류하는 등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2007년 사업부터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사업총괄 기관을 변경하여 전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방류사업을 총사업비 대비 약 80%로 확대하여 실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에 1단계 최종사업이 마무리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해서도 2006년도 사업에서 세부실시계획을 보완하여 시설방류사업 등의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이전 10억원 내외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설사업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바다목장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2007년도에는 당초 4개소에서 전북(직도해역), 충남(보령) 및 경남(사천) 3개소를 추가하여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연안해역에서 효율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총허용어획량제도

TAC(Total Allowable Catch ; 총허용어획량)제도란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 강화 및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그 동안 수산업법(1995년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1996년 12월)을 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TAC할당, 어획실적보고, 지도·단속 등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2002년 3월)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마련한 바 있다.

2006년에는 고등어·정어리·전갱이(대형선망어업), 붉은대게(근해통발어업), 대게(근해자망, 통발), 개조개·키조개(잠수기어업), 제주도소라(마을어업) 및 꽃게(연근해 자망, 통발 : 연평어장과 서해특정해역 한정) 등 7개 업종 9개 어종에 대하여 TAC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어업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징어 자원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오징어의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TAC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으며, TAC실시에 따른 오징어 어획 업계간의 갈등 해소 및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먼저 오징어를 대량 어획하는 4개 업종 대표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민간자율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TAC할당량의 어획량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주요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16명의 읍서비요원들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어획량관리, 해양생물자원의 과학적 자료수집, 관련법령 준수확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표 52〉

2006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현황

(단위 : 톤, %)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총허용어획량) 현황		
		TAC	소진량	소진율
대형선망	고등어	155,000	88,134	56.9
	전갱이	19,000	11,370	59.8
	정어리	5,000	0	0.0
근해통발	붉은대게	24,500	23,828	97.3
잡수기	개조개	5,100	2,672	52.4
	키조개	2,440	2,440	100.0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1,629.5	1,346	82.6
근해자망통발	대게	1,000	1,128	112.8
연근해자망통발	꽃게	4,000	943	23.6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5.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2003. 7. 15 시행된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에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관리·이용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도에서 2006년 말 현재까지 46개소 / 5,578ha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수면에 대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3절 양식어업 육성*

1. 양식어장 개발

2006년도 양식어장개발은 WTO/DDA, FTA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장 구조조정 위주의 개발정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품종, 종묘확보 곤란 및 수급 불균형으로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의 신규어장 개발금지와 유효기간 만료 후 재개발 시 일정 부분을 축소하도록 하였고, 국가 공익사업이 예정된 수면이나 각종 재해 또는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도 신규 어장개발을 금지하고, 부실관리 또는 생산실적이 부진한 어장은 동일 어장으로 재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하여 다랑어, 고등어 또는 외해(중층)가두리양식 및 키조개 살포식 양식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험어업을 거쳐 해당 양식어장으로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해역별 특성, 종묘 수급문제 등을 검토한 후 어장개발을 허용하며, 국가공익사업으로 인한 유희수면에 대한 활용을 위하여 한정어업면허의 개발과 기존어장의 여건변화로 양식이 곤란할 경우 적정품종으로의 대체개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을 통한 지속적 생산 증대를 위하여 2006년도에 27,710백만 원(농특회계 11,400, 균특회계 1,580, 수발기금 14,730)을 투입·지원하였다.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사업내용은 배합사료 구입자금 지원 235ha, 수협사료시설·운영비 지원 1개소, 사료저장고 2개소, 폐사어처리시설 1개소, 해삼양식 시설 1개소 및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2개소, 노후시설 개량 1개소, 그 밖에 친환경양식 기자재 구입자금 및 양식어장 복원사업 등이다.

제4절 내수면어업 개발*

수산용 약품지도 등을 강화하기 위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및 수산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내수면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의 연어자원 증강을 위하여 1967년부터 2006년까지 286백만 마리를 생산·방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원도 내수면개발 시험장 및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등에서 7,450천 마리를 인공 부화하여 동해안 17개 하천 및 남해안 섬진강유역에 방류하였으며, 2006년도 채포량은 45천 마리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채포되었다.

〈표 53〉

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단위 : 천마리, %)

구 분	합 계	‘67~’02	‘03	‘04	‘05	‘06	‘06/’05
방류량	286,213	240,173	14,735	12,925	10,930	7,450	68.2
채포량	1,756	1,623	36	29	23	45	195.7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제5절 어장정화*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2006년도에 마을어장 및 패류·해조류 어장 등 9,348ha을 정화하였고,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실시하여 781톤을 수거·처리하였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만(灣) 중심의 광역 정화·정비사업으로서 '96년부터 남해안 9개만(전남 4개만, 경남 5개만)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전남도(가막만) 1,410ha와 경남도(진동만, 한산만) 3,679ha의 해역에 대해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어장환경의 보전 및 어장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방안, 어장정화사업 시행체계 변경 등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어장환경기준설정 등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제6절 적조대책*

2006년도 적조는 1차 8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2차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남 가막만에서 시작하여 전남 완도군 연안과 경남 남해군 연안해역에서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가을철 수온하강에 의해 적조생물(*Cochlodinium*)이 소멸되었고, 가두리 및 육상양식장에서 전어 등 양식생물 총 702천 마리가 폐사하여 73백만 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서해안(충남 태안)에 적조생물(*Chattonella*)이 7월 24일 발생하여 9일간 지속되다가 8. 1일 소멸되는 특징을 보였다.

적조생물(*Cochlodinium*)은 일반적으로 연안수와 외양수가 만나는 전선대에서 발생하였으나 2006년에는 수온전선대 형성없이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였다.

이는 7월초 시작한 장미가 1개월 가량 지속되었으며, 장미이후 8월 고수온에 의한 수온급변화가 있었고, 특히 수심이 낮은 연안에서는 30℃내외의 고수온을 보이기도 하여 8월 6일 가막만 하단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적조 발생시부터 수온약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저층의 영양염류 공급제한이 적조의 지속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어 8월과 10월에만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민·관·군·경의 총력대응과 적조발생 초기에 인공위성, 화상통신망, 적조예보 자동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적조탐색과 적기예보·전파 등 적절한 대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시·도(시·군), 수협,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해경, 어업인 등의 참여는 물론 적조현장에 육·해군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등 총력방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06. 6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NSC(위기 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작성된 「적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시·도/시·군·구),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적조발생의근원적인 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적조로 인해 피해가 소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른 피해복구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어업인들 스스로 복구토록 조치하였다.

〈표 54〉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시기와 특징

구 분	'02	'03	'04	'05	'06
최초발생일	8. 2	8. 13	8. 5	7. 19	8. 6
소 멸 일	9. 27	10. 13	9. 3	9. 14	10. 30
지 속 기 간	57일	62일	30일	58일	36일
최 초 발생 지역	여수 붓돌바다 ~ 돌산 동안	여수 붓돌바다 ~ 남해 두미도	거제 둔덕, 남부 여차	나로도 인근	가막만 하단
발 생 범 위	완도 ~ 울진	진도 ~ 강릉	완도 ~ 거제	완도 ~ 거제	완도 ~ 남해
발 생 건 수	59건	45건	65건	39건	28건
최 고 밀 도 (개 체 / ml)	30천	48천	6천	25천	22.5천
수 산 피 해	49억원	215억원	1.2억원	10.6억원	0.7억원
소 멸 요 인	수온하강	수온하강	기상변동, 종간경쟁	태 풍 “나비”	수온하강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제7절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현재 천수만, 영광, 완도,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남해·통영 I, 남해·통영 II, 한산만, 진동만 등 10개소의 해역이 지정되어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후 20여년이 지나 어업환경 및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화되었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2차에 걸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동 연구용역 결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육지부분의 76%(1,243km² 중 941km²)를 조정(해제)하고 해면부분(2,625km²) 존치·보존하는 조정기준안(2005. 3. 21) 마련 및 조정기준안을 완화하는 지침(2006. 10. 11)을 마련하여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 55〉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현황

구역	지정면적(km ²)			조정후(육지)		최초 지정	
	계	육지(A)	해면	면적(B)	비율(A-B)/A		
합계	3,868.08	1,243.03	2,625.05	302.51	75.7%		
충남 (1)	천수만	213.45	82.67	130.78	11.8	85.7%	'78.11.
전남 (5)	완도, 함평만,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	2,164.61	768	1,396.61	204.64	73.4%	'82. 1.
경남 (4)	한산만, 진동만, 남해·통영 I·II	1,490.02	392.36	1,097.66	86.07	78.1%	'75. 3.

자료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제 2 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제1절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우리나라 EEZ의 자원량은 479만 톤으로 연간 125만 톤 내외의 생산이 적정량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한·중·일 3국 어선들에 의해 연간 160만 톤이 어획되고 있어 약 30% 내외의 과도 어획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어획은 어선의 대형화, 기관의 고 마력화, 어구어법의 발달, 과도한 어구사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어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간 정부에서는 어선감척, 허가정수 설정, 업종통폐합 등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동일한 수산자원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업적 특성으로 지역간·업종간 조업분쟁, 어업인의 이기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최근의 WTO/DDA, FTA 협상전개, 신 국제 어업질서 형성 등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일반감척으로 연안 어선 1,249척에 534억원을 지원하여 1994부터 2006까지 총5,114척 9,476억원을 지원하였다.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제2절 어업질서 확립*

1.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EEZ 및 연근해 어장에서 국내외 불법 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해경,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매입·정리

불법어업의 대명사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2004. 12. 31)』을 제정한 이후 2005~2006년까지 2개년 간 총 850억원을 투입하여 2,468척을 매입·정리함으로써 지난 50여년간 이어져왔던 소형기선저인망을 근절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312척의 전업 어업인에게 94억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하여 더 이상 불법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제 어촌사회 일각에서는 수산자원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더 이상 불법어업은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으로서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근절 정책에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여수, 사천수협을 중심으로 위판량도 정리가전인 2004년에 비해 20%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종점지도단속

2006년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어업 건수는 총 3,015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살펴보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어선의 어구위반, 조업구역위반 등이 1,578건, 무허가 등 기타어업이 1,437건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기선형망어선 194건, 대형기선저인망 48건, 중형기선저인망 30건, 기타잠수기 등이 2,743건이었다.

한편,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행위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522건으로 영해침범 조업 및 무허가 135건, 특정금지구역침범 59건, EEZ 위반조업이 382건이었다.

〈표 56〉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3,102	2,067	3,673	4,054	3,015	74
소 형 기 저	1,258	888	904	201	61	30
중 형 기 저	31	37	40	23	30	130
대 형 기 저	39	15	64	70	48	69
기 선 형 망	61	39	243	192	194	101
잠 수 기	23	27	80	98	73	74
기 타	1,690	1,061	2,342	3,470	2,609	75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2. 안전조업 지도

근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안전조업지도 대책」을 수립·시달하는 한편, 성어기별 주요 어장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어로보호 및 조업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대화퇴·동중국해 등 먼 어장에는 복지모선으로 하여금 조업중인 어선들에 대하여 유류 및 식수 공급과 더불어 긴급환자에게는 치료와 구급약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경 등과 협조하여 조난 어선 발생시 구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표 57〉 어업인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 실적

(단위 : 척, 명)

지 원 내 용	'02	'03	'04	'05	'06
식 수 공 급	4	1	10	-	11
유 류 공 급	-	-	-	2	10
의 료 지 원	165	52	24	9	17
조난어선구조	7	5	-	13	7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또한, 전국 주요 항포구 37개소의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에 배치된 어선안전점검요원 56명을 통하여 출항어선에 대한 항해·통신장비 점검 및 선원수첩 소지,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게 함으로써 출어선에 대한 월선·피랍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다.

〈표 58〉 어선원 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단위 : 명, 척,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어 선 원 교 육	62,823	60,450	58,349	56,825	55,964	98.4
어선안전점검	54,587	57,350	77,636	100,237	117,972	117.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3.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정부에서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협정업무 이행 및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업정보통신국은 매일 조업어선의 동태과약, 월선·피납방지, 어업기상예보 방송과 태풍·풍랑 등 악 기상 시 조업어선의 안전한 항·포구 대피지도, 의아 선박 발견시 긴급보고 통신 업무를 전담하여 대간첩작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EZ내 아국 및 인접국 출어선의 위치와 조업실적을 과약 관리하고, 해어황 예보와 어가유통정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연근해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산 활동을 지원도 하고 있다.

어업정보통신국은 전국 37개소(유인국 17, 무인중계소 20)에 1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도 어업정보통신국의 주요 운영실적은 교신가입어선 11,808척을 대상으로, 3,175천통의 무선전보를 송·수신 처리하였다.

또한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EEZ 출어선에 대한 위치, 어획실적 보고 154천통, 입역 및 출역통보 42천통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수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표 59〉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10,557	10,928	11,480	12,156	11,837	97.4
인 건 비(운영비)	9,819	10,300	10,976	11,305	10,984	97.2
시설보강사업비	738	628	504	851	853	100.2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4. 어업질서 지도홍보 강화

어업질서 조기확립은 무엇보다 어업인의 의식전환과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TV, 신문 등 언론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3 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제1절 수산물 가격안정*

1. 정부 비축사업

명태·오징어 등 주요품목을 주 생산 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수매하여, 성수기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으로 원활한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냉동오징어·냉동고등어·냉동명태 등 7개 품목 13.5천 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오징어 주 어획시기의 생산량 감소로 수매가 부진하여 총 12.4천 톤(265억원)을 수매하여 수급조절 및 시장 활성화를 기하였다.

〈표 60〉 2006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13,503	38,553	12,428	26,476	92.0	68.7
냉 동 오 징 어	2,400	4,199	1,695	3,790	70.6	90.3
냉 동 고 등 어	1,400	4,602	1,030	2,606	73.6	56.6
냉 동 갈 치		500	-	-	-	-
냉 동 명 태	7,000	15,312	7,000	9,646	100.0	63.0
긴 급 가 격 안 정	2,703	13,940	2,703	10,434	100.0	74.9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민간 가격안정사업

2006년도 민간가격 안정사업에 2,385억원을 지원하여 오징어·명태·조기·갈치·김 등 159천 톤을 수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저장수매지원사업에 2,053억원을 지원하여 119천 톤을 수매하였고, 가공수매 지원사업에 332억원 40천 톤을 수매함으로써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산지수협 위판장(공판장 포함)에 출하촉진을 위한 기금 920억원을 지원하여 1,239천 톤의 물량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고, 도매시장의 출하촉진을 위하여 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산물유통증진 및 상품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3.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 재고 및 2006년도 생산·수입·수출 계획을 분석·검토하여 「수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특히, 설날 등 성수기 성수품목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날대책기간(2006년 1월 16일~1월 27일)”, “추석대책기간(2006년 9월 25일~10월 15일)”을 정하여, 명태·오징어, 고등어 등 수요과다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품을 방출하는 동시에, 민간보유량의 출하도 권고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물가지도반을 상설 운영하여 재고조사 및 출하독려 등 수급조절기능을 보완하였다.

제2절 유통구조 개선*

1. 유통시설 확충

수산물의 신속한 양륙과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2006년도에 23,170백만 원을 투입하여 위판장 2개소, 직매장 3개소, 부산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추진된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국고보조 18.6억원)이 완료되어 국제적 명성을 갖춘 수산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61〉 2006년도 수산물 유통보급시설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물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합 계	7	44,132	23,170	5,714	12,858	2,390
수 산 물 위 판 장	2	2,500	950	-	-	1,550
수산물도매시장건설	1	28,572	20,000	5,714	2,858	-
수 산 물 직 매 장	3	1,200	360	-	-	840
자갈치시장 현대화	1	11,860	1,860	-	10,000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유통기능 강화

연근해(양식 포함) 수산물 생산량 2,368천 톤의 52.3%인 1,239천 톤을 산지 수협에서 상장 매매함으로써, 어업인 수취가격 제고 및 어획물의 신속 분산·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유통을 촉진하였으며,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취급물량은 382천 톤으로 산지수협 위판량의 30.8%를 취급하였고,

이 중 도매시장법인이 266천 톤으로 69.6%, 수협공판장에서 101천 톤으로 26.4%, 상장예외 물량이 15천 톤으로 4.0%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산지 및 내륙지 공판장의 환경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중도매인 등 유통중사자와 생산 어업인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수산물 32개 품목에 대하여 표준거래 단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표준규격으로 출하시 수발기금에서 148억원을 연 3%의 저리로 생산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사업자 등에 지원하였다.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협 및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법인·하역노조 등에 하역장비인 파렛트 8,233개, 지게차 22대, 전동차 4대의 구입비 337백만 원을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2002년까지 73개 산지수협의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infofishnet.co.kr) 구축을 통하여 산지수협의 위판정보(물량, 가격 등)를 어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경락정보 제공을 위하여 강동수산 등 11개 도매시장에 경락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경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강동수산 등 3개소에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 추진한 영어조합법인등 509개 어가의 홈페이지 구축과 이들 어가등이 참여한 통합수산물 전문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2005년 520백만 원 → 2006년 762백만 원) 하였다.

〈표 62〉 수산물 규격출하촉진 지원대상품목과 거래규격

품 목	거래단위	거 래 단 량	포 장 재
마 른 멸 치	봉지, 상자	500g, 1kg, 2kg	비닐, 골판지
북 어	봉지, 상자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마 른 오 징 어	봉지, 상자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굴 비	상 자	5마리, 10마리	골판지
김	봉 지	10장	비닐
마 른 미 역	봉 지	5장	비닐
마 른 실 미 역	봉 지	20g, 50g, 100g, 250g	비닐
마 른 썰 은 미 역	봉 지	20g, 50g	비닐
쥐 치 포	봉 지	200g, 500g, 1kg	비닐
마 른 새 우	상 자	500g, 1kg, 2kg, 3kg	골판지
마 른 문 어	축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뱅 어 포	속	5장, 10장	비닐, 골판지
마 른 까 나 리	상자	500g, 1kg, 2kg, 3kg	골판지, 지대
간 미 역	봉지, 상자	200g, 500g, 1kg, 3kg, 5kg, 10kg	PE필름, 골판지
새 우 젓	통, 병	1gk, 3kg, 5kg, 10kg	PE용기, 유리용기
멸 치 젓	"	1kg, 3kg, 5kg, 10kg	P.E용기, 유리용기
어 리 굴 젓	"	200g, 500g, 1kg	유리용기, 합성수지
굴	통, 봉지	200g, 500g, 1kg, 3kg, 10kg	비닐, P.E용기, P.S상자
바 지 락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P.E그물망
피 조 개	통	500g, 1kg, 3kg, 5kg, 10kg	합석, 스티로폴
고 막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P.P포대
우 령 썩 이	통	500g,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홍 합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면직물, 합성수지
고 동 류	상 자	10kg	골판지
미 더 덕	상 자	1.5kg, 2kg	스티로폴
오 만 등 이	상 자	1.5kg, 2kg	스티로폴
꽃 게	상 자	3kg, 5kg, 10kg	골판지, PVC
냉 동 오 징 어	"	2kg, 4kg, 8kg	골판지
명 태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조 기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고 등 어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갈 치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삼 치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김 1매의 크기 : 가로 206mm, 세로 189mm 이상, 마른미역 1장의 규격 : 가로 75cm, 세로 15cm 이상

〈표 63〉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물량

(단위 : 톤, %)

구분	시장명	법인명	'03	'04	'05	'06	'06/'05
	합계(18)	26	379,197	385,851	384,547	382,049	99.4
중 양 도 매 시 장	소 계(5)	11	255,835	252,742	247,325	255,457	103.3
	가락동	소계	125,685	123,928	121,152	124,311	102.6
		강동수산	70,407	70,234	66,061	63,626	96.3
		수협공판	25,206	25,860	26,308	29,318	111.4
		서울건해	23,491	20,922	20,684	22,404	108.3
		상장예외	6,581	6,912	8,099	8,963	110.7
	노량진	노량진(주)	105,200	102,191	98,102	98,300	100.2
	대 전	소계	6,824	6,102	6,269	6,107	97.4
		대전수산	6,410	5,627	5,663	5,520	97.5
		한밭건해	414	475	606	587	96.9
	대 구	소계	10,894	13,116	14,815	19,464	131.4
		대구수산	6,740	7,557	8,174	11,466	140.3
		대구종합	4,154	5,559	6,641	7,998	120.4
	울 산	소계	7,232	7,405	6,987	7,275	104.1
		중앙수산	3,192	3,215	3,206	3,473	108.3
수협공판		3,183	3,673	3,217	3,098	96.3	
울산건해		857	517	564	704	124.8	
지 방 도 매 시 장	소계(11)	13	96,178	107,175	109,632	100,063	91.3
	구 리	소계	58,777	59,847	60,447	55,571	91.9
		강북수산	24,176	22,896	25,289	24,348	96.3
		수협공판	34,600	35,394	34,310	30,404	88.6
		상장예외		1,557	848	819	96.6
	수 원	소계	4,114	5,594	6,292	6,323	100.5
		수원수산	1,306	2,446	2,829	3,039	107.4
		수협공판	2,808	3,148	3,463	3,284	94.8
	청 주	청주수산	2,948	2,501	2,223	2,183	98.2
	안 산	소계	3,667	4,077	4,317	4,582	106.1
		안산수산	3,223	4,010	4,242	4,507	106.2
		상장예외	444	67	75	75	100.0
	전 주	소계	3,620	3,484	3,159	3,686	116.7
		전주수산	1,947	1,982	1,801	1,925	106.9
		수협공판	1,673	1,502	1,358	1,761	129.7
안 양	상장예외	16,250	18,481	18,878	13,542	71.7	
충 주	충주수산	959	863	861	935	108.6	
익 산	이리수산	1,064	1,350	1,307	1,516	116.0	
광 주	수협공판		5,893	7,128	6,484	91.0	
포 향	포향수산	4,022	4,516	4,479	4,826	107.7	
경 주	경주수산	757	569	541	415	76.7	
단 독 공 판 장	소계(2)	2	27,185	25,934	27,590	26,529	96.2
	강 서	수협공판	21,678	20,773	22,403	21,694	96.8
	대 구	수협공판	5,507	5,161	5,187	4,835	93.2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표 64〉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시장명	법인명	'03	'04	'05	'06	'06/'05
	합계(18)	26	980,524	1,093,646	1,082,112	1,082,561	100.0
중 앙 도 매 시 장	소 계(5)	11	714,823	777,167	766,329	785,176	102.5
	가 락 동	소계	347,838	385,961	392,390	394,242	100.5
		강동수산	152,709	179,870	168,481	168,516	100.0
		수협공판	67,198	73,901	72,248	73,518	101.8
		서울건해	103,798	108,136	125,936	124,086	98.5
		상장예외	24,133	24,054	25,725	28,122	109.3
	노량진	노량진(주)	308,595	330,459	310,225	318,138	102.6
	대 전	소계	15,026	15,280	15,260	16,178	106.0
		대전수산	12,814	12,789	11,920	12,749	107.0
		한밭건해	2,212	2,491	3,340	3,429	102.7
	대 구	소계	21,781	25,600	27,295	33,428	122.5
		대구수산	13,013	14,731	15,846	19,232	121.4
		대구종합	8,768	10,869	11,449	14,196	124.0
	울 산	소계	21,583	19,867	21,159	23,190	109.6
		중앙수산	9,371	8,174	8,578	9,522	111.0
		수협공판	7,742	8,033	8,332	8,813	105.8
		울산건해	4,470	3,660	4,249	4,855	114.3
	지 방 도 매 시 장	소계(11)	13	210,437	254,229	252,734	234,829
구 리		소계	118,813	126,250	119,932	114,438	95.4
		강북수산	50,300	46,294	46,310	47,843	103.3
		수협공판	68,512	73,833	67,362	60,258	89.5
		상장예외		6,123	6,260	6,337	101.2
수 원		소계	8,996	11,669	12,323	12,703	103.1
		수원수산	3,486	5,886	6,003	6,207	103.4
		수협공판	5,510	5,783	6,320	6,496	102.8
청주		청주수산	5,445	4,652	4,145	4,515	108.9
안 산		계	7,434	13,145	11,906	11,749	98.7
		안산수산	6,083	11,869	11,719	11,462	97.8
		상장예외	1,351	1,276	187	287	153.5
전 주		소계	11,672	11,901	11,523	12,352	107.2
		전주수산	5,760	5,885	5,663	5,562	98.2
		수협공판	5,912	6,016	5,860	6,790	115.9
안양		상장예외	42,902	50,874	53,081	38,067	71.7
충주		충주수산	2,300	2,339	2,124	2,148	101.1
익산		이리수산	2,644	3,087	3,140	3,550	113.1
광주	수협공판		19,603	23,921	24,420	102.1	
포항	포항수산	8,041	9,031	9,004	9,649	107.2	
경주	경주수산	2,190	1,678	1,635	1,238	75.7	
단 독 공 판 장	소계(2)	2	55,265	62,250	63,049	62,556	99.2
	강 서	수협공판	39,206	48,089	48,542	48,693	100.3
	대 구	수협공판	16,059	14,161	14,507	13,863	95.6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제3절 수산물 검사*

1. 수산물검사 강화

WTO체제 및 FTA체결 확산 등 수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민 위생안전을 위하여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중국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2003년), 인도네시아(2005년)에 이어 2006년도에는 태국과 「한·태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수산물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자국 검사기관에 생산·가공시설을 등록 후 그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에 한하여 수출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는 수출전 위해요소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생약정 국가의 수산물은 수입 신고시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양식산업의 발달과 대량생산으로 양식 과정에서 항생물질의 과다 사용 유무 및 휴약 기간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항목도 기존 3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입수산물의 정밀검사 비율도 수입건수 대비 2005년도 13%에서 2006년도에는 20%로 확대하는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입수산물검사 시에는 정기적인 정밀검사와 더불어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후란, 색소 및 유기인제 농약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보따리상들의 반입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설정 자료를 확보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하기 위하여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신종 위해물질 및 사용 가능 항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식약청, 관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외국의 수산식품 위해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인체 위해물질이 함유된 불량 수산물의 수입을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는 검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수산물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검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청과 식품검사기관간 수입신고 단일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이 검사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과 위생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수출수산물의 생산·가공 등록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수입국 요구에 부합된 우량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로 불량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65>

수산물 수출·입 검사실적

(단위 : 천톤, 백만\$, %)

구 분	2004		2005(A)		2006(B)		대비(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 출	104	296	129	362	143	446	111	123
수 입	1,010	1,933	932	1,939	1,059	2,424	114	125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중성 어종과 오염 우려가 높은 양식어종 등 36종 5,359점을 대상으로 식중독균·항생물질·중금속, 말라카이트그린(MG)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생산단계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만을 생산·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산물품질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제품, 염장품 등 112개 품목에 마른뱅어포, 송어(훈제) 등을 추가하여 136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에 옥소린산 등 항생물질 4종, 말라카이트그린, 아미노산성질소 등 위생기준을 추가 강화하였으며, 학교급식 품목대상에 우수 품질인증품이 공급되도록 확대 추진하였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통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전자 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기법을 개발하여 허위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였고,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식별요령 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담당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791회(23,550명)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식용 수산물중 낚시터 방류대상 품종과 같이 성어로 수입되어 곧 바로 식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종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인체 위해물질(중금속,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하였다.

2. 검사기능 강화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화에 따른 수입증가와 더불어 불량수산물의 반입도 증가하고 있어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검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본원 분석실은 화학시험 분야(수은, 납, 카드뮴, 클로람페니콜)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ISO/IEC 17025, 2006. 12. 20)을 획득하였으며, ISO/IEC 17025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

시킴을 위하여 영국의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가 주관하는 외부숙련도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여 우수한 수준을 확보한 바 있어 국제적 선진 검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석 기술수준과 품질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자동염기서열분석장치 등 첨단 분석검사장비 55종 108대를 확보하여 분석능력을 더욱 보강하였으며, 분석검사원에 대하여는 일산화탄소·항생물질·중금속 등 관련 6개 분야 31명을 국내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석검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제4절 수산물 수출·입 대책*

1.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 관리대책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수입품 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06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뱀장어(활어), 돔(활어), 오징어(냉동) 등 10개 품목을 지정·운영하였다.

2. 수산물 수출 진흥대책

우리나라 1차산업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던 수산업은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정체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2001년도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수출은 정체를 보인 반면 수입은 매년 늘어나 2006년에도 1,680백만\$의 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이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은 수산물 수출 진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진단을 통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왔다.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 수출증대를 통한 잘 사는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고자 「현장 맞춤형 수산물 수출 인프라 확충」 「수산물 가공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수출 촉진」 「수출 지원체계 구축·활성화」라는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9개 이행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담긴 「중장기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가.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유망한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포장디자인 개발·수출 상품 카탈로그 제작·우수수산물 광고·수출주력품목 육성 등이며 2006년에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나. 수출촉진 및 증대를 위한 수산외교협상 강화

최근 수출 대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수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수산물의 제1 수출국인 일본 또한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어, 대일 수출 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한·일 양국간 고위급 회담 및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양국간 수산물 교역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대일 김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 1일 ‘일본의 김 IQ제도가 WTO 규정에 부적합’ 함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2006년 1월 20일에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김 IQ물량을 1,200만속으로 증량하기로 한·일 정부간 합의하였다. 정부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김 IQ 물량의 소진을 위해 국내적으로 우량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김 이물질선별기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의 김 할당방식 및 김 규격 등 김 IQ 제도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본측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의 IQ 대상 수산물중 유일하게 매년 소진되고 있는 다시마조제품 IQ 물량의 증대를 요구함으로써 일본은 2006년에 다시마조제품의 IQ 물량을 2005년보다 100톤이 증량된 600톤으로 할당하였다.

다. 수출업체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 추진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6년에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료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 1,366억원을 연리 4%(업체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3.0%~3.5%)로 융자 지원하였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국내 생산량, 수출동향 및 일본·미국·중국 등의 해외시장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4월부터 매월 수산물 수출업체(500여개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제5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1. 가공제품 생산

2006년도 수산물 가공제품생산은 1,547천 톤으로 전년도 1,559천 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되었으며, 처리 형태별·품종별 생산추이는 <표 66>과 같다.

<표 66>

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단위 : 톤, %)

구 분	'03	'04	'05	'06	'06 / '05
합 계	1,357,717	1,528,795	1,559,201	1,546,784	99
○ 고차가공품	253,734	348,007	316,029	298,386	94
- 동결처리	46,233	60,047	57,213	52,102	91
- 통 조 립	80,608	159,638	138,585	149,487	108
- 한 천	347	458	443	329	74
- 연 제 품	91,121	96,581	88,290	69,350	79
- 조미가공품	21,501	22,486	19,759	19,500	99
- 어 유 분	13,924	8,797	11,739	7,618	65
○ 단순가공품	1,103,983	1,180,788	1,243,172	1,248,398	100
- 원형동결	983,951	993,030	965,868	980,958	102
- 건 제 품	26,724	53,064	58,343	69,259	119
- 염신장품	37,381	34,626	43,534	42,998	99
- 해조제품	28,511	71,265	153,597	135,668	88
- 기 타	27,416	28,803	21,830	19,515	89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2. 가공산업 지원

수산물 가공제품의 생산증대와 산지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 시설자금 149억 원과 가공업체 운영자금 120억 원 등 26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표 67>과 같다.

이와 별도로, 수산물 유통의 One-Stop 체제 구축과 원양어획물의 가공수출 등 물류센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산 감천항에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67>

가공업체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03		'04		'05		'06		'05/'04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70	20,582	93	23,645	37	19,251	45	26,929	140
◦ 시설 자금	33	11,402	43	12,700	37	11,251	45	14,929	133
- 냉동냉장시설	5	4,650	5	5,000	4	4,611	3	3,389	73
- 가공시설현대화	-	-	2	1,080	3	1,560	4	3,600	231
- 산지가공시설	4	1,552	10	3,740	7	3,700	17	6,680	181
- 선어회가공시설	4	4,000	3	1,500					-
- 기 타	20	1,200	23	1,380	23	1,380	21	1,260	91
◦ 운영 자금	37	9,180	50	10,945	-	8,000	-	12,000	150
- 냉동냉장업	22	6,635	18	5,150					
- 통조림제조업	7	1,090	4	700					
- 조미가공업	-	-	1	100					
- 해조가공업	5	920	8	1,190					
- 연제품가공업	1	90	1	100					
- 기 타	2	445	18	3,705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 '05년부터 가공업체 운영자금은 업종별로 분류 않고 통합운영

3.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증표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하하게 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3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로 구분된다.

수산전통식품은 예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우리 고유식품의 계승 및 육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하고, 공장심사 및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상품에 「물레방아」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서, 2006년 말 현재 젓갈류·죽류·계장류 등 5개류 47개 품목을 지정하여 66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1999년 최초로 송어 어란 제조 기능보유자를 수산물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표 68〉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젓갈류 (30)	○ 젓갈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우렁챙이(명게), 청어알, 가리비, 갈치속, 한치, 전복 ○ 액젓 :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 식혜 : 가자미, 명태
죽 류(6)	○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계장류(3)	○ 꽃게, 민꽃게(돌게), 참게
건제품(2)	○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 타(6)	○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한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산지특산물을 대상으로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인증하여 상품에 「품」자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서,

인증대상품목은 2005년 말 현재 마른오징어·마른멸치·굴비·마른옥돔·마른한치·마른꽃새우·덜마른오징어·간미역·간다시마·김·찢툇 등 5개류 57개 품목에서 2006년에 건제품, 해조류, 횡감용·냉동수산물, 조미가공품 5개류 26개 품목을 확대하여 111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다.

〈표 69〉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건제품 (15)	○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마른홍합, 마른굴, 콩치과메기, 마른뱅어포, 덜마른한치
염장품(3)	○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 (9)	○ 마른김, 마른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찢툇, 마른김(자반용)
횡감용 수산물 (23)	○ 신선·냉장품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쉥이, 생굴, 홍어, 병어, 전어 ○ 냉동품 : 새조개, 피조개, 새우, 북방대합, 한치, 참치, 학공치, 홍어, 병어, 키조개(개아지살)
냉 동 수산물 (28)	○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콩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개아지살),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대게살(자숙, 각육)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표 70〉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조미가공품(9)	○ 조미취치포, 조미개량조개, 조미오징어, 조미썬오징어, 조미즐인오징어, 조미썰은취치포, 조미늘인취치포,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해조가공품(2)	○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제 4 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제1절 어촌개발

1. 어촌종합개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반면,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 집중, 지역간 또는 도시·어촌 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 개발후유증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의 수산정책도 증산지향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어촌개발은 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어가 수는 1997년 100천 호에서 2006년도에는 77천 호로 줄어들었고, 도시가계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은 1997년 74% 수준에서 2006년도 72.6%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1988년부터 시범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어촌계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어·패류양식 등 소득증대 사업과 도로 등 생산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어업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을 스스로 선택·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향식 개발방식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정부 사업방식과는 매우 다른 내용의 사업이었다.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국에 바다와 접하고 있는 시·군이 65개임을 고려하여 “1개 시·군에 1개 어촌계씩” 6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18,742백만 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65개 사업 실시 어촌계 중에서 27개가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노인·부녀·장년·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협의하게 됨으로써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전국의 모든 어촌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여러 개의 어촌계를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총 160개 권역)하고 선정된 권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994년 7월 농어촌발전특별세의 신설로 투입재원 5,432억 원을 확보한 후, 1995년도부터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당해연도에는 21개 권역에 52,500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2006년도까지 152개 권역에 526,531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71〉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 분	합 계		'88~'92	'94~'04	'05	'06
사 업 량	완 료	217	65	130	5	17
	계 속	18	-	0	18	0
사 업 비	545,273		18,742	455,068	32,817	38,64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주 : 1. 지원율 : (1988~1992년) 국고 70%, 지방비 30%
 (1994~2003년)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2004년 신규사업부터)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 2. 사업량 중 1988~1992년 기간은 어촌계수이며, 1994년 이후는 권역수임
- 3. 본 사업은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3년부터는 2개년사업으로 추진

〈표 72〉

시·도별 어촌관광 지원 실적

(단위 : 권역, 백만 원)

구분	합계	인 천	강 원	충 남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권역수 사업비	17 38,646	1 2,644	1 2,406	1 2,406	12 27,724	1 2,280	1 1,186	<삭제>
권역명		용진 북도· 영흥	강릉 강릉동	서천서천	여수 화정 여수 남면2 고흥 동일 고흥여자만 해남 송지1 무안 월두 완도 소안 완도 고금 진도남동 진도 전두 신안 자은 신안 안좌	포항월포	통영한산2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주 : 기본조사용역비는 제외된 수치임

지원규모는 권역당 평균 3,500백만 원으로서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이며, 특히 자담 5% 중 공공부문은 집행주체인 시·군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 최대한 어업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 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수산특산물 가공·공동작업장 등 수산업관련 육상 시설, 낚시터·직판장·관광낚시어선 등 어촌소득기반시설 등이며, 이 사업은 어업소득과 어업 외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환경개선을 연계시킴으로써 어촌정주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 어촌관광 활성화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 어업여건의 악화에 따른 어촌의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고, WTO/DDA, FTA 협상 등 시장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어촌지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소득 증가 및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어촌관광모델 24개소(어촌어항 복합 공간 7개소, 다기능어항 6개소, 어촌관광단지 11개소)를 대상으로 4,732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어촌계장 등 어촌마을 리더그룹에 대한 어촌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어촌관광 컨설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어촌교류방안 등을 담은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마련(2004. 5)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1) 어촌관광모델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에 따라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 어촌」을 모토로 우선 어촌관광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표 73>와 같이 모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어촌·어항복합공간 3개소, 다기능어항 6개소, 어촌관광단지 4개소 등 13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쳤고, 어촌·어항복합공간인 마량항과 어촌관광단지인 무창포항에 대한 시설사업이 착수된데 이어

2006년도에는 어촌·어항 복합 공간 3개소, 어촌관광단지 4개소 등 7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쳤고, 어촌·어항 복합 공간 4개항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어촌·어항복합공간 3개소(마량, 양포, 정자), 다기능어항 1개소(대포항), 어촌관광단지 4개소(대송, 대진, 무창포, 방축)에 대한 시설사업을 착수하였다.

특히, 어촌·어항복합공간인 마량항에 대한 어항부문 시설공사가 모델사업 중 최초로 준공됨으로써 본격적인 어촌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표 73〉 어촌관광 모델개발사업(시범사업)

구 분	I형(복합공간)	II형(다기능어항)	III형(어촌관광단지)
개 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항 + 관광기능 ⇒ 다기능어항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기간	◦ 6개년('04~'09)	◦ 6개년('04~'09)	◦ 6개년('04~'09)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지자체	◦ 해양수산부	◦ 지자체
사업 대상	◦ 7개소('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6개소('04.10.25선정) 대변항(부산시 기장군) 대포항(강원도 속초시) 홍원항(충남 서천군) 국동항(전남 여수시) 격포항(전북 부안군) 지세포항(경남 거제시)	◦ 11개소('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 규모	◦ 총 1,079억원 -개소당 150억원 .어항부문:100억원 .어촌부문:50억원 .국비:25억원 .도비:25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29억원	◦ 총 2,957억원 -개소당 500억원 .국가어항부문:300억원 .민자유치부문:200억원 * 대포항 372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85억원	◦ 총 696억원 -개소당 60억원 .어촌부문:60억원 .국비:30억원 .도비:30억원 -기본설계및홍보비 36억원
주요 시설	◦ Fisherina, 녹지공원 복지회관, 생태체험장	◦ Seafood센터, 마리나 해상위락시설, 관광호텔	◦ 수변공원, 산책로 Seafood센터

2)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은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의 세어도마을 등 18개 마을을 조성하였다.

〈표 74〉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76	2	4	8	6	7	4	20	7	12	6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2006	18	-	1	2	3	4	-	8	1	4	1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표 75〉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투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1시범사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사업량	112	9	8	11	12	18	18	
사업비	합 계	68,222	9,422	4,000	5,500	6,000	11,000	13,800
	국 비	34,111	4,711	2,000	2,750	3,000	5,500	6,900
	지방비	30,700	4,240	1,800	2,475	2,700	4,950	6,210
	자부담	3,411	471	200	275	300	550	69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3) 기타시설

1998년부터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 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공간 제공과 지역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어업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 수산·친 해양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4년까지 7개 지역에 개소 당 60억 원을 투입하여, 2004년 말까지 전남 완도(60억 원)·경남 거제(60억 원)·강원 삼척(60억 원) 등 3개 지역이 완공되어 지역관광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부산 북구(60억 원), 경기 안산(60억 원), 경북 영덕(60억 원), 제주 북제주(60억 원) 등 4개 지역에 240억원(국비 120억 원, 지방비 120억 원)을 지원하여 준공하였으며, 현재 7개소가 개관하여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 어촌관광홍보 및 도시/어촌교류

1) 어촌관광홍보

2006년은 5억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어촌 찾아가기 행사(28회 1,490명)를 추진하였고,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등 어촌관광 관련 박람회에 참가(2회)하여 어촌관광모델 전시 및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언론매체 및 지하철 광고판,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어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76〉

연도별 어촌관광홍보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어촌관광홍보	-	-	-	130	530	58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 도시/어촌교류

어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공동화의 지속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어촌을 되살리고자 도시와의 교류의 일환으로 2005. 5. 24. 어촌사랑 선포식과 함께 100개의 기업·단체와 100개의 어촌이 처음으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고 교류의 물꼬를 터 2005년에 214개, 2006년에 225개의 기업·단체와 어촌이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는 외연확대와 함께 상호 방문 및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시/어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2절 어항시설 확충

1. 어항개발의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여 <표 78 참조>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77>

어항지정 현황

(’06.12.31기준)

구 분		항 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 고
법정항	국가어항	105	해양수산부	국비 100%	
	지방어항	287	시·도	국비 80% 지방비20%	
	어촌정주어항	521	시·군·구	지방비100%	
비 법정항	소규모항	1,393	시·군·구	지방비 100%	육지 : 556개항 도서 : 837개항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 어항개발현황

가.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을 착수한 이후 105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31,324억 원 중 2006년까지 총사업비의 67.7%에 해당하는 21,218억 원을 투입하여 85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81%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표 78>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수	105	2	5	2	-	14	7	6	30	15	18	6
완공항	85	2	4	2	-	12	5	5	24	12	14	5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006년에는 54개 항에 1,403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투입중인 전남 여호항 등 4개 항을 완공하고, 강원도 아야진항 등을 관광친수어항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시범개발중인 부산 대변항 등 5개 다기능어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위도항 등 3개 항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하였다.

나. 지방어항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항을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완공율이 저조함에 따라 1994년부터 농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52개 항에 535억원(국비 428억원, 지방비 107억원)을 투입 7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7개항 중 113개 항이 완공(완공율 39%)되었다.

<표 79>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287	14	15	4	5	14	29	10	92	23	63	18
완공항	113	10	9	2	3	3	13	3	26	8	26	1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다.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하였으며, 2006년 현재 521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방어항의 완공율이 부진함에 따라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을 위하여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80〉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지정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521	14	28	13	10	19	16	0	26	4	345	4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제3절 어선건조 및 장비·설비 현대화*

1. 친환경 어선건조 지원 및 안전설비 지원

당초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선 현대화를 위하여 1977년 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따라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최근 FRP가 환경오염물질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6년도부터는 친환경 재질인 알루미늄에 한하여 어선 건조를 지원하였다.

2006년도에는 예산 8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재질의 어선건조를 지원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2척(7.75톤)의 알루미늄 어선을 건조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는 사상 최초로 알루미늄 재질의 어선을 건조한 것으로 향후 알루미늄 재질의 어선 건조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2007년부터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배치된다는 국회(2005 예결위) 지적이 있어 동 사업이 중단된다. 한편, VHF 무선설비는 2006년도에 예산 200백만 원을 투입하여 316대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사업에서 지원된다.

2.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지원

가. 어선기관 대체 지원

1977년부터 연근해어업 진흥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1988년 이후 보조 지원을 중단, 용자사업으로 전환 지원하고 사업명칭도 어선기관 대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716백만 원을 지원하여 5,864마력을 대체하였다.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팀

나.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지원

1977년부터 해양사고 예방 및 어선의 피해 최소화 등 원활한 구조를 위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1983년 이후 보조지원을 중단하였다. 2006년도에는 320백만 원을 지원하여 16척의 장비 및 설비를 개량하였다.

다. 어선용 기계 공급 지원

1994년부터 무전기, 레이더 등 영세어업인의 기계구입 부담을 줄여 조업능률 향상과 안전조업을 도모토록 하였다. 2006년도에는 200백만 원을 지원하여 35대의 어선용 기계를 지원하였다.

2007년도부터는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에 포함되어 추진된다.

〈표 81〉

2006년도 친환경 어선건조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보조	용자	소계	자담
합 계			2,945	400	1,836	2,236	709
소 계			1,400	400	600	1,000	400
농 특	친환경어선건조	33.34톤	1,000	200	600	800	200
	VHF무선설비	832대	400	200	-	200	200
소 계			1,545		1,236	1,236	309
기 금	어선 기관대체	5,594마력	895	-	716	716	179
	장비·설비개량	8척	400	-	320	320	80
	어선용기계공급	50대	250	-	200	200	5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팀

제 5 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제1절 국제 어업협력 강화

1.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

200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어선이 입어한 연안국은 5대양에 걸쳐 26개국으로 200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어선이 입어한 연안국은 5대양에 걸쳐 28개국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나 작년에 입어하였던 국가인 미얀마와 남아공은 올해 미 입어하였고 오만과 케냐는 재 입어하였다.

우리나라가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13개국이나, 특히 우리 어선이 입어한 28개국 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함에 따라, 기 체결된 어업협정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모색 및 연안국에 대한 어업협력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2006년도에 우리어선이 입어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상호 입어하는 일본, 중국과는 입어료를 상호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 원양어선이 일방적으로 입어하는 28개국은 입어료를 지불하고 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가 연안국에 지불한 입어료 총액은 57,972천 \$, 어획량은 639천M/T으로서 2005년도의 입어료 총액 57,647천 \$, 어획량은 552천M/T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4, 2005년도 어획량 감소원인이었던 포클랜드 수역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어황 회복에 기인한다.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우리나라 어선이 연안국에 입어하는 조건 즉, 조업수역 및 척수, 어획 할당량, 입어료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어업회담을 개최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어선의 원활한 입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의 하나로써 태평양 도서국(키리바시, 솔로몬), 아프리카 연안국(기니, 기니비사우, 앙골라) 및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에 대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246백만 원 상당의 물자공여 사업을 시작했다.

아울러 우루과이, 콜롬비아 수산협력약정문안 최종합의, 알제리, 브라질과 수산협력약정을 체결 추진하였다.

〈표 82〉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일	발효일	비 고
합 계			13개국
중 국	'00. 8. 3	'01. 6.30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일 본	'98.11.28	'99. 1.22	6개월전 통보로 종료
파푸아뉴기니	'92. 1.25	'92. 4.15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러 시 아	'91. 9.16	'91.10.22	6개월전 폐기통보 없을시 매 1년씩 연장
모 리 타 니 아	'84. 1. 7	'84. 1. 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에 쿠 아 도 르	'84. 5.22	'84. 9.19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호 주	'83.11.23	'83.11.24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투 발 루	'80. 6.18	'80. 6.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쿡 아 일 랜 드	'80. 8.25	'80. 8.25	3개월전 통보시 종료
솔 로 몬	'80.12.12	'80.12.12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키 리 바 시	'80.12.18	'80.12.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프 랑 스	'80. 9.19	'80.12.19	3개월전 통보시 종료
이 란	'77. 5.11	'78. 4. 1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표 83〉 양국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 부처	체결(발효)	비 고
합 계			4개국
노르웨이	수산부	'02. 1.24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등
베트남	수산부	'02. 4.23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02. 4.26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농축수산식품처	'03. 9. 1	수산·양식 기술의 공동개발 등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가. 한일 어업협정*

1998년 11월 28일 체결한 『한일 어업협정』에 의거, 2006년 한일 어업협상은 2005년 12월 22일 서울에서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EEZ 입어규모를 1,050척, 어획할당량은 63,500톤(등척·등량)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을 결정하였다.

또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중 2007년의 어획할당에 관련된 것의 정보제공을 1회 실시하였고, 조업질서를 위한 조치로서 지도·단속 실무자회의를 1회 실시하였다.

2006년도 양국어선의 조업실적은 우리어선 749척이 입어하여 24,125톤을 어획하여 소진율은 할당량 대비 38.0%로서, 어획량은 지난해 20,306톤보다 3,819톤 증가하였다. 업종별 조업현황은 콩치붕수망어업의 소진율이 98.1%로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오징어채낚기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선망어업은 전년 비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업종은 전년 비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한편, 일본어선은 148척이 입어하여 9,517톤을 어획하여 소진율은 할당량 대비 15.0%로서, 어획량은 지난 해 9,640톤보다 123톤 감소하였다. 업종별 조업 현황은 일본의 주력업종인 대중형선망, 이서저인망어업의 어획량이 전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2006년도 한·일 양국간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

구 분	합 의 사 항		조 업 결 과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 국 어 선	1,050	63,500	749	24,125	38.0
일 본 어 선	1,050	63,500	148	9,517	15.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나. 한·중 어업협정*

2000년 8월 3일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 2006년 한·중 어업협상은 2005년 12월 27일 중국에서 『제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EEZ 입어규모를 우리 측은 6개 업종 1,600척 68,000톤, 중국 측은 4개 업종 1,975척 72,9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을 결정하였는데, 우리 측은 전년 수준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측의 어선은 지난해 2,100척 보다 125척을 감축하였다.

2006년도 양국 어선의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실적을 보면, 우리 어선은 232척이 입어하여 2,622톤을 어획하였고, 소진율은 할당량 대비 3.9%,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53% 감소하였다. 업종별 조업현황은 낚시류가 생산량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그 외의 업종은 전반적으로 입어실적이 미미하였다.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한편, 중국어선은 1,729척이 입어하여 30,392톤을 어획하였고. 소진율은 할당량 대비 41.7%, 어획량은 지난 해 대비 9.1% 증가하였다. 업종별 조업현황은 우조(채낚기) 어획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어선의 소진율이 낮은 이유는 중국어선의 밀집조업과 어장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경제성 저하로 입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우리어선의 소진율 향상을 위하여 2007년도 중국 측과의 입어 교섭시 우리 주력업종인 낚시류 어업의 조업여건 개선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입어규모의 실질적 균형 문제와 어종별, 업종별 할당에 대해 토의했다.

〈표 85〉 2006년도 한·중 양국간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단위 : 척, 톤, %)

구 분	합 의 사 항		조 업 결 과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 국 어 선	1,600	68,000	232	2,622	3.9
중 국 어 선	1,975	72,900	1,729	30,391	41.7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다. 한·러 어업협정*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쿼터에 의한 입어 등을 협의해 오고 있다.

러시아 수역은 다른 원양수역과는 달리 우리 바다와 연접해 있어 어장간 거리가 짧아 어업경비 소요가 적고 조업관리도 용이(러시아 15일, 남미·대서양 60일, 인도양 45일)하는 등 장점이 많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3대 어종인 명태의 총 생산량 중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특히,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이후 북해도 수역 명태트롤어선이 철수함에 따라 북양트롤어선은 대체어장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러시아어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 어장은 명태 외에도 청어·대구·꽁치·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자원량이 풍부하여 수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86〉

명태생산 추이

(단위 : 톤,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25,040	22,132	20,073	26,029	26,308	101.1
원 양	소 계	24,825	21,890	20,009	26,004	26,248	100.9
	러 시 아	24,825	21,890	20,009	26,004	26,248	100.9
	북 해 도	-	-	-	-	-	-
연 근 해		215	242	64	25	60	240.0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획쿼터는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간 교대로 개최되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정부간 쿼터가 결정되고 있으며, 어선별 배정은 정부간 쿼터가 확정된 이후 한국원양어업협회 “북양트롤 위원회”에서 어선별 톤급과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어획쿼터 배정이 확정되면 러시아 “국가어업위원회”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된다.

2004년 12월 개최된 제14차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총 32,250톤이 배정되었으나, 러시아수역의 어업자원상태를 고려하여 한국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키로 한 2004년 양국 정상간의 공동선언 결과에 따라 2005년도에 중국에 배정키로 되어있던 명태쿼터 중 6,000톤이 추가 되어 총 36,250톤이 배정되었다.

2005년도 정부간 쿼터 소진 현황을 보면, 명태는 쿼터 26,500톤중 26,004톤(98.1%)을 소진하였고, 대구는 쿼터 2,650톤중 2,644톤(99.8%)을, 오징어는 쿼터 6,000톤중 2,515톤(41.9%)을, 꽁치는 쿼터 2,500톤중 2,489톤(99.6%)을 소진하여 총 쿼터 38,250톤중 34,248톤(89.5%)을 소진하였다.

2006년도 입어를 위한 제15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2005년 12월(서울) 개최하여, 명태 20,500톤, 오징어 6,000톤, 대구 2,650톤, 꽁치 2,500톤, 가오리 600톤, 청어 250톤, 복어 200톤 등 총 32,700톤의 정부쿼터를 할당받고, 어류·기타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위생안전보장 및 불법교역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문안확정과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기 위한 회의를 2006년중에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도 정부간 쿼터 소진현황을 보면 명태는 쿼터 26,250톤 중 26,248(99.9%)를 소진하였고, 대구는 쿼터 총 2,650톤 전량 소진하였으며, 오징어는 6,300톤중 4,840톤(76.8%)을, 꽁치는 쿼터 2,500톤중 1,839톤(73.6%)을, 가오리는 600톤 598톤(99.7%)을 청어는 325톤중 31톤(9.5%)을 소진하는 등 총 쿼터 38,825톤중 36,205톤(93.3%)을 소진하였다.

2007년도 입어를 위한 제16차 「한·러어업위원회」는 2006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여 명태, 20,500톤, 오징어 7,000톤, 꽁치 2,500톤, 가오리 800톤, 청어 250톤 등 총 34,115톤의 정부쿼터를 할당 받았다.

〈표 87〉

연도별 한·러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단위 : 톤,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72,322	177,155	134,055	173,635	166,822	96.1
·명 태 쿼터	63,446	167,886	128,740	165,391	156,865	94.8
- 정부 쿼터	24,852	21,890	20,009	26,004	26,248	100.9
- 민간 쿼터	38,594	145,996	108,731	139,387	130,617	93.7
·직 접 어 로	-	-	-	-	-	-
·공 동 어 로	-	-	-	-	-	-
·합 작 사 업	38,594	145,996	108,731	139,387	130,617	93.7
·기 타 사 업	8,886	9,269	5,315	8,244	9,957	120.8
- 대 구	5,332	2,499	2,648	2,644	2,649	100.2
·정 부 쿼터	2,497	2,499	2,648	2,644	2,649	100.2
·민 간 쿼터	2,835	-	-	-	-	-
- 청 어	-	-	-	-	31	-
·정 부 쿼터	-	-	-	-	31	-
·민 간 쿼터	-	-	-	-	-	-
- 오 징 어	2,259	2,586	2,294	2,515	4,840	192.4
·정 부 쿼터	2,259	2,586	2,294	2,515	4,840	192.4
·민 간 쿼터	-	-	-	-	-	-
- 콩 치	1,295	4,184	-	2,489	1,839	73.9
·정 부 쿼터	1,295	4,184	-	2,489	1,839	73.9
·민 간 쿼터	-	-	-	-	-	-
- 기 타	-	-	400	496	598	120.6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2.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

가. 국제 어업 변화 동향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1994년 11월) 및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1995년 8월) 등으로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국제적 어업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관할기구 부재수역에 대하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2004년 6월 설립되었으며,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 허용 어획량(TAC)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자원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 국제어업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원양 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 보장과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수산기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업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 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 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방류한 연어자원에 대한 국제적 권리확보와 선진 과학기술 습득을 위해 북태평양 소하성어족 보존위원회(NPAFC) 가입을 추진하여 2001년 “제9차 연례회의”에서 필요한 교섭을 마치고 2003년 5월 가입하였다.

그 동안 특별한 규제가 없어 관심이 적었던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에도 2002년도부터 옵서버로 계속 참석하여 정확한 기구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기구 가입을 추진키로 하여 14개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2005년 12월 정식으로 가입 완료하였으며,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4개국간 북서태평양지역의 저층어업관리체제를 논의하는 북서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NWPRFMO) 설립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창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다.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주요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기 가입한 15개 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 추진 중이거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산관련 국제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도모는 물론, 장기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표 88>와 같다.

<표 88>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2006년 12월 기준)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	FAO 수산위원회	로 마 (1965. 5)	1965.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 리 (1961. 9)	1996.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12	일본, 미국 등 59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 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4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이용
6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 애 틀 (1995.12)	1995.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 나 다 (1979. 1)	1993.12	캐나다, 러시아 등 13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 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3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 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3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 콕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 페 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39개국	대서양 다랑어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 이 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3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 주 (1994. 5)	2001.10	일본, 호주 등 5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1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마이크로 네시아 (2004. 6)	2004.10	호주, 뉴질랜드 등 17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5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벤쿠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6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가입 추진	앙골라 등 3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7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야 (1950.3)	2005.12	미국, 일본 등 15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18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콕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협약 (SIOFA)	미정 설립준비	"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라. 책임 있는 어업의 이행 및 기타 사항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각종 국제어업규범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업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또한 지역수산기구를 비롯하여 각 연안국에서는 관할 수역내 조업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 확인 등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감시체제(VM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하고 조업 위반여부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명확한 증빙자료 확보와 선박조난 발생시 수색 구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에 VMS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2006년 원양어선 200여척 및 러시아수역에 입어하는 근해채낚기 어선 100여척 등 총 300여척의 어선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표 89〉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2006년 12월 기준)

구분	계	북양 트롤	콩치 붕수망	원양 선망	저연승	참치 연승	해외 트롤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척수	382	7	20	28	20	169	119	29
설치현황	205	7	20	-	7	169	2	-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특히, 지역수산기구에서는 규제조치 준수여부 감독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생물학적 정보 수집을 위해 조업어선에 옹서버 승선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옹서버 승선에 따른 우리 어선의 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02년에 국제옹서버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태평양도서지역사무소에서 2002년에는 국제옹서버 요원 5명에 대하여, 2003년에는 국내 자체 교육 실시를 위해 전문교관 4명, 2004년부터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국제옹서버요원 5명을 선발하여 국내훈련을 실시하고, 일부 요원들을 해외자원 시험조사에 참여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옹서버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어업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과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전문적인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국제기구별로 지정된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회의 참석시 대표단 자문 등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의 참석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통한 feedback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였다.

2005년의 경우 5명의 민간 전문가가 총 7회에 걸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였고, 그 동안 취약했던 수산관련 국제협력분야의 민간 전문인 양성에도 기여하는 등 부수적 성과를 이루었다.

3. 남북수산협력 추진*

남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21~6.24.)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5.7.9~7.12)에서 남북수산실무회담 개최문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렸다.

동 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상 공동어로,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통제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진행, 우량품종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이후 수산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NLL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2006. 3. 2 ~ 3. 3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주장하여 서해공동어로 및 바다목장 사업 등이 논의되지 못함
2006. 3. 15	남북수산실무 회담 개최제의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를 위한 수산실무회담(실무접촉포함)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군사회담과 서해공동어로의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혁신기획단

2006. 4. 22 ~ 4. 24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	서해공동어로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함
2006. 5. 16 ~ 5. 18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군사회담과 동일하게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공동어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이 결렬
2006. 6. 3 ~ 6. 6	제 1 2 차 남북경제협력추 진위원회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개최 지연
2007. 2. 27 ~ 3. 2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 으며, 남북은 4.18~21일까지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제추위를 개최하기로 합의

나. 기타 추진실적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학계, 업계, 법조계, 언론계, NGO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남북수산협력자문위원회(2005.11.16.)를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3차례의 「남북수산협력포럼」 개최하여, 수산부분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 및 정책을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제3차 남북 장관급 군사회담이 열린 직후인 2006년 3월 15일에는 제10차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을 개최하여 남북수산협력의 추진계획 및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사업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 검증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2006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수산분야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남북 수산물교역 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는 등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6년 7월에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북 고성을 방문하여 북한 의 활어 생산 실태 및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검토를 위한 현장 답사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관련업체와 중국을 방문하여 2006년도 북중간 공동어로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해 평화정착 T/F’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제3국 어선불법 조업과 공동어로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처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제2절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1. 기존 어장의 확보

가. 참치어업

우리나라 참치어업은 1957년 지남호(230톤급)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으로 출어한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의 참치주 조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참치어업의 주 어장은 연승어업의 경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중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키리바시, 솔로몬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으며, 선망어업은 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 마이크로네시아 수역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연승어업은 169척이 출어하여 46천 톤을 어획하였으며, 선망어업은 28척이 출어하여 249천 톤을 어획하였다.

나. 오징어어업

우리나라 오징어어업은 1985년 남서대서양(포클랜드)어장이 개발되면서 채낚기어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1993년 페루어장 진출, 1995년 알젠틴 관할 수역내에 용선형태의 입어, 1997년 우루과이 어장 진출 등으로 해외어장을 확대하였다.

1997년도에 오징어 과잉생산으로 어가 폭락과 더불어 1998년도에 불어 닥친 IMF 영향에 따른 출어척수 감소로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포클랜드 어장의 어획 호조로 309천 톤의 어획량을 보임에 따라 재고누적으로 업계 자율적인 어획량 감축을 실시하여 2000년에는 178천 톤을 어획하고, 2001년도에는 이보다 15천 톤이 감소된 163천 톤을 어획하였다.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하지만 2002년도에는 엘리노 현상으로 포클랜드 어장의 어황 저조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141천 톤을 어획한 후, 2004년도에는 극심한 어획부진에 따라 포클랜드 정부의 조업 조기종료 선언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오징어채낚기 업체의 건의로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19척을 감척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도에는 원양오징어 어장의 어획 호전으로 전년대비 211% 증가한 88천 톤을 어획하였다.

다. 트롤어업

(1) 북양 트롤

북양트롤어업은 1966년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의 베링해 공동시험조업 실시를 효시로, 1967년 삼양수산(주) 등 민간업체들에 의한 상업조업 개시로 본격화되었으나 1977년 3월 “미·소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소련의 감차가 근해 및 미국 수역에 출어 중이던 북양 트롤 어선들이 전면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중 일부 미국수역에 남아 쿼터조업과 공동어로사업으로 조업하던 어선마저도 쿼터조업은 1987년에, 공동어로사업은 1991년을 끝으로 완전히 철수하였다.

1987년부터 시작된 베링공해조업도 1992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베링공해관련국제회의” 결과에 따라 1993년부터 2개년 간 잠정적으로 조업중단이 이루어졌고, 1994년 6월 서명한 『중부베링해명태자원의보호및관리에관한협약』에 의거 명태 자원 량이 167만 톤이 될 때까지 조업을 계속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호츠크공해에 대하여도 1993년 11월 15일 한·러 어업위원회시 양국간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오호츠크공해 조업을 자제키로 함에 따라, 1993년 4월 25일 이후 실시된 조업중단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 한·러 국교 수교에 따라 민간쿼터를 이용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

하기 시작한 북양트롤어업은, 1991년 9월 『한·러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됨에 따라 매년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마·러 수역에서 철수한 북양트롤어선들은 일본 북해도 영해 외측에서 조업하여 오다가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1999년 11월 전면 철수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측은 어업자원 및 자국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외국정부용 쿼터량을 감축하고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오호츠크 해에 대하여 외국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1년부터 민간쿼터가 국제 입찰로 제도가 변경되어 자국민에게 우선 입찰을 실시하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에게 입찰을 허용하고 있어,

2002년도 민간쿼터 명태 입찰에서 전량 러시아 자국민이 낙찰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는 민간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우리 어선들은 안정적인 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도는 정부쿼터 26천 톤의 명태쿼터를 확보하여 전량 소진하였다.

(2) 태평양 트롤

1977년 마·러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선 일부가 뉴질랜드 수역으로 어장을 이동하였으며, 1978년에는 양국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쿼터조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뉴질랜드정부의 자원자국화 정책에 따라 외국에 대한 쿼터량이 계속 감소되다가 1992년부터는 정부쿼터가 종식되고 현재는 민간 개별협력에 의해 쿼터량을 확보하여 조업중에 있다.

또한 1986년부터 진출한 인도네시아수역 등은 최근 외국어선의 과당 경쟁으로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연안국들이 자원자국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날로 어업여건이 어려워져 기존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병행하여 새로운 어장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해외트롤어업 생산량(209,636톤) 중 태평양 수역에서 73천 톤을 생산하였다.

(3) 대서양 트롤

1966년부터 진출한 대서양트롤어업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1970년대에는 100여척으로 출어척수가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중서대서양의 자원감소에 따라 출어척수가 감소되자 어선들은 남서대서양을 비롯하여 NAFO수역, 인도네시아 등 신 어장으로 진출하여 다소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NAFO수역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가자미 등 경계왕래어족자원의 보호 조치를 취함에 따라 1993년 4월 29일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3척이 완전 철수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서양 트롤어선은 기니수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아프리카수역과 앙골라수역 및 남서대서양 공해수역 등 어장에 출어하여 조기, 민어, 오징어 등을 주 포획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나, 주 어장인 기니 꼬나끄리 수역의 경우 외국어선의 과당 경쟁으로 어장이 황폐화됨으로써 어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도 생산량은 포클랜드수역 오징어 어획 호조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90천 톤을 생산하였다.

(4) 인도양 트롤

19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어장확보 차원에서 진출한 인도양어장에서는 그 동안 관련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섭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업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인도양에 출어하는 우리 원양어선 세력의 증가가 둔화되어, 현재는 오만, 소말리아 등에 진출하여 새우, 갑오징어, 한치 등을 주 포획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만 등 연안국 정부의 조업규제 강화와 과도한 단속으로 동

수역의 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11천 톤을 생산하였다.

(5) 중남미 트롤

1969년에 수리남 파라마리보를 중심으로 하여 진출한 새우트롤 어업은 가이아나, 불령가이아나, 브라질 등에 진출, 새로운 수출업종으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1977년 가이아나의 200해리 수역 선포, 1981년 이후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쿼터 삭감 및 어획물 양륙조건부 허가와 1988년 9월 이후 브라질의 외국 어선 입어규제 등으로 동 어장에서 철수 후, 현재는 수리남, 멕시코 수역에서만 극히 일부어선이 조업해 오고 있다.

2.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에 처음으로 인도양에 진출한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수산물 생산량 252만 톤의 약 20%인 50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64%를 국내에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주요 연안국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자원자국화정책 강화로 해외어장이 축소되고,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UNFSA) 및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국제수산기구에 의한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WTO/DDA 및 FTA협상과 관련 수산보조금의 제한 및 관세인하가 전망됨에 따라 조정관세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주요 원양업종의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원양업체의 영세성과 자본구조의 취약성, 원양어선의 노후화가속 등으로 원양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31일 「원양어업증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2006년 8월 9일에는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경영구조개선 추진, 신상품 개발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원양산업화 기반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국제어업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 및 선원수급 안정화 등이다.

3. 해외 신어장 개발

최근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공해조업규제 강화 등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유지를 위하여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의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어구·어법의 시험과 국제관리수역에서의 우리나라 어획쿼터 확보에 노력하였다.

정부는 1999년도부터 근해어선 해외어장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외수역에 대한 정보부족 및 어획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귀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직접 해외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여 해외수역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2002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2,550톤급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인도양에 투입하여 서남부 심해어장에 서식하는 ‘오렌지 라피(Orange roughy)’ 등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에는 ‘꽂치’어장확보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360톤급 실습선인 갈매기 2호를 임차 투입하여 북태평양공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425톤급 갈매기호에

과학자를 승선시켜 러시아 남쿠릴북부수역 ‘꽁치’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수역의 꽁치 자원분포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3년에도 갈매기호를 이용한 ‘꽁치’어장 자원조사를 북태평양동부수역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업조업이 가능한 자원량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꽁치조업 어장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기가 길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2,550톤급 시험조사선 탐구1호와 민간조업선 2척을 남태평양동부수역의 부어 자원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예상보다 자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업조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도에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1호와 민간조업선 1척을 투입하여 북태평양중부수역 ‘돔’어장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북양명태트롤어장과 연계 조업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도 1척(사조산업, 503오룡호)이 진출하여 약 690톤을 어획하는 실적을 거뒀다.

2005년도에는 원양오징어채낚기(인성실업, 701인성호) 및 근해어선 6척(쌍끌이 2통, 근해오징어채낚기 2척) 등 7척을 투입하여 북태평양빨강오징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풍부한 자원량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도에 근해채낚기 5~6척이 자체적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근해통발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근해통발어선(제318성덕호, 제101광민호)을 투입하여 마살수역에 대한 시험조사를 추진하였으나, 해저지형이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고 환초에서 조금만 멀어도 수심이 깊고 해저의 굴곡이 심하여 조업시 많은 통발을 투망할 어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남빙양수역과 연계한 남동대서양 이빨고기 어장개발을 위해 FAO 47해구에 대한 시험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4.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고유가 시대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연구개발(R&D)사업비 1억 원을 국고지원,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어선, 연료비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원양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 연료유인 MGO(마린가스오일)를 중질유인 ‘마린 퓨얼30’(MF30)으로의 대체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연구사업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운항지침서에 따를 경우 운항 및 조업에 지장없이 연료비가 현행보다 30%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어선연료비 절감장치는 2006년도 말 현재 원양어선, 예인선, 준설선 등 약 200여척에 설치되어 528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양 하여 고유가시대에 어업인 등의 경영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속 선박인 원양참치어선, 근해어선 등에 연료비 절감장치 설치 확대를 위해 수산특정연구개발 사업비로 2006년부터 2년간 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연료비 절감 효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 6 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제1절 어업인력 육성*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으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일반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 어촌지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40~50백만 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50~100백만 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06년까지 16,992명에게 총 394,400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어업인후계자 선정제도를 선정 후 지원체제로 바꾸어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 없이 선정과 동시에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표 90〉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05까지		'06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6,992	394,400	16,555	379,050	437	15,350
◦일반후계자('81부터)	14,538	265,063	14,210	255,613	328	9,450
◦전업경영인('92부터)	2,401	124,912	2,303	120,012	98	4,900
◦선도경영인('95부터)	53	4,425	42	3,425	11	1,00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제2절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어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마인드를 갖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9,966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어업인, 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회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어업인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어촌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모범어촌계 50개소에 “어촌정보사랑방”을 개설하였으며, 어업특성상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어업인들이 원격으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영상교육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31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한편 원격영상 시스템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정보화업무담당자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해 어촌 정보화사업 워크숍(1회)을 개최하였다.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제3절 해양수산교육

1. 해양수산교육*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2006. 3. 3)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독립
 개원한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은 21세기 선진 해양한국을 이끌 핵심 해양수산
 공무원 양성 및 해양수산 산업인력의 육성과 범국민 해양의식 함양을 교육
 목표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양교육, 어업인교육, 국제교육, 열린교육 등 6
 개 분야에 총 60과정 192회, 18,475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연간계
 획 대비 199%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정부혁신의 내재화 및 인적자원육성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7·9급 신규공직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2회 개설하여 공직적응 교육을 강화
 하는 한편, 혁신 및 직무전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혁신역량·성과
 창출 함양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해양수산 공직자들을 양성하였다. 또
 한, 청소년 독도 꿈나무 양성캠프, 독도역사교육 순회강좌, 수산식품 식생활
 시민강좌 등을 통한 범국민 해양사상고취에 주력하였으며,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업인 경영관리 및 전문기술교육을 집합·원격·현지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아시아·아프리카 9개국, 11명의 외국인을
 초청 KOICA 국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 해기사 양성 및 어업기술 훈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1966년부터 2006년까지 어선에 승선할 해기사
 5,676명을 양성하였다.

* 해양수산인력개발원

**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또한 해기사 면허취득교육과 기타 연수 및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총 135,948명의 교육생을 배출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어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 사고 방지에 기여하였다. 특히 기초안전교육, 연안선직무교육, 면허취득교육은 현지 순회교육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교육생의 시간과 경비 절감은 물론 어선의 적기 출어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 대외기술협력사업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어업분야 연수생을 1968년부터 매년 초청하여 2006년까지 총 89개국 677명을 연수시킴으로써, 국위 선양은 물론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표 91>

연도별 어선원 교육실적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66~'00	'01	'02	'03	'04	'05	'06
합 계	131,479	107,800	5,920	5,462	3,954	4,314	4,028	4,469
해기사양성교육	5,623	5,059	125	112	87	80	160	53
일반선원양성교육	27,621	27,621	-	-	-	-	-	-
기초안전교육(신규자)	45,522	42,108	1,132	750	606	458	438	411
기초안전교육(재교육)	13,269	4,791	1,690	2,569	1,340	1,404	1,475	1,579
연안선직무교육	3,369	2,814	129	81	89	139	116	104
원양선직무교육	3,742	2,764	319	170	185	125	179	164
외국인研修교육	656	566	19	27	-	25	19	21
기타교육	31,677	22,077	2,506	1,753	1,647	2,053	1,641	2,140

자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교육부

주 : 기초안전교육의 경우, 1998년부터 재교육과정을 신설하였음

제4절 해양환경 연구*

1. 해양변동 연구

가. 해양조사 및 예측

미국의 NOAA 열감지 위성으로부터 매일 4~6회 위성수온자료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양자료속보(185회 발간)”로 FAX 및 E-mail 전송(6천여 회)하여 활용케 하였다. 또한, SeaWiFS 위성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연근해역의 기초먹이생물 분포를 정량화하였으며, MODIS 위성으로부터 해수색(ocean color)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동중국해, 동해, 서해, 남해의 190여개 정점에서 분기별 및 격월로 실시한 정선해양관측 자료와 연안 35여개 관측점에서 측정한 연안수온, 기상자료와 위성이 관측한 광역 수온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주간 및 월간 해황변동을 64회 예측하여 “주간 해황예보”, “월간 해황정보”로 배포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 연안 22개소에 실시간 연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장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이상해황에 의한 수산생물 폐사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였다.

나. 해양자료 관리 및 서비스

한국해양자료센터(KODC)는 국제기구인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가 공인한 국가해양자료센터(NODC)와 정부 지정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해양과학 정보관리 체제 구축과 해양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을

* 국립수산과학원

위하여 7개년(1999~2005)에 걸쳐 해양과학정보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해양조사계획(NOP), 해양조사요약보고(CSR/ ROSCOP), 해양조사자료(TESSAC)를 수집하여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시스템(IODE)을 통해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2. 해양환경 오염 연구

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은 한반도 연·근해, 총 109개 해역 363개 정점에서 표·저층 해수, 해양생물 및 해저퇴적물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수는 15개 일반 항목에 대해 4회 조사, 8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해 2회 조사하였으며,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은 1개 항목을 1회 조사하였다.

해양생물은 클로로필-a, 총대장균군, 동·식물 플랑크톤을 4회 (2, 5, 8, 11월) 조사, 지표생물에 대한 미량금속 7개 항목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4개 항목에 대해 1회 조사하였다. 해저퇴적물은 일반항목 4개, 미량금속 7개 항목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3개 항목에 대해 1회 조사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일반 수질지표 성분을 연 4회 조사하였고, 내수면의 경우 퇴적물 4개 항목을 1회 조사하였다. 어류상 조사는 특정 내수면에 대해 2회 조사하였다.

나. 연안어장 적정환경관리 연구

(1) 연안어장 환경용량 산정연구

가막만의 패류양식의 먹이공급특성에 영향을 주는 해수유동은 만 입구에서 빠르고 북부 내만역으로 갈수록 감소하였으며, Ra 동위원소를 이용한 해수교환율은 건기에 25%, 체류시간은 평균 4일 이었다. 해양생태계 분석 결과 가막만 대부분의 해수 및 퇴적물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부

내만역은 환경인자와 저서동물군집 구조상 오염이 심화된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가막만의 환경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수유동 모델 및 해양생태계 모델을 만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였다.

(2) 갯벌어장 생물서식환경 연구

갯벌 형태별로 저서동물을 이용하여 건강도를 평가한 결과 만형갯벌(충남 태안군 남해포), 개방형갯벌(충남 서천군 비인만)은 II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갯벌(전북 부안군 위도)은 I등급의 매우 우수한 갯벌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전국 66개 단위갯벌을 수질과 퇴적물의 오염도로 등급화한 결과, 1등급 34개소, 2등급 24개소, 3등급 4개소, 4등급 2개소, 5등급 2개소로 분류하였다.

3. 적조대책 연구

가. 적조예찰 및 예보연구

적조감시체제의 일환으로 90개 정점에 대해 2월부터 11월까지 적조예찰을 실시하였고, 적조 발생의 조기 예측을 위해 남해연안에서 광역조사를 실시하여 코클로디니움 유영세포 출현을 확인하였다.

적조상황실 운영을 통해 수산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에 적조주의보와 적조경보를 발령하여, 홈페이지, ARS, FAX, 실시간 위성TV 데이터 방송 등으로 신속한 적조정보전달을 하였다.

나. 적조생물의 생리·생태 특성 연구

일부 종이 기억상실성 패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Pseudo-nitzschia* spp. 분포를 남해안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통영연안에서 비교적 높은 개체수를 보였고, 특히 7월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부산과 진해연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개체수를 보였다.

Chattonella 적조가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조피볼락과 감성돔 치어에 대한 조사 결과 고밀도의 *Chattonella* 적조에 노출시 산소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 단시간 생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적조생물 종 보존 연구로 2006년도에 새로 확보한 식물플랑크톤은 총 12 순수 배양주로 Bacillariophyceae의 *Pseudo-nitzschia* 3종, *Chaetoceros calcitrans* 1종, *Skeletonema dornii* 1종, *Tabularia tabulata* 1종, *Bacillaria paxillifer* 3종, *Navicula ramosissima* 1종, Cryptophyceae의 *Cryptomonas* spp. 2종이었다.

다. 적조피해 경감대책 연구

황토의 사용량 경감을 위하여 황토의 광물학적 특성에 따른 적조구제효과 조사결과 황토구성입자 중 세립 내지 미립자의 조성비가 클수록 높은 적조구제 효율을 보였으며 zeta 전위의 절대값이 0으로 갈수록 적조구제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황토살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해도, 통영 및 거제도 일대 해역에서 퇴적환경과 저서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황토살포 및 미살포 해역간에 따른 퇴적환경과 저서생물상의 다양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황토살포에 의한 영향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발생, 이동 및 확산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에 걸쳐 총 27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05년에 인공수정을 통하여 확보된 폴립을 대상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생활사, 섭식, 환경 조건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실험실 배양 실험을 통해 생활사 초기에 대한 천적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제5절 어업자원 조사연구*

1.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귀치, 붕장어 등 9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 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2006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 붉은대게 등 9종 및 예비대상종인 오징어, 갈치, 멸치 3종 등 총 12종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다.

2.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원양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 특성연구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18개의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국별 보고서로 제공되어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까지 국제옵서버 14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06년도에 한국 원양다랑어 연승어선 4회,

* 국립수산과학원

선망어선 2회, 남빙양 저연승어선 4회 및 북양트롤어선 1회 승선하여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였다.

제6절 수산공학기술 개발*

1.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생분해성 수지로 방사된 단일섬유 그물실의 파단장력은 기존 나일론의 90% 수준이었으며, 해수 중에서 22개월 경과하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대게를 대상으로 하는 자망에 있어서 기존 나일론과 생분해성 자망의 어획성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부터 3년간 경북 울진군 자망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붉은대게, 새우, 낙지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인 경우 기존 폴리에틸렌과 생분해성 통발의 어획성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붕장어, 낙지 등 특수한 체형의 물고기를 잡기위한 통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기타 어종의 혼획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발내로 들어가는 입구둘레가 작은 통발을 고안하여 실험한 결과 목표어종 외의 어종과 치·자어 그리고 산란이 가능한 크기의 붕장어의 혼획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연근해 어업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회복 대상종인 도루묵, 꽃게, 낙지 그리고 동해안 주요 어획종인 대구에 대해 자망, 저인망, 통발 그리고 연승 어구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자료를 토대로 어획성능지수를 구하고 표준어구를 도출하였으며, CPUE 표준화 분석을 하였고, 서해안 꽃게 자망에 대하여 삼중 자망과 홑자망의 어획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망목선택성 곡선을 추정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

3.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외해가두리의 실용화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내구성과 생물사육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용적을 1800m³로 증가시킨 시험용 외해가두리를 제작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리 지선 약 1마일 해상에 설치하였다.

가두리의 구조는 8각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최대지름이 16m, 높이 12m의 팔각형 원통 형태이며 상부 림의 작용으로 생물사육이 가능한 가두리의 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시험용 가두리의 생물사육 용적은 약 1,800m³으로서 조류와 파랑에도 영향이 적도록 상부구조가 수심 9m에 위치하도록 장력 계류를 하였다. 시험용 가두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망목 40mm의 PE재질의 그물을 장착하여 조류에 대한 항력 및 표류력을 조사함과 동시에 생물사육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돌풍에 의한 파랑과 격심한 조류에 대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내구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외부적인 해양환경에 의한 그물의 찢어짐이나 구조적인 파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험용 가두리의 현장시험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상태로도 생물사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안시설물의 기능 극대화를 위한 생태환경 개선 블록개발 및 설계에 있어서 연안시설물(방파제, 안벽 등)은 연안역의 생물서식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까지 파랑제어 기능만을 고려하여 설계·시공되고 있고, 향후 자연환경 보존 기능에 대한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안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연안역 생물 서식환경에 적절한 친환경적인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파랑제어 기능을 유지하는 소파블록인 테트라포드와 어초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성 블록 모델을 제작하여, 우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2차원 조파수조(길이 30m, 폭 1m, 높이 1.2m)를 이용하여 수중구조물(잠제)의 안정성

(stability)과 기능성(function)을 평가하였다. 안정성은 피복재의 중량 산정식으로 널리 알려진 허드슨(Hudson)식을 이용하여 블록의 중량을 결정하고, 피해가 발생(블록의 이동 및 활동)하는 블록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파괴율(damage rate)로서 검토하였는데 피해율은 1%로 이내이며, 이는 허용 파괴율 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성에 대해서는 잠제의 구조형식상 입사파랑에 대한 전달파랑의 함수로 나타내는 전달율과 무차원 최대유속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기존의 테트라포드로만 피복한 경우보다 잠제의 마루에 기능성 블록을 설치한 경우에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능성 블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각 해역의 어초어장 현황 조사를 통하여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어초가 시설된 해역에 모여드는 어류, 어획량, 또는 해중립 조성 등의 생물적 특성과 시설어초의 규모와 시설방법 등과 관련된 공학적 특성 등을 분석, 그 결과를 어초시설 기준 및 시공 방법에 적용함으로써 연안 어초어장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동해, 서해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 연구

동해해역의 월별 어획시험 결과 패·조류용인 요철형어초는 볼락류와 쥐노래미가, 뿔삼각형 어초는 망상어와 임연수어가 우점하였고, 어류용인 잠보형 어초와 사각형 어초는 모두 대구, 횡대가 우점하였고, 잠보형 어초는 참가자미, 사각형 어초는 빨간횡대가 많이 어획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해해역의 어초별 어획량은 뿔삼각어초에서 평균 9.7마리로 대조구의 자

연초 4.1마리에 비해 2.4배로 가장 많이 어획되었으며, 신요철어초는 평균 7.5마리로 1.8배, 연약 지반형 강제어초는 평균 6.9마리로 1.7배 어획되었다. 어획량은 뽕삼각어초에서 평균 2,549.3g으로 대조구 850.8g의 3.0배가 어획되었고, 신요철어초는 평균 2004.3g으로 2.4배, 연약지반형 강제어초는 평균 1,820.9g으로 2.2배 어획되었다.

나. 남해동부 및 서해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 효과조사

남해동부에 시설된 굴패각어초 및 다기능성 어초 효과조사 결과 굴패각어초는 1차조사시에는 소량의 피낭동물과 갯지렁류, 그 외 히드라류 등이 서식하였으나 2, 3차 조사 시에는 줄도화돔이나 망상어 등이 위집이 관찰되었다. 다기능어초의 경우 2차 조사 시 치어들이 위집되고, 어초표면에 녹조류가 부착하는 것이 관찰되어 시기별로 어류위집과 부착생물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해서부해역의 인공어초시설 예정지 어획량 조사결과 총 어종 수는 55종, 개체 수 742마리, 어획중량은 89,127g이었음.

다. 제주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한 연구

제주해역의 재질별 해조류 부착실험 결과 일반콘크리트, 다공성콘크리트 그리고 세라믹판에 대한 2차 해조류 부착 실험 결과, 다공성콘크리트 1695 ± 535 개체/ 0.6m^2 , 일반콘크리트 87 ± 120 개체/ 0.6m^2 , 그리고 세라믹 248 ± 167 개체/ 0.6m^2 가 부착하여 인공어초의 재질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절 양식기술 개발 연구*

1.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양식산업 표준화 연구를 통해 조피볼락의 양식 경제성 분석 보고서와 양식표준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전복양식 표준화 연구의 일환으로 전복 양식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피볼락 번식 메커니즘 구명의 일환으로 *Baculovirus*-누에 시스템을 이용한 황체형성호르몬 (LH) 생산과 호르몬 처리로 양식산 뱀장어의 자연산란을 유도하고, 부화자어의 사육과 초기사료 탐색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강도다리 정자를 자체 개발된 인공 정장액으로 50일간 냉동보존 기술을 확립하였다.

제주해역에 시설한 한국형 외해가두리에서 자체 개발된 배합사료로 양성된 돌돔의 양호한 성장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대상품종 개발을 위해 참조기, 뽕에돔, 큰민어, 참돔 등 4종의 시험사육을 추진하였고 잠재 외해양식 대상품종 개발을 위해 뽕에돔과 자바리의 종묘생산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형 가두리 제작 및 현장시험으로 한국형 시작품(NFRDI 1호)를 제작하였고 외해가두리 시설표준화 및 시설운용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2.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동해안 참가리비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량종묘 대량생산 기술 표준화와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참가리비 어장정보 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체제를 통하여 실시간 어장환경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 단문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해역특성에 적합한 양식방법 개발을 위해 전복/해삼 복합 패널형 양성기를 개발하였다. 서해안 꽃게 축제식 양식시험에서는 당년 조기산

* 국립수산과학원

종묘(5월 초순경 crab 5~7기 입식)를 전용 배합사료로 사육하여 당년 상품 생산에 성공하였다. 남해안 특산어종 황점볼락의 대량 종묘생산 기술개발에서는 자치어의 적정 급이조건(Rotifer 20개체/ml, Artemia 영양강화 방법, 1일 2회 급이 등)을 구명하였고, 고등어의 식성(어류 59.6%), 섭이방식 및 가두리 사육 생존율(85.1%)의 시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3.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새로운 양식품종인 강도다리의 안정적·생산을 위하여 자연산란 유도로 수정율 88.4%의 8,754천개의 부상란을 채란하였고, 사육시험에서 미성어(체중 500g 내외) 1,100마리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강도다리 수정란 4,470천개와 미성어 1,100마리는 분양하였고, 분양된 수정란으로부터 총 900천 마리의 종묘가 생산되었다. 대구는 인공채란 시 부화율이 41.2%로 조사되었다. 동갈돔돔은 가온 및 자연수온구에서 각각 9,610개 및 17,680개의 인공채란을 통해 수온별(18~27℃) 사육실험을 실시하였다.

참굴 품종개량 연구에서 우량 모패군으로부터 F₁ 11개 집단 of 가계를 생산, 사육관리를 통해 성장형질 및 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피조개 양식산업의 안정화 기술개발에서 8월 부착치패 675만 마리를 생산하여 남해안 3개소에서 현재 특허 출원 중인 “피조개 부착치패 보호망”으로 양성한 결과 평균 61.5%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새우양식 생산성 회복을 위해 미국산 바이러스 비감염 모하로부터 미감염 F₁ 대하 280천 마리 (PL 12~15기, 생존율 19.2%)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새우 양식장 이동병원을 운영하여 질병 및 수질환경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꽃게 조기종묘 생산시험에서 자연산과 양식산 어미로부터 3~4기 어린게를 400천 마리 생산하여 웅진과 태안 지선에 방류하였다. 공식 방지망은 종묘생산 과정에서 공식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류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에서, 김류는 총 66계통주를 보존 중에 있으며, 내병성 계통주 선발시험에서 해남 계통주가 붉은 갯병 내성이 높았다. 모자반은 포복지의 월하 최적 관리수심(1m)을 구명하고, 포복지 재생력을 이용한 3~4년간의 다회 양식 및 채취도 가능케 하였다. 곰피는 수심별 양성 성장도 조사로 적정 양성 수심과 수중광량을 도출하였다.

멍게 양식산업 안정화 연구에서 물렁증의 원인병원체(혈구내 기생충) 특성과 미세구조를 밝혔고, 정상 및 물렁증 개체간의 발현 유전자를 비교하여 물렁증 유발 유전자를 선별하였으며 멍게의 microsatellite DNA 분석용 primer를 개발하였다.

양식용 배합사료 연구에서 개발된 넙치 성어용 배합사료(O6FEP)는 증체율, 사료효율, 사료계수, 일간성장률, 단백질 전환효율, 생존율 등에서 사육성적이 양호하여 산업화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부가가치와 활용도 높이기 위한 관상어류 양식기술 개발연구에서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쏠베감쟁, 쏠종개, 셋별돔 등 13종과 외국산 파랑돔, 셋별돔 등 4종을 확보하여 어미로 사육 중에 있으며, 국내(제주)산 해마와 4종의 파랑돔 인공번식에 성공하였다.

4.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양식생물 질병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를 통하여 방류용 수산종묘 질병검사 지침서(안) 마련, 수산동물 질병진단법 교육 및 기술이전 총 2회 실시(11명), 양식생물 질병검사 대어업인 진단서비스 수행(총 173건) 및 논문발표(게재 1건, 국내외 발표 12건)를 하였다. 해산어 감염성 질병 치료 및 예방 연구를 통하여 천연신소재인 손바닥선인장줄기 가수분해분획물을 발굴하여 항 진균 및 항 세균의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위하여 2006년 12월 수산용의

약품 제조회사 19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양식어류 백신개발 및 임상효과 연구를 통하여 넙치 연쇄구균 혼합백신의 임상효능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등록된 어류의 연쇄구균증 예방백신, 그 제조방법 및 투여방법을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수산용 생물학적제제로 품목허가를 득하였다.

또한, 연쇄에드워드 혼합백신의 임상효능을 확인하였으며 이리도바이러스 재조합단백질 백신은 2006년 12월 수산용의약품 제조회사 12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어류이동병원 운영으로 6회, 177개 양식장 대상으로 넙치 등 15종 총 904건의 어병진단 및 처방을 실시하여 직접적인 대 어민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류방역센터 홈페이지 운영 결과, 총 방문자수는 323,037명, 회원가입자수는 73명, 웹 진단서비스의 요청은 75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5.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주요 양식생물(넙치, 참전복, 참굴, 조피볼락, 새우, 멧게)에 서 약 15,000개 이상의 발현유전자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넙치, 전복, 새우에 대하여 유전자 칩을 개발하여 발현유전자 대량 분석에 도입하였고, 넙치는 급성면역반응에 관여하는 간조직유래의 antifreeze protein IV와 apolipoprotein A1 유전자 등을 확보하여 유전자 칩을 개발하였으며, 전복은 고수온에 발현이 유도되는 HSP26 유전자를 확보하고 유전자칩을 개발하였다.

해양생물 유래 유용단백질로써는 분비증강자에 의한 수용성 재조합단백질 생산 방법을 이용하여 홍합유래 접착성 단백질을 생산하였으며, 넙치 유래 IL-6 재조합단백질도 분리, 정제하여 생산하였다. 국내 고유종의 해삼의 보존을 위하여 국내산 해삼 5개 집단 (곰소만산, 강릉산, 태안산, 여수산 및 거제산)에 대해

MS primer는 12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및 일본근해에 서식하고 있는 도루묵 12개 집단에 대해 MS primer 12개를 이용하여 유전자다양성을 통하여 계군을 분석하였다. 또한, 종, 집단 및 계군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별 및 유전자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MS DNA 고변이 유전자 marker를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까나리 등 8종에 대해 개발하였다.

넙치의 육종연구를 위하여 특정 유전자 2개, EST marker 14개, microsatellite 210개의 유전자 marker를 이용하여 4.8 cM의 넙치의 연관 유전자지도를 작성하였고, QTL 분석을 위하여 역교배에 의한 기준가계를 생산하여 유전자 마커와의 연관성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가계가 생산되었다.

수산물의 산업과학화 연구에서, 50종의 해양생물소재를 대상으로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여 암세포독성, 혈압조절, 대사계조절, 면역계조절, 항산화 활성 및 항균활성의 6개 항목을 평가하여 올해까지 총 133종의 해양생물에 대해, 총 798개의 DB화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해조류로 인 톳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인 미백화장품을 개발하고, 해조다당류 알긴산을 이용한 카르복실화 알긴산을 만들어 중금속 세정기능성 화장품을 4종 개발하여 특허출원 및 상품화하였다.

6.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내수면 어류자원 증강 및 양식어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비단잉어 외 4종의 치어 117천 마리를 생산하여 64개소에 분양하였고, 내수면 자원증강용으로 잉어와 붕어 치어 400천 마리는 경남과 전남지역의 저수지 및 강에 방류하였다.

담수 고유종 상품화 연구에서는 목납자루 외 6종을 확보하여 계대사육과 생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냉수성 어종으로는 산천어 10천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시험용으로 4천 마리를 분양하였다. 회유성 어종인 연어는 5,000천 마리를 생산하여 9개 하천에 표지 방류하였다.

제8절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1.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수산물에 대한 국민보건위생 안전 확보 및 미국·EU·일본 등과 체결한 『수출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위생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정해역 7개소(조사면적 63,800 ha, 지정면적 34,385 ha)에 대한 조사결과, 지정해역 내 해수와 패류는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였고, 주변 오염원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확대와 수출품종 다양화를 위하여 2002년 충남 태안군의 바지락 생산해역(5,500 ha), 2003년 경남 통영시 용남·광도의 굴 생산해역(5,000 ha), 2004년 충남 서천군 비인만 해역에 대한 지정해역 타당성 확인을 위한 위생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한편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근거하여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미국 FDA등록패류가공공장, 패류위생관리업 무수행 실험실, 패류위생관리행정 등 “한국패류위생관리운용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2.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가. 생물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남해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패혈증비브리오균(*V. vulnificus*) 및 콜레라균(*V. cholerae*)등 해양상재 병원세균과 설사성바이러스(Norovirus)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전기분해 해수를 이용하여 분변계 대장균에 오염된 패류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국립수산물과학원

나. 이·화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의 굴에 대한 테트라싸이클린계열 항생제는 기준치 이하로 극미량 검출되었으며, 굴 수확기(10월 ~ 익년 4월)에는 비수확기에 비하여 검출농도 및 검출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항생제 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중의 아미노 글리코사이드 계열(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항생제 동시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양식 넙치에 대한 아목시실린 및 암피실린의 적정 휴약기간은 각각 28일과 20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독물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마비성패류독소는 1월부터 8월까지 31주간 출현하였으며, 경북 구룡포에서 전남 고흥군까지 남해안에 집중되었다. 설사성 패류독소는 mouse bioassay 에서는 1월, 4~6월에 굴과 진주담치에서 산발적으로 검출되었으나 HPLC-MS/MS로 확인한 결과는 유독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는 8월에 일부 지역에서 미량 검출되었다.

남해안산 갈색띠매물고등 중 테트라민 함량은 6월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높았고, 고등에서 추출한 테트라민은 열에 대단히 안정하였으며 동결 및 해동에 의하여 주 축적 부위인 타액선에서 근육 또는 내장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드립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9절 수산기술 지도·보급*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가. 수산기술 개발 보급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된 249명의 어촌지도·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국 1,95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 중점 보급을 통해 활력 있는 어촌개발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였다.

먼저, 부산지역 진주조개양식시험 등 총 25개 과제를 연구·교습어장으로 운영하면서 해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함께 지역어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해양수산사무소별 “지역 으뜸품종(상품)”을 개발·육성함으로써 고소득품종 보급 확대 및 지역특산품 발굴에 기여하였다.

또한 굴·피조개·가리비·새고막 유생조사(108개 지점)를 통한 채묘 적기에 보를 통하여 어촌지역에서 「최신수산기술개발보급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역별 주요 양식단지에 대하여는 어장환경과 품종별 작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과학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하였고, 4~11월 사이 적조 발생 우려해역 1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순회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기여 하였다.

또한 전국에 29개의 「어병예찰진단반」을 연중 설치·운영하여 증상별 원인·치료대책을 강구하였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지도를 통해 어병 확산방지와 어병에 대한 각종 기술상담·정보제공 등 지도기관으로서 대어업인 이미지를 향상 시켰다.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나. 어업인 교육 및 홍보

해역별 주요 어업시기에 어업인 8천여 명 대상으로 수산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품종의 신기술보급과 수산자원회복관리, 수산물 안전성 확보, 해양수산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홍보하였다.

2.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어업인들에게 기존의 관행적인 어업경영방식을 탈피하여 시장경쟁체제에 알맞은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양식종인 넙치·김·대하·전복 등 4종의 양식어가 36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05년도 양식 품종별·지역별 소득에 관한 자료집 200부를 발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및 시도 등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어업 경영 진단·설계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3. 수산기술보급 관리기반 조성

수산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 청사 신축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선 신조(FRP 25톤급)로 수산기술보급 활동의 기동력을 향상시켰으며, 어류질병·적조·예찰수질분석 등에 필요한 과학적 장비도 60여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어업경험이 풍부하고 동시에 덕망과 지도력을 겸비한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 250명을 명예어촌지도자 또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산기술보급사업에 자진 참여토록 함으로써 민·관 유대강화와 대 어업인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제10절 수산특정연구개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산기술개발사업(현장애로, 첨단기술)”과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년도 수산기술개발사업은 “갈조류 곰피의 양식개발” 등 총 73개 과제(신규사업 19과제, 계속사업 54과제)를 선정하여 5,650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이러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2006년도 말까지 총 482개 과제에 대하여 72,709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409개 과제가 연구 완료되었고, 나머지 73개 과제는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수산특정연구사업으로 연구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는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토록 하고, 특허출원 및 수산정책사업에 반영하여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직접 활용토록 하는 한편,

수산업종사자 교육 등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과제는 현재 연구기관 및 업계에서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표 92〉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01	'02	'03	'04	'05	'06	'06/'05
합 계	과제수	90	92	77	83	87	73	84
	금 액	5,631	6,136	5,348	6,100	5,905	5,650	96
수산기술 개발	과제수	76,	77	63	69	73	73	100
	금 액	4,888	5,351	4,634	5,350	5,155	5,650	109
수산정책 연구	과제수	15	14	14	14	14	-	'06년
	금 액	743	785	714	750	750	-	사업종료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표 93〉 수산특정연구개발 주요성과

○ 산업재산권

(단위:건)

구 분		합 계	현장애로	첨단기술	수산정책
국제특허	출 원	12	1	11	-
	등 록	11	1	10	-
국내특허	출 원	168	65	92	11
	등 록	117	47	60	10
실용신안	출 원	20	14	5	1
	등 록	16	10	5	1
저작권	출 원	9	8	-	1
	등 록	9	8	-	1
상표	출 원	3	1	-	2
	등 록	3	1	-	2
의장	출 원	3	3	-	-
	등 록	3	3	-	-
S/W		2	-	2	-

○ 국내외 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 실적(국제 505건, 국내 2,235건)

(단위 : 건)

구 분	합계	'96까지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국 제	SCI	105	-	2	8	10	18	10	14	14	21	8	10
	일반	57	1	6	4	2	6	9	7	1	5	16	3
	학술 회의	343	12	18	16	26	25	34	55	50	77	30	16
국 내	SCI	14	-	-	-	1	2	-	-	2	3	6	-
	일반	813	27	69	110	125	95	86	88	84	51	78	40
	학술 회의	1,408	66	91	133	167	148	185	172	184	128	134	76

*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논문(미국) 색인검색

○ 경제적 성과

구 분	합 계	'96까지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기술이전(건)	36	-	-	5	8	7	6	4	3	1	2	4
매출액(억원)	2,663	30	40	26	57	181	291	333	1,001	508	139	186
수출액(억원)	165	-	-	-	-	6	27	29	63	40	-	-
고용창출(명)	1,870	4	2	1	10	12	41	37	799	485	479	158

○ 어업인 등 지도교육 활용 및 정책활용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96까지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지도교육	475	8	29	43	68	62	44	61	57	61	42	42
정책활용	109	6	2	3	9	16	11	24	15	21	2	4

제 7 장

어업인 지원 강화

제1절 수산자금 공급 확대*

1. 영어자금

2006년도 영어자금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 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1조 5,050억 원으로 연근해어업 분야에 850억 원이 늘어난 1조 4,250억 원, 원양어업 분야에 150억 원이 늘어난 800억 원을 공급하였다.

공급 계획액 중 2006년 말 현재 어업인들이 실제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영어자금은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3,055억 원, 원양어업 분야에 640억 원 등 총 1조 3,69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유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연근해 어선어업은 출어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채산성이 낮아지는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져 경영안정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자율 휴어제를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어업자(선주)에게 휴어기간 중 어선원의 인건비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특별영어자금으로 지원하여 향후 안정적 어업활동을 도모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대형선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동해구트롤어업 등에 4,650백만 원을 연리 3%, 1년 이내로 지원하였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또한, 어장이 형성되지 않는 등 3항차까지 어획부진으로 거액의 손실로 주어
 기의 재 출어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항차 당 소요되는 선원 인건비와 유류비를 1통(6~7척으로 구성)에 30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3%인 특별영어자금 8,100백만 원을 용자기간 6개월 한도로
 지원하였다. 또한 10월 동해안에 발생한 강풍과 풍랑피해를 입은 어업인 146명에
 대해서도 특별영어자금 1,233백만 원(연리 3%, 1년)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영어자금 운용의 건전화와 적정한 지원으로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에 대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연체감축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어촌계 또는 수협이 취득한 마을
 어업과 협동양식어장에 대한 입어 또는 행사 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의 진위
 여부 등을 당해 어촌계장 또는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자필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대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한 1년 미만의 단기 입어·행사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표 94>

영어자금 공급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03	'04	'05	'06	'06/'05
소 요 액		35,773	36,928	38,920	41,199	105.9
공 급 액		14,050	14,050	14,050	15,050	107.1
(공 급 율)		(39%)	(38%)	(36%)	(37%)	-
조 달	재 정 자 금	5,814	5,636	5,636	5,636	100.0
	수협신용자금	3,844	3,933	3,933	4,433	112.7
	수협상호자금	4,392	4,481	4,481	4,981	111.2
운 용	연근해어업	12,900	12,900	13,400	14,250	106.3
	원 양 어 업	1,150	1,150	650	800	123.1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표 96〉 수협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증감률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달	○자 체 자 금	102,681	75.7	117,088	75.3	114.0
	- 예 수 금	82,001	60.4	90,811	58.4	110.7
	- 특별회계자금	6,063	4.5	8,022	5.2	132.3
	- 수산금융채권	14,617	10.8	18,255	11.7	124.9
	○차 입 금	15,105	11.1	14,719	9.5	97.4
	- 한 은	697	0.5	759	0.5	108.9
	- 채 정 자 금	7,116	5.2	6,568	4.2	92.3
	- 제 기 금	7,292	5.4	7,392	4.8	101.4
○기 타	17,874	13.2	23,680	15.2	132.5	
합 계		135,660	100.0	155,487	100.0	114.6
운용	○원 화 대 출 금	88,275	65.1	103,799	66.8	117.6
	- 금 용	74,510	54.9	89,860	57.8	120.6
	- 채 정	13,765	10.1	13,939	9.0	101.3
	○타 사업자금	782	0.6	787	0.5	100.6
	○기 타	46,603	34.3	50,901	32.7	109.2

자료 : 수협중앙회 금융기획부 (주 : 상호금융, 신탁, 공제적립금 제외)

제2절 어업인 부담 경감*

1.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2001년 1월 8일 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2006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은 2001년에 연리 3%(당초에는 6.5%), 5년 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한 바 있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Ⅱ)”을 2006년부터 5년 또는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대환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조치는 어업인들이 사용 중이던 상호금융 일반자금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연리 3%(2005.3.5부터)로 5년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1년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을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부채 상환을 유도·촉진하고자 취한 조치다.

분할 상환연기 조건은 차등을 두어 “2001년 당초 대출받은 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초 약정한 상환기일까지 상환한(하는) 자는 앞으로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대출액의 10%를 상환하지 못한(하는) 자는 연리 5%로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원금 분할 상환 및 이자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현재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Ⅱ)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Ⅳ)로 대환한 실적은 10,615건에 133,774백만 원이며, 2007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2007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2007년 말까지 대환이 계속된다.

그 동안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된 자금의 2006년 말 현재의 대출 잔액을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보면 2000년 대책에 의해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당초 2,000억 원의 지원액 중 396억 원(연체액 349억 원 미포함), 2001년 대책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당초 834억 원의 지원액 중 99억 원(연체액 41억 원 미포함),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Ⅱ) 당초 3,659억 원 중 263억 원(연체액 825억 원 미포함),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당초 지원액 882억 원 중 230억 원(연체액 217억 원 미포함), 연대보증 피해지원 자금 당초 지원액 253억 원 중 84억 원(연체액 21억 원 미포함)이 있다.

또한, 2006년 말 현재 2004년 대책으로 지원한 각종 부채대책자금의 대출잔액을 보면 중장기 정책자금 2,317억 원,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 58억 원, 상호금융저리대체 추가 지원자금(Ⅲ) 1,548억 원으로 별도의 수산업경영회생자금 350억 원을 포함하면 4,273억 원이 남아 있으며, 이 금액에는 2004년 대책으로 지원된 각종 부채대책자금으로서 연체 중인 210억 원은 제외된 것이다.

2. 각종 이차보전

각종 수산정책자금은 수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재원을 재정자금과 수협의 금융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들 자금의 조달금리가 실수요자인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대출금리 보다 높아 이 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에 대해 금리차이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이차보전 사업이다.

가. 영어자금 이차보전

영어자금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 수산정책자금이다.

영어자금의 대출금리를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근해와 원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리 3.0%(중전 4.0~4.5%)로 2004. 3.1부터 인하적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2006년도에 1조 5,050억 원의 영어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에 따른 조달

금리와 대출금리와의 금리차액에 대해 수협에 46,018백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영어자금을 저리로 사용하게 되었다.

나. 수산피해복구 이차보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를 입은 수산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용 융자금은 수협 중앙회의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연리 1.5%(2006.1.1.부터, 종전 4.0%)의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2006년에 736백만 원의 이차보전금 교부하여 어업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기하였으며,

2004년도 1월에 발생한 한파 피해와 3월의 폭설, 7월 강원·전남지역의 호우 피해, 8월에 발생한 태풍 ‘메기’와 완도해역 고수온 및 같은 해 8월~11월에 전남·경남해역의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가 중에서 피해발생일 현재 이미 대출받아 사용 중인 영어자금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상환기한을 1~2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같은 기간동안 1,773백만 원을 면제토록 함에 따라 수협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어업인의 금융비용을 덜어 주었다.

다. 어가부채경감대책 이차보전

「2000년 어가부채경감대책」, 「2001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 「2004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 및 「2006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등에 대한 수협의 이자수입 손실 등에 대해 29,219백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함으로써 어업인들도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덜게 하였다.

3.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가 쌀 협상결과와 국회 비준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연리 3.0%를 초과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수산발전기금”의 모든 용자금에 대해 종전까지 사업별·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해 오던 금리를 2006. 1. 1.부터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 어업인은 연리 3.0% (종전 4.0% 내지 5.0%)로 적용하고, 일반 업체와 비어업인은 연리 4.0% (종전 4.5% 내지 5.5%)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용 용자금에 대해서도 연리 1.5%(종전 4.0%)로 대폭 인하적용하는 등 연간 약 44억원의 어업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종전 수산정책자금별로 자율로 정해 연리 15% 내지 18%로 적용해 오던 연체이자율을 2006.8.1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12% 내지 14%로 인하·적용토록 하였다.

연체금리를 인하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수산물 수입 증가 및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어업환경이 어려워져 어업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 어업인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경감의 필요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을 설득해 수산정책자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리 12%, 30일 초과 90일 이하는 13%, 90일 초과는 14%로 적용토록 하는 등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게 된 것이다. 2006. 7월 까지 적용된 연체이자율은 수산정책자금의 대표금리가 연리 5%이던 때 정해진 것으로 영어자금은 연리 15%, 농특 용자금·농안기금은 17%(어업인후계자 15%), 기타 정책자금은 18%로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었었다.

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건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적조, 가격폭락, 어·패류 질병 등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전업어가 또는 어업용 부채 2,500만 원 이상인 수산업 경영체(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중에서 각급 수협에 설치된 “어가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의 경영자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경영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어업인 192명에 대해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재원 : 수협자금)을 연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65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제3절 수산 관련 세제 개선*

1. 수산세제 지원 연장

정부가 어업인들의 어업생산 활동지원 및 소득보전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비롯한 세제감면제도를 시행으로 2006년도 기준으로 수산분야에는 연간 약 8,340여억 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산관련 세제 감면제도는 대부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업인, 수협 및 영어조합법인에게 2006년 말을 감면기한으로 하고 있는 21개 항목에 대한 이자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어려운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에 수산관련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 결과, 18개 항목은 3년 연장으로 2009년까지, 1개 항목은 2년간 연장하여 2008년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효성이 낮은 2개 항목은 폐지하였다.

2.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해 조합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이 해당자금을 수협 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 시 2010년까지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신설함에 따라 해당 수협들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한편, 세제감면 혜택이 가장 큰 어업용 면세유의 2006년도 공급은 총 631만 드럼으로서 어업인들의 면세금액은 7,092억원이다.

〈표 97〉

2006년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단위 : 천 드럼, %)

구 분	'04	'05	'06	'06/'05
합 계	7,006	6,391	6,318	98.8
경 유	5,753	5,204	5,184	99.6
중 유	536	473	421	89.0
M F - 3 0	-	-	49	-
휘 발 유	679	682	634	93.0
운 활 유	38	32	30	93.8
면세액(억원)	6,325	6,564	7,092	108.0

※ 수협중앙회 공급분

제4절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2006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총 6,009억원으로서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용자원금회수 등 상대적인 증가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신규 부과 하였으나, 이자수입의 감소와 정부출연금의 대폭 감소로 인해 수산발전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1.7% 감소하였다.

사업별로는 경상 및 용자사업을 포함하여 23개 사업에 5,511억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실적이 5,428억원에 이르러 계획 대비 98.5% 집행률을 기록하였는데, 경상사업의 산업부산물활용 어장환경 개선과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거, 비축사업, 출하조절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해사채취행위의 친환경적 관리, 오염퇴적물정화·복원체계구축사업의 집행률이 낮았으며, 용자사업의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우수수산물지원,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등의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어획부진, 국내경기 침체, 어업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표 98〉

2006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당초계획 (A)	수정계획 (B)	실 적 (C)	증△감		
				C-A	%	
수 입	1. 정부출연금	20,000	20,000	20,000	-	-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24,004	24,004	23,458	△546	△2.3
	3. 감척어선매각대금	-	-	-	-	-
	4. 기타경상이전수입	-	-	3,917	3,917	-
	5. 위약금	-	-	13	13	-
	6. 국가어항토지매각대금	725	725	5	△720	△99.3
	7. 채고자산매각대	25,583	25,583	34,693	9,110	35.6
	8. 용자금회수	410,497	410,497	403,696	△6,801	△1.7
	9. 여유자금회수	91,993	91,993	113,902	21,909	23.8
	10. 이자수입	18,548	18,548	18,564	16	0.1
	11. 전년도이월금	-	-	1,096	1,096	-
	12. 공유수면점사용료	9,501	9,501	8,620	△881	△9.3
합 계	600,851	600,851	627,964	27,113	4.5	
지 출	1. 기금운영비	1,292	1,292	1,233	△59	△4.6
	○ 기금관리비	420	420	388	△32	△7.6
	○ 사업운영비	872	872	845	△27	△3.1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780	780	753	△27	△3.5
	- 우수수산물대축제	50	50	50	-	-
	- 수산물도매시장평가	42	42	42	-	-
	2. 사업비	551,064	551,064	542,849	△8,215	△1.5
	가. 경상사업	43,100	43,100	47,757	4,657	10.8
	○ 어업용페스티로폼감용기보급	1,400	1,400	1,200	△200	△14.3
	○ 산업부산물활용어장환경개선	1,500	1,500	1,500	-	-
	○ 적조제어장치설치	-	-	69	69	-
	○ 조업중인양된해양쓰레기수거	2,500	2,500	2,500	-	-
	○ 폐기물해양배출관리시스템구축	2,000	2,300	2,272	272	13.6
	○ 해사채취행위의친환경적관리	1,500	1,300	1,377	△123	△8.2
	○ 오염퇴적물정화복원체계구축	1,200	1,100	770	△430	△35.8
○ 비축사업	30,000	27,721	32,791	2,791	9.3	
○ 출하조절	3,000	5,279	5,278	2,278	75.9	

제5절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을 2003년 3월 19일 제정(법률 제6866호)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06년도에는 어선원 보험에 가입한 36,846명(2005년 대비 1.1% 증가)의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5,015척의 어선에 대하여 18,00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99〉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단위 : 명, 척, 백만 원, %)

구 분	'03	'04	'05	'06	'06/'05
○ 어선원보험료					
- 인 원	27,694	35,658	36,431	38,846	101.1
- 보 조 액	7,268	6,546	7,958	8,573	107.7
○ 어선보험료					
- 척 수	2,767	2,753	4,925	5,015	101.8
- 보 조 액	1,989	2,058	1,491	2,007	134.6
○ 위탁운영사업비					
보 조 액	-	5,241	5,502	7,420	134.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한편, 2006년도에는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시행 3차년도로서 보험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2006. 1. 4~6. 3까지 4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합동으로 정책보험 실태조사를 위한 어촌현장방문을 실시하여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어업인의 의견을 보험제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미가입어선의 일소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였다.

또한, 보험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어선원·어선주 대표 및 공익대표 등 15인)를 개최(1회)하여 보험제도의 개선과 적용보험요율을 결정하였으며,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의 재결을 위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어선원·어선주 대표 및 보험전문가 등 15인)를 개최(3회)하여 어업인의 보험급여 불만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보험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증진을 위해 안내장, 전단지, 포스터,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어업무선 방송(882회)과 개별 D/M(67,400매)을 발송하였으며, 보상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정책보험 이미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06. 5. 20~6. 10.까지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기관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선사고의 사전예방을 통한 재해율의 감축과 대어업인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력하였다.

제6절 해양수산재해 및 복구 지원 *

2006년도에 태풍 및 풍랑, 대설 등 4차에 걸친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시설은 총 86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1차 피해는 2006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 기간 중 강풍, 풍랑으로 인하여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차 피해는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17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3차 피해는 9월 15일부터 9월 20일 기간 중 제13호 태풍 ‘산산’으로 11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4차 피해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 기간 중 동해안 강풍·풍랑으로 인한 5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항만시설 22개소/54억, 어항 202개소/349억 등 총 488억원의 피해가 났으며, 사유시설의 피해는 어선피해 119척/10억, 어망·어구 1,754개소/256억, 증·양식시설 2,820개소/107억원, 수산생물 161,262(천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복구를 위해 총 1,143억원의 피해복구비를 투입하였는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483억원, 지방비 328억원, 용자 251억원, 자담 80억원, 자체복구 8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간접지원을 위해 30% 이상 피해어가에 대하여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간)과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6개월분) 등 피해어민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표 100〉 2006년도 해양수산시설 피해 및 복구상황(시기별)

□ 피해 및 복구비 지원현황

(‘06. 12. 기준/단위 : 억원)

차수	일 자	피 해 원 인	해양수산시설		국가 전체시설	
			피해액	복구액	피해액	복구액
	계		863	1,143	19,217	36,297
1차	3. 11~3. 13	풍 랑	50	44	50	44
2차	7. 9~7. 29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171	272	18,344	35,125
3차	9.15~9.20	제13호 태풍 “산산”	114	44	125	151
4차	10.22~10.24	동해안강풍·풍랑	528	783	698	977

※ 자체복구액 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 시설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단위	피 해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물 량	피해액	물 량	총복구액	물량	복구액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물량	금액	
총 계			86,338		122,812		114,264	48,302	32,799	25,152	8,011		8,847	
공 공 시 설	소 계		317	48,898	290	75,545	164	66,997	38,449	28,547			126	8,547
	항만시설	개소	22	5,459	6	7,131	4	5,128	5,128				2	2,003
	어 항	“	202	34,958	186	55,494	103	50,630	26,067	24,562			83	4,863
	등대해운	“	4	275	3	75							3	75
	수산시설	“	1	44	1	44							1	44
	해양쓰레기	“	35	965	37	4,138	17	3,113	3,113				20	1,025
	기 타	“	53	7,197	57	8,663	40	8,126	4,141	3,985			17	537
사 유 시 설	소 계		37,440		47,267		47,267	9,853	4,252	25,152	8,011			
	어 선	척	119	1,053	117	1,140	76	1,140	282	124	622	112		
	어망어구	개소	1,754	25,671	1,731	25,123	1,599	25,123	3,344	1,431	15,482	4,867		
	증양식시설	“	2,820	10,716	2,710	10,925	283	10,925	2,723	1,162	5,958	1,082		
	수산생물	천마	161,262	-	160,184	10,079		10,079	3,504	1,535	3,090	1,95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

제 8 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

제1절 일선수협 구조조정

1.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4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순 자본비율 산출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45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8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영상태가 악화된 조합(31개 조합)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 추가 적기 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2. 부실수협 구조조정

2006년 5월 29일 개최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된 7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이 중 5개 조합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및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2개 조합에 대하여는 조건부 합병명령을 시달하였으나, 2006년도에 합병철회 조건을 달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성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고성조합의 경우 당기흑자, 동해·삼척조합의 경우 순 자본비율 개선과 당기흑자, 완도·장흥조합의 경우 순 자본비율이 악화되어 당기적자를 시현하였다.

3.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5년 말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 등 43개 조합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고, 6,715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조합 중 한림조합이 경영개선자금을 상환(24억원)하고 MOU를 해지함에 따라 2006년 말 현재 42개 조합 6,691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되어 있다.

2006년도 중 총 740억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급하여 지속적 경영정상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부실책임조사 실시

일선수협의 부실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조사대상 : 50개 조합) 중 2004년 이후 3년간 21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8개 조합(14건, 부실책임액 25,488백만 원)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

제2절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1.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투입시 지도사업의 결손금(475억원)과 경제사업의 자본잠식액(943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어업인 교육지원과 원활한 유통사업 추진 등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경제사업부문 자본잠식액(943억원)은 2003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741억원을 지원하여 경제사업부문 유동성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원활한 유통사업 추진을 통한 어업인 지원기능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지도사업부문 손실금은 200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하여 수협의 기본 임무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 등 지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은 금융시장의 개방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진 금융기법의 최신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도 일선수협은 부실로 인하여 전산분야에 신규투자가 곤란하고, 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지원으로 일선수협 지원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 '04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단위수협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40억원을 지원하여 여신종합관리시스템, 재해복구센터 및 전략정보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신용사업부문의 『OK ACE 0506 운동』 전개

신용사업부문은 2001년 「New Start 180운동」, 2002년 「Jump 2&2운동」, 2003년 「DASH-3M운동」 및 2004년 「NICE 2004운동」의 성공적 결실을 바탕으로, 2005년 ~ 2006년에 걸쳐 적극적 해양금융 진출(Ocean Korea), 선진적 수산금융 구현(Advanced), 지속적 상업금융 강화(Consistent), 효율적 경영혁신 추진(Efficient)을 경영목표로 일류해양 수산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OK ACE 0506 운동을 추진하였다.

2006년 종결된 OK ACE 0506 운동 결과 세후 당기순이익 1,186억원, 예수금 9조 811억원, 일반대출금 8조 1,611억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성공적인 운동추진으로 인해 2006년 말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1조 9,827억원이 증가한 15조 5,48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BIS 자기 자본비율 11.39%, 총자산이익률(ROA) 0.84%, 1인당 조정영업이익 2.6억원, 고정이하 여신비율 1.12%를 달성함으로써 재무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제3절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수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도사업,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주적인 조직체로서의 위상이 크게 손상 되었으며, 공적자금 상환 전까지는 수협의 기능 및 역할 수행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협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경쟁력이 확보된 일류 협동조합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조직 혁신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임직원 스스로 인식·공감 하여 2004. 7월부터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혁신방안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9월 (주)능률협회 컨설팅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5. 4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함과 동시에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라는 수협의 원대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2005. 5월 (주)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보고서와 수협이 자체적으로 의견수렴한 제안내용 등을 토대로 수협정체성 정립 및 의식개혁,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6개 부문 35건의 혁신과제로 이루어진 전사 차원의 수협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협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을 혁신도입기로서 단기과제 추진을 통한 혁신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수협 정체성 정립 및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및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고, 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 및 당선인 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수요포럼 개최를 정례화 하였다.

또한, 조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부문간 신입직원 동시채용 및 승진고시 관리를 일원화하고,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BSC)를

도입하였으며, 전산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MRO)의 온라인 통합구매를 통한 경비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하였다.

일선수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역량 강화 등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와 어촌간 이해증진 및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어촌자매결연 사업(439개소 결연)을 적극 추진하였다. 더불어 2006년도에는 경비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 사례집 발간, 회원조합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지도역 인력 pool 구성·운영 및 Best practice제 도입, 바다지킴이 활동을 전개, 회원조합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88개 조합, 7143명)하였다.

그리고,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와 싱싱회 보급확대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별해 별미 가맹점을 2006년 말까지 18호점을 개설하였으며,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바다애찬 브랜드 신상품(생물로 만든 간고등어, 코다리) 개발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업종 B2B사업을 위해 온라인 수산물도매시장 (www.kfb2b.com)을 오픈하였다.

제 Ⅲ 편

2007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제 1 장

기 본 방 향

제1절 수산업의 여건변화*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국으로 도약하면서,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1996. 11)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1998. 11)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 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 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이 채택되고,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 기본골격이 합의되어 2005년 12월 18일 홍콩에서 막을 내린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금년도 협상타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수산보조금 및 관세철폐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했었다.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한·일 FTA 및 한·싱가포르 FTA를 추진하여 한·싱가포르 FTA는 2005년 8월 협정이 체결되어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일본과의 FTA는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협상이 중지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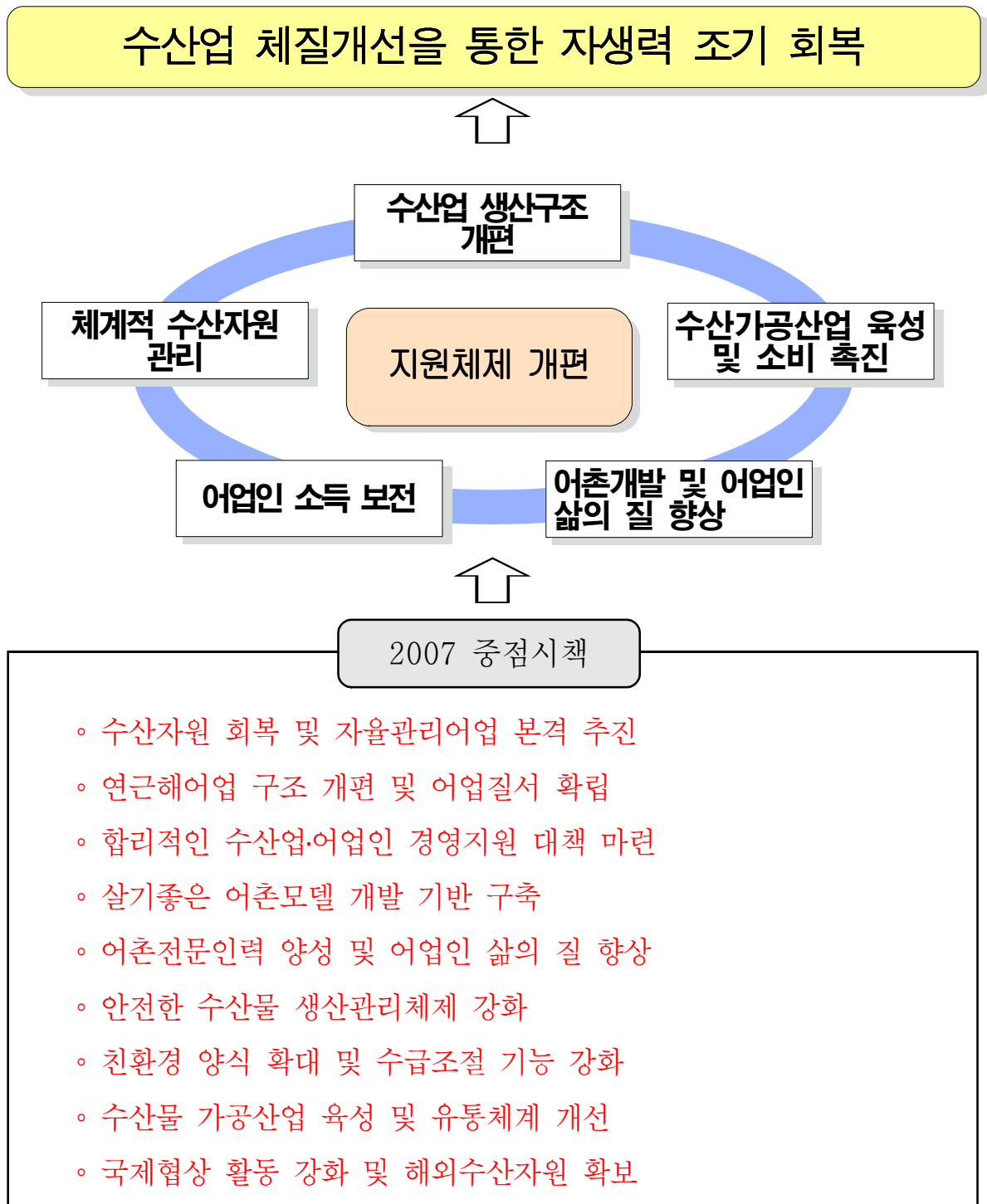
또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는 2005년 협상이 타결되어 2006년 9월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4월 최종 타결되었다.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 최장 15년까지 이행기간 부여와 TRQ 도입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였고,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35%)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 철폐와 양식산 활넙치 체장제한을 해제하는 등 향후 수출확대의 길을 열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그 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심화,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과 불법어업의 집중 단속 등에 힘입어 2006년도의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109천 톤으로 전년 1,097천 톤 대비 약 1.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가소득에서도 2006년 말 기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73%, 농가소득의 93% 수준으로 2005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아직 저소득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어촌의 정주환경 취약과 3D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어촌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제2절 중점 추진시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007년도는 WTO/FTA 등 국제 어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의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정착 및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시장개방 확대와 자원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 수산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도에 수립된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원회복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자원량 감소 및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으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의 효과가 저감되고 있음에 따라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연근해 어선세력을 축소하고,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을 통해 어획노력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결과와 자원량 수준을 반영하여 적정어선세력(어업허가정수)을 '07년 하반기중에 재설정하고,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재진입 방지와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한미 FTA 등 수산시장 개방협상 확대에 따라 국내 수산업의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산업·어업인지원 특별대책을 마

련하고, 영어자금, 수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업 및 선도경영인 지속 육성과 어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양식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94개)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어업여건의 전반적 악화로 인해 어업생산활동 지원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어촌지역 공동화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어촌의 다원적 면을 활용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은 새로운 차원의 어촌지역 개발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 관광모델 개발 등을 통해 어촌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500사 500어촌 자매결연 체결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 지원과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해양관광 포털과 연계, 도서민에게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탈어업, 탈어촌, 고령화 현상 등에 어촌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청·장년층의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 종래 어업인 후계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어업인턴제와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도입 하는 등 수산경영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비율 상향조정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일곱째, 친환경 양식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 외해 수증가두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배합사료 개발로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사용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말라카이트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내수면 발전종합대책('06.1)」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종래 생산위주의 어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수산물 가공산업과 수산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연안 시·군 명품 수산물을 우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 단계 및 유통마진 축소를 위해 직매장 설치, 인터넷 수산시장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홉째, WTO/DDA 수산분야 협상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산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수산물관세는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FTA는 협상의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회도 적극 참여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미리 발굴하고, 자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협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원양어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예산 및 자금지원 *

2007년도 해양수산부의 세출예산은 순계개념으로 2006년 예산(3조 1,550억원) 대비 2,110억원 증가한 3조 3,660억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2006년보다 1,942억원이 증가한 3조 985억원이다.

해양수산부 예산 중 수산부문의 예산은 8,43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0%이며, 전년도 7,808억원 대비 8.0% 증가하였다.

* 예산순계 개념 : 예산총계에서 회계간 거래나, 동일 회계내 계정간 거래금액 등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 순액임.

〈표 101〉 200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 회계 및 분야별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예산	'07년 예산	증△감	
				금 액	%
부 문 별	◦ 해운·항만	19,337	20,559	1,222	6.3
	◦ 해양수산·어촌	11,569	12,496	927	8.0
	- 수산·어촌	7,808	8,431	623	8.0
	- 해 양	3,761	4,065	304	8.1
	◦ 해양환경	644	605	△39	△6.1
합 계 (주요사업비)		31,550 (29,043)	33,660 (30,985)	2,110 (1,942)	6.7 (6.7)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8,614	7,929	△685	△8.0
	◦ 교 특 회 계	16,325	16,634	309	1.9
	◦ 농 특 회 계	1,904	3,338	1,434	75.3
	◦ 균 특 회 계	2,299	3,096	797	34.7
	◦ 책 특 회 계	1,955	2,322	367	18.8
	◦ 예 특 회 계	283	341	58	20.5
	◦ 국 특 회 계	170	-	△170	(일반회계 이관)

* 영여자금은 '07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관, 합계에서 제외자료

* 해양수산부 재정기획관실

□ 수산부문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06 예산 (A)	'07 예산 (B)	증△감	
			(B-A)	%
합 계	7,808	8,431	623	8.0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171	2,765	594	27.4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534	1,294	760	142.3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200	-	△200	순감
- 바다목장 조성	135	151	16	11.9
- 인공어초 및 종묘매입방류 등	1,302	1,320	18	1.4
•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478	646	168	35.1
- 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397	562	165	41.6
- 수산물 안전관리	81	84	3	3.7
• 어촌어항 개발	2,460	2,635	175	7.1
- 어촌어항관광 개발	639	896	257	40.2
-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1,821	1,739	△82	△4.5
• 수산경영 지원	2,095	1,805	△290	△13.8
- 어업인정책자금 이차보전	941	827	△114	△12.1
- 어업정책보험 지원	180	201	21	11.7
- 수협경영 지원 등	974	777	△197	△20.2
• 해양수산연구 등	604	580	△24	△4.0

자료 : 해양수산부 재정기획관실

제 2 장

수산자원 회복 및 자영관리어업 본격 추진

제1절 수산자원회복 계획 *

1.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개별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행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회복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산자원회복팀”을 2005년 3월부터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자원회복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계획을 200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계획”을 2006년 2월에 수립·보고하고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해-연평),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회복팀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되,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2007년에는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단계별 실행전략의 이행을 위하여 2006년 시범사업 어종 외에 홍어, 참조기, 대구 등 3개 어종을 추가하여 자원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28종, 2015년까지 40종으로 회복사업을 확대하여 최적의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범실시 대상어종 특징

어종명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
해역	서해(연평)	동해	남해(무안)	제주(성산)
관리주체	해수부	해수부	지자체	지자체
어종	갑각류	어류	두족류	패류
업종	연안자망, 근해자망,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동해구기저, 연안자망, 동해구트롤 등	연안연승, 연안통발, 외끌이서남해기저	나잠어업
어종특성	회유성	국제적 관리	연안정착성	연안정착성
어업특징	어선어업	어선어업	어선어업	마을어업
추진방향	광역자율관리 제도권 수용을 통한 광역해역관리	산란장 주변보호를 통한 일반어업 관리	자율어업관리 제도권 수용을 통한 소해역 특화관리	마을어장 생태계복원을 통한 회복
주요내용	금지체장 상향조정, 산란장 보호	산란장(해조장)보호 및 복원, 광역자율 관리 유도	산란장, 산란기보호	재생산관리

한편, 동 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간담회,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연차

별 중장기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실시 대상어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2. 총 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 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써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007년도 TAC 사업은 고등어·전갱이·정어리·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 등 10개 어종을 대상으로 382천 톤의 TAC를 정하여 10개 업종에 약 1,200여척(통), 100개 어촌계가 참여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총 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할당량의 배분에 있어서도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배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는 판매장소를 113개소로 확대하고 TAC 제도가 시도 및 시·군·구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영개선자금의 융자한도를 영어자금 소요액의 1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TAC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103〉

2007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 톤)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	비 고
합 계		381,930	
대 형 선 망	고 등 어	154,000	'07. 1. 1 ~ '07. 12. 31
	전 갱 이	19,000	"
	정 어 리	5,000	"
근 해 통 발	붉은대게	25,000	"
근해통발·근해자망	대 계	1,200	'06. 11.24 ~ '07. 5. 31
잠 수 기 어 업	개 조 개	3,700	'07. 1. 1 ~ '07. 12. 31
	키 조 개	3,200	"
마 을 어 업	제주도소라	1,480	'06. 10. 1 ~ '07. 5. 31.
연근해자망 및 통발	꽃 계	3,350	'07. 1. 1 ~ '07. 12. 31
대형선망·동해구트롤 대형트롤·근해채낚기	오 징 어	166,000	'07. 7. 1 ~ '08. 6. 30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3.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견실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보전과 기능제고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갯녹음(백화)현상이 발생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중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102〉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단위 : ha)

구 분	기 시설(1971~2005)	2006년	누 계
합 계	186,298	5,450	191,748
부 산	2,324	88	2,412
인 천	6,311	328	6,639
울 산	1,102	64	1,166
경 기	5,665	192	5,857
강 원	22,064	240	22,304
충 남	15,625	516	16,141
전 북	10,486	1,142	11,628
전 남	39,214	896	40,110
경 북	22,324	104	22,428
경 남	35,382	516	35,898
제주	25,801	1,364	27,165

자료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이를 위해 2007년에도 사업비 40,335백만 원을 투입하여 약 5,000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5,725백만 원의 사업비로 약 35,000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상태 확인 및 폐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며, 2,250백만 원의 사업비로 갯녹음(백화) 발생어장 74ha에 대해 해중립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종묘방류 및 종묘배양장 기능 조정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하며, 가급적 야성화 훈련이 실시된 종묘

를 매입·방류할 계획이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기해 2006년 37종에서 2007년에는 39종으로 품종을 확대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수산종묘방류 총사업비의 5%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방류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유무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도립수산종묘배양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한·중·일의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바다목장 조성

19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06년도 사업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동안 조성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이용체계 확립 및 단위사업별 종합매뉴얼 또는 사업지침서를 마련하는 한편, 바다목장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경제성 평가를 거쳐 사업효과를 2007년 12월까지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바다목장사업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2단계 최종년도 기반조성사업으로 34억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연구·조사와 더불어 인공어

초, 해중립 등 구조물 설치와 감성돔, 볼락류 등 110만 미의 종묘를 방류하는 등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2007년 사업부터는 국립수산물학원으로 사업총괄기관을 변경하여 전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방류사업을 총사업비 대비 약 80%로 확대하여 실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에 1단계 최종사업이 마무리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해서도 2006년도 사업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보완하여 시설방류사업 등의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이전 10억원 내외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여 시설사업 확대를 본격적인 바다목장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2007년도에는 당초 4개소에서 전북(직도해역), 충남(보령) 및 경남(사천) 3개소를 추가하여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연안해역에서 효율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자율관리어업*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및 질서유지에 참여토록 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새 어촌운동이자 어촌 의식개혁 운동으로서, 자율관리 공동체 운영 및 참여확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2006년 말 현재 445개소에서 530개소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참여 공동체중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는 육성사업비를 지원(90개소, 118억원)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율관리어업을 성실히 이행한 공동체에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공로가 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공동체 간 우수추진사례를 교환하기 위한 제5회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6월), 동·서·남·해로 구분한 권역별 담당자 워크숍(3회), 지방해양수산청 중심의 지역단위 워크숍(24회)로 공동체지도자의 리더쉽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교육(2회)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자율관리컨설턴트와 명예홍보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중심의 지역단위 교육도 미 참여 공동체와 활동실적이 저조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토론회 등의 현장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우수공동체에 대한 현장견학 및 선진수산국 해외연수 실시 등을 적극

*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영상물과 우수사례집 제작 등 대어업인·대국민 홍보활동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도부터 도입한 공동체 등급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7. 4월까지 추진한 자율관리어업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결과와 관계기관 및 어업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참여공동체가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정부와 어업인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수산회의 자율관리어업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공동체별 등급결정을 위한 자율평가위원회 운영,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지원기구(시·도별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에 대한 활동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3절 환경친화적 낚시관리제 도입*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수요가 증가하는 등에 따라 낚시인구는 현재 57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조 빈도에 따른 낚시인구

(단위 : 천명)

구 분	계	잠재낚시인구	일반낚시인구	전문낚시인구
계	5,730	3,222	2,097	411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

그러나 이러한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배출되고 강과 저수지, 바다 등은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과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무인도서나 갯바위 등 수심이 깊고 위험한 지역에서 낚시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낚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낚시인의 증가와 낚시도구의 발달 등으로 물고기의 포획강도가 증가하면서 수산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고기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낚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유어행위에 의한 조획량과 상업적 어업의 어획량 비교

(단위 : 천MT, %)

구 분	조획량(A)	어획량(B)	비교(A/B)
계	300	1,909	15.72
바 다	116	1,142	10.16
내수면	184	767	23.99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

* 해양수산부 유어내수면팀

따라서 낚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낚시관련법 제정을 위하여 「낚시관리제」 도입 등 (가칭)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민간인 주도의 “자율관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 3 장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확립

제1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

1. 연근해어선 감척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노력 투입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선 노후화, 어업인력 부족 및 어선원 승선기피로 인한 임금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주로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여 온 결과, 연안어선 감척실적은 전체의 약 1%로서 그 효과가 미흡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안어선 6,300척을 감척한다는 목표로 2008년에는 연안어선 2,00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또한, WTO/FTA 등 국내외적인 어업여건과 수산자원을 고려하여 근해어선에 대하여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0%인 1,000여척을 감척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근해어선 100여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표 104〉

2008년도 시·도별 연안어선 감척계획

(단위 : 척)

시·도별		척수	시·도별		척 수
부	산	75	전	북	380
인	천	93	전	남	441
울	산	21	경	북	90
경	기	26	경	남	441
강	원	172	제	주	122
충	남	139	합	계	2,000

※ 근해어선 : 사업대상자 결정 후 시·도 물량배정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어업허가관리 강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996년 1,624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97톤으로 떨어짐에 따라 어업허가 정수를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어업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을 평가한 결과, 수산자원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이용수준보다 10~30% 정도 과도한 어획상태 하에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 평가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평가 결과와 어업인 의견수렴 사항들을 종합하여, 현행 어업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장래의 잠재적 이용가치를 저해하지 않을 수준의 어획이용도를 달성할 수 있는 어업허가 정수의 조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형망어업은 현재 170척에서 72척으로 57%를 축소하였고, 장어통발어업은 90척에서 40척(55%), 연승어업은 865척에서 479척(44%),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은 35척에서 15척(43%), 쌍끌이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은 10척에서 3척(30%)으로 축소 재조정하였다. 이외에도 대형기저, 소형선망, 안강망 등 21개 업종 모두가 조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연안어업 허가정수 조정안에서는 현 자원량에 비해 어업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통발어업이 현재 10,672척에서 4,680척으로 56% 축소하여 감축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을 1,883척에서 941척으로 50% 감축하였으며, 연안안강망어업은 850척에서 26% 감소한 631척으로 허가정수를 재조정하였다. 이외에도 조정안에는 연안자망, 연안선망, 새우조망어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어업허가 정수의 조정은 그 간 한정된 자원이용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05〉

연안어업 허가정수 조정(안)

(단위 : 건)

어업명칭	현재정수	조정정수(안)
합 계	67,855	54,961
연안자망	19,273	17,351
연안개량안강망	850	631
연안선망	426	331
연안통발	10,672	4,680
연안들망	781	781
분기초망		
연안조망	1,475	1,143
연안선인망	17	14
연안형망		
해조류		
연안복합	30,753	27,682
문어단지	12	1
형망	684	556
새우조망	1,029	850
실뱀장어안강망	1,883	941

〈표 105〉

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안)

(단위 : 건)

어업명칭	현재정수		조정정수(안)	
합 계	4,132		2,732	
대형기저(외)	35		34	
대형기저(쌍)	45		38	
동해구기저	35		20	
서남구기저(외)	37		29	
서남구기저(쌍)	10		7	
대형트롤	50		37	
동해구트롤	35		23	
대형선망	30		29	
소형선망	60		35	
채 낚 기	915		618	
기선권현망	제1구	64	제1구	54
	제2구	16	제2구	14
자망어업	855		569	
안 강 망	290		199	
봉 수 망	60		55	
자리돔들망	10		6	
잠 수 기	제1구	7	제1구	6
	제2구	11	제2구	9
	제3구	123	제3구	93
	제4구	52	제4구	39
	제5구	37	제5구	28
장어통발	90		40	

제2절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1.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친환경어업 실현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경북 울진군 대게자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중에 있다.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는 유실시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물고기를 얽혀 죽게하고, 해저 바닥에 쌓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파괴시키며 해저에 쌓인 어구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어구로써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개발을 추진하여 생분해성 대게자망 어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생분해성 대게자망 어구의 어획성능은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자망과 대등하며, 2년 정도 지나면 해양의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며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분해성 대게자망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방사, 편망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제망업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어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어업인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제도 추진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어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적절한 어획강도 유지와 어획노력량의 효과적 제한수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어구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어구사용량 제한은 자망어업은 2006년 7월 1일부터, 통발어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어구실명제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구에 실명을 표시함으로써 과도한 어구 사용의 자제를 유도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어구실명제는 2006. 1월부터 연근해 안강망, 자망, 통발어업에 시행되고 있으며,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이를 정착시키고자 노력중이다.

어구사용량제한 제도는 2004. 1월부터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구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원남획 및 어업경영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망과 통발어업에 도입하였다.

자망어구는 사용할 수 있는 어망의 총 길이를, 통발어구는 총 사용개수를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근해어업의 경우 현재 사용량에서 최대 약 40%를 감축하였고 연안어업에서는 지역별 조업특성을 감안, 근해어업의 최저 사용량의 범위내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구사용량 제한은 경쟁조업에 따른 지나친 어구 구입방지와 어구 과다 사용에 의한 조업분쟁요인을 감소시키고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06〉

어업별 어구사용량 제한내용

어업별	톤급별	어구 사용량 설정(안)
자망	8~20톤 미만	○ 총 설치 길이는 12,000 m 이내(다만, 동해안은 11.1~익년 5.30까지 35,000m 이내) - 단, 3,000m 이내의 예비어망 적재 가능
	20~40톤 미만	○ 총 설치 길이는 14,000 m 이내(다만, 동해안은 11.1~익년 5.30까지 45,000m 이내) - 단, 4,000m 이내의 예비어망 적재 가능
	40톤 이상	○ 총 설치 길이는 16,000 m 이내(다만, 동해안은 11.1~익년 5.30까지 70,000m 이내) - 단, 5,000m 이내의 예비어망 적재 가능
장어 통발	8~20톤 미만	○ 총 설치 개수는 3,200개 이내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
	20~40톤 미만	○ 총 설치 개수는 5,000개 이내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
	40톤 이상	○ 총 설치 개수는 7,000개 이내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
기타 통발	8~20톤 미만	○ 총 설치 개수는 2,500개 이내(다만, 동해안은 4,000개 이내)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다만, 동해안은 40m 이내)
	20~40톤 미만	○ 총 설치 개수는 3,500개 이내(다만, 동해안은 5,500개 이내)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다만, 동해안은 40m 이내)
	40톤 이상	○ 총 설치 개수는 5,000개 이내(다만, 동해안은 7,000개 이내)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다만, 동해안은 40m 이내)
문어 단지	8톤 이상	○ 총 설치 개수는 7,000개 이내 ○ 단지의 설치 간격은 10m 이내

제3절 불법어업 근절*

새로운 해양질서 시대에 걸 맞는 어업질서 확립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불법어업으로부터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7년도에는 수산자원 남획과 업종간 분쟁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금지구역 침범, 어구위반, 오징어채낚기와 트롤어선간 공조조업 등을 7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관계기관의 공조하에 불법어업이 빈발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1.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재 진입 방지대책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어선의 일부를 개조하고 1천여만 원 정도의 어구만 구입하면 손쉽게 재진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 고시를 제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기저어선 불법건조, 제작업체 등 육상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 시·도지도선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초기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는 검찰과 협조 시범적으로 구속 등 엄중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불법어업 단속처벌규정 강화

일부 어업의 경우 처벌강도가 약해 상습적·의도적으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사례가 있다. 이는 불법어획고가 과징금 등에 비해 훨씬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에 대해 몰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제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첨단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

한·일/한·중 어업협정발효(1999.1.22/2001.6.30)로 우리 관할수역이 약 4배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국가 어업지도선을 확충하기 위해 2002~2008년까지 38척로 증척할 계획에 따라 그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확충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예산 사정상으로 2006년까지 8척을 건조하여 현재 33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국가 어업지도선의 확충계획 정책에 따라 노후지도선 대체건조가 미루어 왔던 선박의 성능과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하여 해난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령 25년 이상 노후 지도선의 현대화 대체건조가 시급함에 따라 부족한 국가 어업지도선의 신규 확충을 잠정중단하고 금년도에는 500톤급 1척의 노후지도선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선의 지도·단속 장비현대화를 위해 단속용 쾌속보트 구입과 지도선에 최첨단 전자해도시스템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4. 어업지도선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대책 마련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실시되는 합동단속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5. 명예감시선확대 등 어업인 참여 유도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현 500척에서 600척으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어업질서 선도마을 10개소를 선정하여 어촌사회에 준법의식을 촉진시켜나갈 계획이다.

제 4 장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제1절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그간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10년간 수산분야에 12.4조원을 투융자 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반면, 한·미 FTA 추진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과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현장 어업인 중심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투융자계획 12.4조원을 수정·보완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가. 수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장 여건이나 수산자원의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채 과도한 노력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WTO/DDA 협상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업종이나 경영체를 정리하고 잔존 경영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연안어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조정 범위를 근해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정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 어업인 전업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업인 및 어업 종사자의 전업·전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할 것이다.

나.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산업으로 자원량은 수산업의 존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즉, 수산자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생산성 확대가 수산업 자생력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50만톤(2006년 109만톤) 이상의 안정적인 어업생산량 달성을 목표로 어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회복계획을 2005년에 마련하였다. 이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2015년까지 상업성이 큰 40개(2006년 4개)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 세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다.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21세기는 감성적이고 개성적인 소비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사회이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의 입맛이 세계화 되면서 수산식품에 대한 시장수요도 탈지역화, 탈계절화 되고 있고 그들의 구매 파워가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수산식품은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소비자 수산물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식량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소비자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관리체제 구축토록 할 것이다. 우선, 소비자들의 건강과 영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을 위해 ‘바다에서 밥상까지’ 철저한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 수산업은 전통적인 수산업의 영역인 식량 공급 차원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바이오 수산자원 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수산 생물로부터의 신물질 개발, 생명공학을 응용한 양식기술개발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산벤처사업 지원 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다.

라.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어촌은 오랜 생활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어업 여건의 악화와 어촌 정주환경의 변화 및 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라 어촌 관광은 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을 어촌에 확보하여 어촌의 Amenity를 활용한 다양한 어업외 소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어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 추진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한편, 수산업·어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어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사업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양식재해보험은 대상품종, 대상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 품종부터 시범사업 도입(2008)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 경영기반을 지속 확충할 것이다

마. 수산보전제도 본격 도입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환경 관리,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농업 등 타 분야의 직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수산보전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보전제도는 정부가 예산(국고 보조)을 어항정비, 유통시설 확충, 기반정비 등에 투입해도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 증대에 연결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이다.

반면 수산보전제의 경우,

추후, 시장개방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가능한 ‘허용성’ 보조금을 수산보전제도 형태로 개발하되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직불금 지급은 지양하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원관리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는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보전,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도 등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사업, 생분해성 어구지원 등 수산보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수전보전제도로 통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제2절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1. 영어자금 공급 및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가.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

2007년도 영어자금은 대 정부 상환분 668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2006년과 같은 규모인 1조 5,050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이중 연근해 어업분야에 1조 4,250억 원, 원양어업 분야에 8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자금 중 300억원은 어선조난, 흉어, 재해,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표 >

2007년 영어자금 공급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소 요 액		35,773	36,928	38,920	41,199	41,299
공 급 액		14,050	14,050	14,050	15,050	15,050
공 급 율		(39)	(38)	(36)	(37)	(37)
연근해	소 요 액	30,233	31,624	33,854	36,088	36,364
	공 급 액	12,900	12,900	13,400	14,250	14,250
	공급율	(43)	(41)	(40)	(40)	(39)
원 양	소 요 액	5,540	5,304	5,066	5,111	4,935
	공 급 액	1,150	1,150	650	800	800
	공급율	(21)	(22)	(13)	(16)	(16)
재 원 별	재정자금	5,814	5,814	5,636	5,636	5,636
	수협자금	3,844	3,844	3,933	4,433	4,433
	상호금융	4,392	4,392	4,481	4,981	4,981

한편, 2007년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에서 5,636억원, 수협중앙회 신용자금에서 4,433억원, 수협 상호금융자금에서 4,981억원을 공

급하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의 연체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나.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각종 수산정책자금을 어업인에게 저리로 공급하고,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차면제를 위해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1.3% 증가한 827억원에 달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어가의 금융비용 및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업인에게 연리 3%로 대출하는 영어자금 공급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525억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리 1.5~5%로 지원하는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282억원, 각종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용으로 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20억원에 이르며, 이들 이차보전금은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을 통해서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 >

2007년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A)	2007예산(B)	증 감(B-A)	B/A(%)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81,642	82,722	1,080	1.3
· 영어자금이차보전	44,241	52,500	8,259	18.7
· 피해복구이차보전	2,299	2,045	-254	-11.0
· 어가부채경감이차보전	35,102	28,177	-6,925	-19.7

다. 대손보전기금의 건전화

정부에서 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기금잔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에 대한 수산정책자금이 원활히 대출되어 어업인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므로 정부에서는 2007년에 65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는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담보대출금을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2007년도 수산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5,994억원으로서 전년도 운용계획 6,009억원 대비 0.2% 감소하였다.

조달계획을 보면 비축사업 및 여유자금 운용규모 감소로 수산물판매수입 및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관 및 용자사업 확대에 따른 용자원금 회수액 등의 증가로 자체수입이 확대 편성되었고, 정부내부 수입(정부출연금)은 자체수입의 증가를 감안하여 200억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10.4)·시행(2007.4.5)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조치 하였으며, 수산물수입부과금도 하반기중에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해 나갈 계획이다.

운용계획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전년도 수정계획 5,511억원 보다 다소 감소한 5,254억원으로 용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의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추진, 해양환경개선기반조성, 정부가격안정, 자원관리형어업육성, 민간가격안정,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유통가공시설 개선 및 어업경영지원 등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부합되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2006년도 1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의 과목구조를 2007년도 9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WTO/DDA 협상, FTA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수단으로서의 기금의 지원역할 강화를 위해 어업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FTA 지원계정을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1. 일선수협을 지속적 경영정상화 추진

가. 일선수협 경영평가

일선수협의 순 자본 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조합 등에 대해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적기 시정조치를 취하고, 분기마다 적기 시정조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 이행 시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체결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MOU 이행사항을 점검, 미 이행시기 지원된 자금에 대한 회수는 물론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갱신

2002년 9월말 일선수협 경영진단시 매각대상 고정자산이 아니었으나, 이후 MOU 약정체결에서 매각대상 고정자산에 추가되어 매각손실이 예상되는 18개 조합에 대하여 총 194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이자(연간 14억 원씩 5년간 총70억원)를 지원하고, 2007년도 중 MOU를 체결한 42개 조합에 대하여 총 411억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MOU 관리 비용 7억 원 포함)를 지급하여 지속적 경영정상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자금지원과 동시에 체결된 MOU에 대해 협동조합 경영주체로서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각 조합의 사업기반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특히 MOU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과 그렇지 못한 조합에 대해 차별화를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강력 추진하고자 2008년 MOU 목표를 조합과 갱신 체결할 계획이다.

다. 부실조사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실조사 대상조합 50개중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9개 조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 시 소멸시효완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 중 부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을 받은 조합에 대한 철저한 부실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부실에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조합 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조합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라. 현장 중심 경영지도 및 경영지도역 인력 Pool 구성

경영평가 결과 순 자본 비율이 하락하거나 적기 시정조치 및 MOU 목표를 미 이행한 조합 및 신임 조합장이 취임한 조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부실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여 현장중심 경영 지도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실조사 및 회계지도와 연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조합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합 자체적으로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금 사정 악화 등 업무통제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지도역 POOL을 구성, 부서간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적시에 경영지도역을 현지에 파견하

여 부실을 조기 차단할 것이다.

2.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가.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지도사업 및 경제사업 부문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사업부문 자본 잠식액(943억원)은 2007년까지 943억원을 모두 지원함은 물론 분할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 비용의 지원을 추진하여 경제사업부문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립경영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업부문 손실금(475억원)은 2007년까지 125억원을 지원함은 물론 지원 잔액(350억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을 마무리하여 수협의 기본임무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 등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2007년에 온라인시스템 안정화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전산경영시스템에 10억원을, 일선수협 종합감사정보시스템에 4억원 등 총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신용사업의 「BLUE I 0708」 1차년도 운동 전개

「BLUE I 0708」은 일류해양수산은행 비전달성을 위해 개척해야할 'Blue Ocean'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나(I)로부터의 Innova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차별화된 신용사업부문만의 경영혁신을 의미하며 세부 내용은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은행시스템을 구축하고 NIM, 비이자 이익 등 기본적 이익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Basic Innovation,

둘째,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은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은행을 건설하며 직원이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문화 창출을 목표로 한 Love Innovation,

셋째, 해양·수산금융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행보다 한발 앞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Unique Innovation,

넷째,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산출하며 영업 및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Efficient Innovation 을 그 내용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3. 수협 혁신방안 추진

수협은 2005년부터 추진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협이 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체성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사업부문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부문간 협력체제 강화 및 부진과제 점검과 추진독려에 집중할 예정이다.

2007년도 주요추진과제를 보면 성과관리시스템(BSC)을 정착화하여 성과와 연계를 통한 업무효율성 유도, 사업부문간 유사업무의 통합관리 검토·추진, 어업인의 원만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신용평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조합 부실채권 사전 예방을 위한 경제사업채권 전산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상호금융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발전방향 제시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7년 경제사업부문은 수산업의 미래전략사업으로서 노량진수산시장 현

대화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HACCP시설을 갖춘 인천 물류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감천항물류센터 및 광주 공판장 급식가공장 등에 HACCP시설을 완비하는 등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4절 어업 보험 확충*

1.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2007년도에는 정책보험 도입 4차년도로서 보험사업의 안정과 어업인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으로 보험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가입 자진신고 및 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설정을 통한 보험가입 활성화와 수협중앙회 심사 일원화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고 보조율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표 118〉

어선규모별 보험료 지원율

(단위 : %)

구 분	어선원 보험료					어선 보험료		
	1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2006	62.0	54.0	30.0	22.0	14.0	62.0	54.0	14.0
2007	62.0	54.0	30.0	22.0	14.0	62.0	54.0	14.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2.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양식수산물은 19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기업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태풍과 적조 등의 어업재해 발생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수산생물에 대한 복구비는 치어입식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수산물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 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시장경제하에서의 보험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관여하는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개년에 걸쳐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6도에는 양식재해보험의 위험률 검증 및 도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기 위해 2006. 10~11월 지역별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도에는 제정중인 법안 제정을 마무리 하는 한편, 보험사업자의 선정, 재보험기금 신설, 보험료의 국고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2008년 7월 1일(예정)부터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제 5 장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제1절 어촌종합개발사업체제 개편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대상사업은 어선계류시설·어업지원 등 생산 기반시설과 어촌환경 시설 및 어촌소득기반시설 중에서 어업인이 선택하였다.

권역당 2~3개년 간 평균사업비 35억원을 지원하며, 국고지원율은 2004년 이전 사업은 50%, 2004년 이후 사업은 80%로 2007년도에는 28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4개 권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숙원사항 위주로 분산 추진되고, 정형화된 사업계획이 하향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 개발 여지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사업추진체제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사업 대상권역별 투자방식·투자규모·대상권역 규모 등의 변경과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를 위하여 2007년에는 사업추진체제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2절 어촌관광 S/W지원 강화

국민들의 소득 및 주 40시간 근무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에게는 어업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 공간제공을 하고자 어촌관광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국내 관광수요를 어촌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중 25개 마을을 선정 사무장 보수를 지원(100만원 한도, 국비 50%)하고 체험마을 운영 컨설팅(13개소)을 확대 실시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S/W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은 1지역 1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홈페이지 구축(정비)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해양관광포털(www.seantour.com)과 연계하여 도시민에게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등 S/W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연간 30회/2,000명 이상)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어촌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각종 박람회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협이 어촌지원 TF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자매결연 사업 등 도시/어촌 교류사업의 양적확대는 물론, 내실 있는 교류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할 계획이며 총 500사 500촌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3절 어항시설 확충

1. 국가어항

2007년도 국가어항투자 방향은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긴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18억원을 투입하여 전남 소흑산도항 등 5개항을 완공하고 강원 아야진항 등을 관광어항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시범개발중인 대포항 등 7개 다기능어항 개발에 385억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에는 어선감척계획을 반영한 지역별 어선안전수용률과 지역 여건 및 어항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해안에 비해 어선안전수용률이 부족한 서·남해안 지역의 어항 중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어항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동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시 2008년도에 추가지정 할 예정이다.

동 용역의 주요 조사내용은 국가어항 신규수요 재 예측, 어항지정기준에 부합한 어항 선정, 경제성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다.

2.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지방어항은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지정 억제통하여 완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55개항에 645억원(국비

488억원, 지방비 157억원)을 투입하여 10개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7개항 중 123개항을 완공(완공률 43% 달성)할 계획이다.

어촌정주어항은 지방어항의 완공률이 부진함에 따라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하여, 어촌정주어항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제4절 어촌어항 관광개발

1. 어촌관광 모델사업

국민들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와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 공간, 다기능어항, 어촌관광단지 등 3종의 어촌·어항개발 통합모델을 개발한데 이어,

200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7년에는 기본설계 4개소(국동, 대항, 전곡, 야미도)와 실시설계 1개소(맥전포)를 실시하고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외 14개소에 대한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양포항(경북 포항)을 완공할 계획이다.

2. 어촌체험마을 조성

2001년부터 체험활동이 가능한 어촌마을에 어촌관광체험 기반시설비를 지원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은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마을 등 11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이 기반시설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운영이 활성화 되어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험마을 운영 컨설팅 등 S/W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제2회 어촌체험마을 성공사례발표회를 개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을 통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 6 장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절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1. 어업인후계자 육성*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7년도에 180억원(456명)을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분기 1회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선도경영인 사업장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수산업인턴제와 해양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09〉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81~'06		'07(p)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7,448	412,400	16,992	394,400	456	18,000
일 반 후 계 자	14,883	277,063	14,538	265,063	345	12,000
전 업 경 영 인	2,503	130,012	2,401	124,912	102	5,100
선 도 경 영 인	62	5,325	53	4,425	9	90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2. 해기사 양성 및 수산기술 훈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2007년도에 121회에 걸쳐서 총 3,470명의 어선원을 교육훈련을 시킬 계획이다.

주요 교육과정을 보면 “해기사교육과정(항해 및 기관)”에는 1회에 걸쳐서 40명의 간부급 선원 양성과 “기초안전 교육과정”에서는 70회에 2,100명을 교육함으로써 어선의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 기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면허취득교육에 대해서도 40회에 1,000명을 교육시켜 지정교육기관 미 이수자나 필기시험 면제자 등에 대한 면허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며, 기타 10회에 걸쳐 연안·원양선 직무교육, 해양오염방지교육, 레이더교육, 승무원직무교육, 수탁승선실습 등 제반 교육훈련에 33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특히, GMDSS, 냉동 Plant, Engine Simulation 등 고가 첨단 훈련장비의 활용을 통한 실기교육의 활성화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산기술교육 및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어촌 정보화를 선도하고자 하는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경영관리 전문지식·기술·정보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어업인 교육은 10과정 51회 4,3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현장애로기술 능력배양과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현장애로 타개를 목적으로 8과정 12회 520명에 대하여 전업어가과정, 산업기능요원과정, 어촌관광가이드과정, 어업인 현지방문교육과정 등이 운영되며 어촌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술향상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원격수산기술교육/상담 33회 3,445명과 정보화 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원격정보화과정 6회 390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절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최근 어촌은 어업생산 활동의 전초기지 차원을 넘어 어촌관광, 해양레저, 휴양·정주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차원의 어촌모델 개발이 조기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어촌개발리더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촌개발 리더 양성을 위하여는 어촌관광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DB화하여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촌을 생산, 휴양, 정주, 해양관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기능 공간으로 재 건설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촌개발 리더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어촌개발 전문인력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KMI)을 추진하여, 어촌개발 리더의 육성실태 및 문제점, 국내외 지역리더 육성사례와 시사점, 어촌개발 리더 육성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어촌개발 전문 인력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지역별 어촌개발지원 전문가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정된 어촌개발리더의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어촌개발 전문인력 육성은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과 의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모델로 효율적인 어촌지역개발이 가능하고, 어촌개발과 개발 후 시설운영 과정에서도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기능이 미약하고,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2.6%수준으로 젊은 층의 탈어업, 탈 어촌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 2006년 기준 어가소득은 30,006천원 ↔ 도시근로자소득 41,321천원

* 어가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 : (2000) 20.1% → (2006) 36.2%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과제(우리부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어촌지역은 대부분 도서벽지로 분산되어 있고, 농업 등 다른 업종과 겸업을 유지하고 있어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집약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농림부, 교육부, 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도 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어촌지역 공동화 심화를 예방하고, 젊은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2007도에는 어촌의 특수성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농어업인 연금·건강보험, 보육시설 확충, 여성 농어업인센터 설치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개관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사업추진효과를 더 높임은 물론 어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탈 어촌, 탈 어업을 극복하여 어촌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7 장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제1절 국내수산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국민 소득향상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양식품종 다양화와 대량생산 등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 등 약품사용이 증가하고,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금지약품을 사용하는 등 수산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세계 각국은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자국의 위생조치에 의한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SPS 등 국제규범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검사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약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검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약품에 대한 검사항목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항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포름알데히드, 산화방지제, 아질산나트륨 등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과 위생협약사항에 부합된 관리를 위해 EU, 미국 등의 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의 생산유도를 통해 수출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국내 생

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의약품은 수산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수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양식 어류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므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성 세균에 대한 생물자체의 저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질병치료용으로 항생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승인된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어업인에 대한 안전사용 지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및 공급 확대를 통하여 항생제 사용량의 자연 감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양식장에 만연되고 있는 수산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더불어 양식장에서 미승인약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제한토록 하기 위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양식 수산물의 생산·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수산물 수입의 완전 자유화로 국가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되는 저질·위해 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수계 보호를 위한 검사기능의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2007년도에는 질량분석기(LC/MS/MS) 등 37종 59대의 최신 정밀분석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신규 및 기존 분석검사원에 대해서도 유기독성·항생물질·어류질병 등 7개 분야 46명을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석검사원간의 신뢰성 오차범위 축소와 본·지원 간 표준화 유지를 위해 중금속, 항생물질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기숙련도 향상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써 인정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은 물론 인정분야 확대 및 품질시스템의 지속보완, 국제수준의 시험기술 능력향상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시험기관으로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장에서부터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조사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HACCP의 적용 약식장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확대와 함께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6,000건으로 강화하고 생산업계의 위생안전 교육 확대 및 효과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수산물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비율을 22%까지 강화하고 부적합 빈발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하고 국내외에서 제기된 위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특별검사 실시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산교역 국가(러시아, 뉴질랜드 등)와의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하고 및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세청과 불법유통, 위장수입 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 협력체제 구축하여 수입수산물 부정통관 방지하며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판별 DB구축을 추진하여 국내 유통 투명성 확보 추진할 계획이다.

제 8 장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제1절 친환경 양식 생산

연안 내만의 양식장이 어장오염·노후화 및 빈번한 질병발생과 태풍·적조에 따른 피해 반복 등으로 생산성이 날로 저하됨에 따라,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내만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한 새로운 양식기술을 적용하여 연안 어장의 환경개선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현재 외해(수중)가두리 양식개발사업은 제주도(2005년부터)와 경남도(2006년부터), 전남도(2007년부터)에서 시험어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시험어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해양식 관계자인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해(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계획의 기본지침(2007년)」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기본지침에는 2009년까지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도별 2개소 이내의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시험어업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분석 한 후 2010년부터 전국 연안으로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동 시험어업의 추진방법은 정부(지자체 포함), 어업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험대상 품종은 참치, 대구 등과 같은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양식어종과 경합되지 않은 돌돔, 능성어, 참돔 등 수입대체 품종으로 하며, 시험어업 장소는 수심 40m 이상, 해안선에서 3k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동해에서 저층수를 이용한 대구의 해양식기술개발과 남해에서 참다랑어 외해양식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의 본 사업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씨그랜트(Sea Grant)사업 기획과제로 “외해양식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를 추진,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7년도에 25,640백만원(농특회계 14,500, 균특회계 1,300, 수발기금 9,840)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지원 1개소, 수협사료시설·운영비 지원 1개소, 양식장 노후시설 개량 7개소, 해삼 양식장 시설 2개소, 축제식 월동장 지원1개소 등이다.

제2절 수급조절 강화

2004년부터 시작된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사업은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 정부주도의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에 따라 농안법 및 어업인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유통협약사업, 자조금지원사업, 비저장성정부수매(폐기)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을 유도하고, 유통협약·자조금지원사업은 수산물 수급동향을 고려한 적정 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유도 및 수산물 판로확대,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비저장성 정부수매(폐기)사업을 통해 저장성이 없는 수산물(물김 등)의 과잉생산 및 예측불가 사유로 가격하락시, 일정물량을 수매하여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사업은 주요 양식품목(김,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을 중심으로 매월 관측정보를 어업인, 유통인,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생산 어업인 단체에 대한 유통협약·자조금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왔다.

앞으로, 자율 수급조절사업인 수산업관측 및 유통협약·자조금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은 2011년까지 육상수조식, 가두리식, 축제식양식업 주요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DB, DW) 구축, 수산물 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 수산물 수급전망모형 구축, 수

산물 수출입관측 및 해외동향조사를 강화하여 관측 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통협약 및 자조금지원사업은 사업내실화 및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어업인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해 나가고, 기존 시·군 단위에서 업종별 수협 및 품종별 생산자 협회 중심으로 2010년까지 광역화·전국화하여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주도의 시장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도 양식수산물의 적정량 수급조절을 위한 양식장 불법양식 시설 정비단속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김 양식장의 불법시설과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축제식양식장의 신고제도가 허가제도로 통합되면서 양식 허가사항중 양식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양식장, 기타 양식시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불법시설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양식시설 등 각종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시작된 김 양식장 인공위성 판독결과에 따른 불법 김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 전남(완도)지역의 불법 전복줄가두리식 양식 시설의 단계별 정비단속 계획 수립·추진, 2007년도 어업권 주요품종별 실태조사, 축제식양식장의 불법양식 정비단속 계획, 홍합, 미더덕 등 기타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양식장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불법시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방침에 일선의 자치기관과 어업인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자율적인 노력이 돋보이며, 특히, 인공위성 촬영영상사진을 이용한 김 양식장의 정비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200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남(완도)지역의 불법 전복줄가두리 양식시설 철거 추진, 이미 2차례에 걸친 축제식양식장 불법양식 정비단속, 홍합, 미더덕 등 기타 불법양식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도록 지방

자치단체에 지시하고 점검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불법양식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적법한 양식시설에서 적정량의 양식수산물이 생산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기관 행정선의 GPS(위성항법장치)에 양식장 면허현황을 입력하여 불법양식시설을 확인하고 정비단속을 함으로써 불법양식시설이 점차 사라져 적정량의 양식수산물이 공급되면 생산가격이 안정되어 어가의 소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양식장의 불법양식시설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3절 어장환경 개선

2007년도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양식장, 마을어장 중심의 양식어장과 만단위 특별관리 어장정화에 104억원을 투입하여, 16,619ha에 대해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동식물의 서식·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망 등의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3억원을 투입하여 817여 톤의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어장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7년도에는 해상 가두리 바닥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가두리 양식어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장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어장정화 지원대상을 「어장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특별)해역 위주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도 높은 어장환경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장은 당해 어업인에 의한 어장환경 개선 및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제4절 내수면 어업 육성

내수면양식장에서의 기술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형망의 어구·어법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어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면 레저활동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어객이 밀집하는 강·하천을 중심으로 내수면 홍보알림관을 설치(100개소), 댐·호수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붕어·잉어 등 민물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치어의 생존율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회·매운탕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수면 수산식품의 소비시장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송어훈제가공시설 사업(1개소 14억)을 지원하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래식을 고밀도 순환여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양식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대부분의 내수면어업인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수협을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수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외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를 기금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2004 ~ 2007년까지 내수면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내수면생태계의 회복·보존 관리방안 마련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토산어종 및 연어치어방류 사업과 아울러, 내수면수산자원을 국민에게 친숙한 유어공간으로 제공하여 관광 자원화 할 계획이다.

제 9 장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제1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의 소비가 웰빙 추세에 따라 2005년 4,169천 톤에서 2006년 4,568천 톤으로(399천 톤 증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도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생산량은 156만 톤 수준에서 소폭 감소(1만 톤) 추세이며,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품질기준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품질인증제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고 가공산업 활성화 및 고품질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활어회 중심의 회 문화 개선을 위한 싱싱회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해 수산식품의 기준강화 및 품질 향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음식문화의 국제화 추세 등으로 가공품에 대한 소비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산물가공품 생산에 있어서도 소비자 요구 및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편리화·다양화·고급화 전략과 함께 국민보건 위생에 적합한 가공품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도는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감천항 가공단지 지원 및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 선별 지원(17개소 61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4개소, 30억원), 젓갈타운 조성(1개소, 8억원) 및 굴 패각 제거업 시설 현대화(25개소, 15억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싱싱회 가공시설

활성화 및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판매장 15개소를 개설, 지원(9억원)하여 싱싱회 가공공장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싱싱회 공급체제를 구축하여 싱싱회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품목에 건제품, 냉동품, 핏감용 등에서 활어 등을 추가하고 인증품목 수를 112개에서 136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의 명성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만족과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제도를 최초로 연내에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7〉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06년말 기준)

구 분	계	해조류	절임식품	조미가공	건포류	기 타
공장 수(개소)	2,994	528	522	369	235	1,340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표 108〉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구 분	'01	'02	'03	'04	'05	'06
공 장 수(개소)	3,484	3,388	3,008	3,870	2,937	2,994
생 산 량(천톤)	1,547	1,444	1358	1,529	1,559	1,547
평균 생산량(톤)	444	426	451	495	530	517

자료 :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아울러,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 제고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수산물 유통체제 개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주도해 온 수산물 유통체제가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을 기점으로 복합적 기능의 종합유통센터같은 새로운 모델이 출현하는 등 다양화 되었고, 공공유통 기능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등 최근 수산물의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의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급변하는 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거의 생산자위주 수산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유통체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패류 및 선어 실질경매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산지 출하자가 수산물 표준규격으로 도매시장법인에 직 수탁하는 물량의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소비지 중도매인에 대한 유통자금과 출하촉진자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수도권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출하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지 등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수산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3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패류 실질경매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출하주 명, 연락처, 품명, 생산지 등을 기재한 표준스티커를 부착하여 출하하는 어상자에 대하여는 스티커 제작비용(장당 50원)을 추가로 지원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안정기금에서 분리하여 2005년 1월 1일부로 수산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른 자율성을 강화함에 따라 산지 및 소비자유통자금 확대, 수산물의 민간저장기능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이 적정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및 유통마진 축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32억원을 들여 직매장 9개소, 위판장 5개소, 해양수산복합공간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어업인 및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수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4개소, 위판장 26개소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시장 기능개선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매시장 시설의 노후로 인한 환경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고, 21C 신 해양시대 동북아 최대의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추진 중인 중인 감천항 도매시장 건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07년에는 공정률 90%의 진척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건립한 지 36년이 지나 노후화됨에 따라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수산물 관광명소로 쾌적하고 청결한 쇼핑물로 개발할 계획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안사항인 사업추진 기간 중 시장기능 유지 및 시장 종사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건축공사 기간동안 시장 이전 및 판매 손실액

보상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현대화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었다. 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위치한 농림부 소유 농산물 비축지기 부지 일부를 활용하기로 농림부와 기본협약을 체결(2007.8.21),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통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수산물 가격안정

수산부분의 기금이 2005년 1월 1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산물발전기금」으로 전환 되었는데,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4,522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200억 원을 정부비축사업에, 3,097억 원을 민간가격안정사업에, 1,225억 원을 유통개선사업으로 각각 운용될 계획이다.

1. 가격안정사업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발기금 200억 원을 지원하여 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4개 품목 7,200톤을 정부에서 직접 비축·방출함으로써 원활한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 및 생산자단체에도 1,344억 원을 지원하여, 비축수매·방출 및 출하조절을 도모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6〉

2007년도 정부비축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수매물량	기금지원	수매시기
합 계	7,200	20,000	
냉 동 오 징 어	1,500	5,000	5 ~ 11월
냉 동 고 등 어	1,000	3,000	8 ~ 12월
냉 동 명 태	4,700	10,000	6 ~ 12월
긴 급 가 격 안 정		2,000	1 ~ 12월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주 : 수매 물량 및 사업 시기는 생산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2.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연근해 및 해외어장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어황 및 가격동향에 따라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생산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사업으로 수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과의 공동·합작사업으로 어획물 국내반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중으로 물가관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관리를 점검해 나가면서, 특히 명태·오징어·고등어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설날·추석 등 성수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성수품의 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 10 장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제1절 WTO/DDA 협상력 강화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가. 협상동향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쿰)가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4년 3월 들어 재개되었고, 2004년 7월에 DDA 협상 전반에 대한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협상기본골격(framework)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되었다.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홍콩)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협상세부원칙(modality) 타결에는 실패, 2006년 4월 세부원칙 마련과 2006년 7월 국가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2006년 말 협상을 타결한다는 일정에 합의 하였으나, 각 진영간 이견차가 지속되어 결국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6년 7월 DDA 협상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WTO 비공식 무역협상그룹(TNC)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07년 1월말 다보스 포럼에서 협상 전면 재개를 공식선언함으로써 DDA 협상은 2007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1) 수산보조금

협상 중단 이전에는 2006년 7월 의장의 협정문안 도출을 목표로 문안에

근거한 협상(text-based negotiation)이 가속화 되어 왔으며, 금지/허용보조금의 범위, 개도국 특별대우(S&D), 소규모 어업, 금지보조금의 유예기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수산보조금 금지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수산물 수출국(FFG ; Fish Friends Group)들이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은 보조금의 성격, 어업관리 및 자원상태 등 관련 요소를 감안하여 개발보조금의 자원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금지할 것을 주장하여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우리 측의 적극적 협상대응으로 홍콩각료회의를 기점으로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는 명목상 저지된 것으로 평가되나, 수산보조금 금지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수산물 시장접근

2003년 9월 제5차 각료회의(칸쿰) 합의 실패 이후 소강상태였던 본 협상은 2004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으며, 협상의 기본틀(framework)은 제5차 각료 회의시 작성된 데베츠 안(Derbez Text)를 기초로 논의되었다.

동 데베츠 안(Derbez Text)은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민감한 균형을 갖추고 있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문안을 추가하여 2004년 8월 1일 협상기본틀(framework)로서 합의되었으며, 구체적인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협의 및 분야별 무세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현재 공식계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나, 각국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극적인 희생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WTO 수산물 시장접근에서 관세인하는 비선형(non-linear) 방식으로 하되, 이중계수 구조의 스위스 공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대상 분야 선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WTO/DDA 협상은 농업, 비 농산물, 규범 등 7개 그룹의 협상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산물이 포함된 비 농산물 시장접근(NAMA)분야의 협상진전 여부는 여타분야의 협상진전, 특히 농업협상의 진전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나. 협상대응방안

향후 우리나라는 WTO/DDA 수산분야 협상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수산부문 협상대응을 위한 공무원, 연구기관, 학계, 어업인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된 「WTO/DDA 민관 협상대책단」을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하면서 협상전략의 투명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대의협상과 관련, 수산보조금의 경우는 특별규제가 불가피하므로,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는 것 외에도 공조세력을 다변화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뉴질랜드 등 입장이 반대되는 국가는 개별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이 WTO/DDA 협상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수산보조금 지원의 틀을 WTO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우리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협상타결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수산물관세의 경우는 협상 재개시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수산물 무세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전체 입장과 보조를 같이하여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 방식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수산분야가 포함되어 무세화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 수산업의 영세성 등 국내적인 어려움 이외에 수산물 무세화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은 식량자원과 관련된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 사항이며, WTO를 발족시킨 마라케쉬협정 전문 및 WTO/DD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한 도하각료선언문에 명시된 관세철폐는 그로 인한 초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도한 어업을 유도하여 천연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많아 인류에게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서도 일부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추진은 오히려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즉, 직업전환이 어려운 개도국 어민들은 무관세로 인한 어가하락을 어획량으로 보충하기 위해 어획노력을 증대시킬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원고갈을 촉진시키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한편, 대부분의 최빈 개도국들은 직접 어획하여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3국에 입어를 허용하여 자국 수산자원만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측면에 있어서도 수산물에 대한 완전 무세화가 소비자의 일시적인 후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장기적 소비자 후생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인하 공식 적용시에도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하여는 신축성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축성의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률 적용 및 관세인하 기간의 연장 등을 들 수 있으나, WTO 체제 내에서 이러한 신축성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어 향후 협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 FTA 추진전망 및 대응방안

가. FTA 추진 배경 및 전망

WTO-DDA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 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확산추세이다. 현재 약 197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 및 발효된 것으로 WTO에 통보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WTO 출범(1985) 이후 체결되었으며, 세계 총 무역 중 지역 협정내 무역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아시아와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삼각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시장확대,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무역협정 역외국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FTA에서 소외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및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FTA를 활용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2002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협정이 타결되었고 2004년 4월 협정이

발효되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FTA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에 따른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단시간에 칠레·싱가포르·EFTA 등 교두보적인 국가와의 FTA를 거쳐 미국과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전략적 FTA가 추진될 예정이며, 신흥유망국가와의 FTA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 FTA 추진동향

정부는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하여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 로드맵을 정하여, 단기적으로는 일본·싱가포르·아세안·EFTA(유럽자유무역연합)·멕시코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FTA 추진체제 구축 및 대응강화를 위해 FTA 추진위원회 및 FTA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한·일 FTA 및 한·싱가포르 FTA를 추진하였다. 한·싱가포르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2004년 초에 시작하였고 2005년 8월 협정이 체결되어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일본과의 FTA는 2003년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2005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한·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말 까지 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상품개방의 수준,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협상이 중지된 상태이다. 또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는 2005년 협상이 타결되어 2006년 9월 협정이 발효되었다.

한편,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2007년 4월 최종 타결되었다.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 최장 15년까지 이행기간 부여와 TRQ 도입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였고,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35%)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철폐와 양식산 활넙치 체장제한을 해제하는 등 향후 수출확대의 길을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 협정이 발효중에 있고 캐나다, 아세안, 인도 3개 경제권과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다. FTA 대응방안

FTA 수산분야의 협상대응을 위하여 협상의 사전단계에서는 FTA 추진 대상 국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FTA 협상 전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수산분야의 민감성 강조 및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수산업계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대책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최적의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수산분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인해 국제 경제력이 취약한 수산업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2절 국제 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1. 국제수산기구 협력*

2007년도에는 『유엔해양법협약(1994년 11월 발효)』,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2001년 12월 채택)』,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1995년 10월 채택)』, 『편의국 적선금지협정(1993년 11월 채택)』 등 국제 어업질서의 근간이 되는 국제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지속적인 원양어장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국제수산기구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지역수산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0년 5월 7일부터 실시중인 “어획증명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향후 남극수역에서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우리 어선들의 시험조업을 계속 권장할 예정이다.

CCAMLR가 세계 수산선진국이 대거 참여하여 남극에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기구임을 중시하여, 동 위원회의 각종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2005년 ~ 2006년 기간에는 한국이 CCAMLR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입지강화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또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도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각종 과학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최근 조업실적 부진으로 우리나라에 할당된 어획쿼터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쿼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04년 6월19일 설립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수립 논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핵심국과 양자간 회담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수산기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수역인 대서양의 연승어선에 의한 참치 조업은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동 수역에서는 어획실적 위주로 국별 쿼터(INQ)를 할당받고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어획쿼터의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조업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원양업계에 조업참여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에 터키정부와의 수산협력을 통해 터키 선망어선 2척을 용선하여 축양용 참다랑어 700톤을 어획한 바 있으며, 2005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참다랑어 1,000톤을 어획하였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회의에서는, 동 협약 수역내 대만 등 비회원국들의 조업활동 강화로 우리어선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는 점을 감안, 일본 등 입장을 같이 하는 조업국과 함께 비회원국들의 조업규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수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자원감소에 따른 채산성 있는 쿼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원 회복 시 적정 쿼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며, OECD, APEC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보존협약(CBSPC)』 수역에서도 최근 명태자원의 수준이 조업재개에 필요한 167만 톤에 크게 미달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본·중국 등 조업국과 연계하여 현행 자원량 수준에서 국별 쿼터(INQ)를 정해 우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국별 2척으로 되어 있는 시험조업척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연안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에 2003년 5월 가입한 후, 연어 모천국 지위를 확보하고 방류연어 회유경로 파악 등 과학조사에 여타 회원국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어양식 등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최근 우리 다랑어연승어선이 조업 중인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에서 그 동안 규제를 취해 오지 않았던 연승어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눈다랑어에 대한 2004~2006년간 어획량이 2001년에 어획한 양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바,

기존 14개 회원국들의 사전 가입 동의를 확보하여 2005년 12월 가입을 완료하였다. 특히 2006년 6월 제74차 연례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본 회의를 통하여 원양 조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지강화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2.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산 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 확대를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경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적정한 어획 쿼터를 확보함과 아울러 조업수역 등 조업조건을 개선할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3국간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인 러시아, 중서부태평양 제도서국,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수산당국자의 초청, 수산과학기술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 시키고 아울러,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도에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자를 공여할 계획이다.

〈표 112〉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구 분	체 결 일	발 효 일	비 고
중 국	'00. 8. 3.	'01. 6. 30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일 본	'98. 11. 28.	'99. 1. 22	6개월전 통보로 종료
피푸아뉴기니	'92. 1. 25.	'92. 4. 15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러 시 아	'91. 9. 16.	'91. 10. 22	6개월전 폐기통보 없을 시 때 1년씩 연장
에쿠아도르	'84. 5. 22.	'84. 9. 19	6개월전 통보시 종료
모리타니아	'84. 1. 7.	'84. 1. 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호 주	'83. 11. 23.	'83. 11. 24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프 랑 스	'80. 9. 19.	'80. 12. 19	3개월전 통보시 종료
키 리 바 시	'80. 12. 18.	'80. 12. 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슬 로 몬	'80. 12. 12.	'80. 12. 12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쿡아일랜드	'80. 8. 25.	'80. 8. 25	3개월전 통보시 종료
투 발 루	'80. 6. 18.	'80. 6. 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이 란	'77. 5. 11.	'78. 4. 1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팀

가.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2006년 12월 23일 일본에서 「제9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양국 EEZ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1,025척, 60,5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2007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양국이 각각 지난 해 보다 3,000톤씩 감소하였으나 우리의 주력업종인 연승, 중형기선저인망, 선망, 오징어채낚기, 꽁치붕수망어업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축소로 조정하고, 반면 비주력 업종인 대형기저, 외줄낚시, 복어채낚기 등을 대폭 축소 조정하여 우리의 실익을 도모하였다.

한편, 일본은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규제를 대폭 제안하였으나 양국 어업협력 측면을 설명하여 새로운 추가 조업 규제 없이 조업조건은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업하게 되었고, 연말~연초에 걸쳐 계속 조업하는 어선의 조업편의를 위해 2007년 2월 15일까지는 2006년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토록 하여 새로운 조업일지 사용을 위해 조업중 귀항 또는 조업중인 어선에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어선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8년도 어업교섭 대책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어획할당 대상어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하고, 어업별 조업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어업인·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력업종(어종) 위주의 어업교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표 113〉

2007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7년 5월 8일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1,025	60,500	600	9,440	15.6
일본어선	1,025	60,500	109	1,815	3.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나.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양국은 2007년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하여 2006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제6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중국EEZ 입어규모는 1,600척 68,000톤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중국어선은 금년보다 58척 970톤이 감축된 1,917척 71,930톤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감축된(58척) 중국어선중 어획강도가 높은 타망어선(58척)을 감축 시키는 한편 우리 측은 입어실적이 저조한 저인망(40척) 및 선망(23척)을 축소하는 대신 우리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자망(63척) 및 낚시류(27° 이남 18척) 어선 81척을 추가 확보했다.

그리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는 한중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서 2007년에 양측 어획량 일일보고와 분기보고의 어종 조정문제에 대해 연구·토론을 하도록 위임하고, 동 분과위원회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제7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확정한다. 시행은 2010년 이내에 하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7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한중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가 점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에 대해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는 해양생물자원

전문분과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도록 위임하고 업무 진행사항을 매년 어공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상대국 EEZ내의 조업분쟁을 예방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로써 어업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촉진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는 양국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교차승선과 어업지도단속선의 상호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양국어업지도단속 실시기관 간에 어업지도단속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표 114〉 2007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7년 4월 말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1,600	68,000	192	1,790	2.6
중국어선	1,917	71,930	1,011	6,941	9.6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다. 한·러 어업협정*

한·러 양국은 2007년도 어획쿼터 할당 및 입어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제16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명태 20,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2,650톤, 꽁치 2,500톤, 가오리 800톤, 청어 250톤, 복어 115톤 등 총 34,115톤의 쿼터를 확보하였다.

러시아 측은 자국 EEZ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총 허용어획량을 감축하고, 외국정부에 할당해온 정부쿼터를 축소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명태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4년도 양국 정상간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하여, 우리어선의 안정적인 쿼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오호츠크명태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조업규제소위원회 및 수산물교역정보교환회의 등 어업협력 회의시 우리어선의 조업과 연계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4/4분기 중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1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어획쿼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민간차원의 어업협력사업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5>

2007년 러시아 EEZ 조업 계획

(단위 : 톤, 척)

어종별	조업수역	쿼터	조업기간	조업척수	어구
합계		32,700톤		166척	
명태	북서베링해	20,500톤	1. 1~2. 28, 5. 16~12. 31	12척	중층트롤
대구		75톤			
청어		250톤			
대구	북서베링해	2,575톤	4. 10~11. 30	4척	저연승
가오리		800톤			
가자미		300톤			
꽁치	남쿠릴	2,500톤	7. 15~10. 20	18척	봉수망
오징어	연해주	7,000톤	5. 1~10. 31	132척	채낚기
복어		115톤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제3절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

남과 북은 2007. 8. 5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2007. 10. 2~4간 남측의 노무현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2000. 6월 제1차 남북정상급회담 이후 개최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남과 북이 추진하여온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수산협력사업은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시 서해공동어로 등 5개 항목에 합의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서해 NLL 문제 및 북핵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금번 정상회담 이후 남북수산당국간 협력을 통해 제2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되면 우리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조업 및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남북수산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중인 다양한 남북수산협력 사업(안)과 관련하여 남북수산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수산협력 포럼을 금강산 등에서 4차례 개최하였으며 북한전문가 및 지역 어민들과의 정보교류와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향후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개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북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여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제4절 원양어업 육성*

1.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가. 참치어업

북양트롤어업은 명태를 주 포획대상으로 러시아 EEZ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명태자원의 감소와 자국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전체 TAC와 외국 쿼터 배정량을 축소하고 있고, 위성자동위치발신기 부착·치어보호망 부착·옵서버 승선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러시아 측은 2001년부터 민간간 협의에 의해 확보해 오던 민간쿼터를 자국민에게 우선 입찰을 실시하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에게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입찰제”로 제도를 변경하여, 민간쿼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04년부터 쿼터배정방식을 “국제입찰방식”에서 자국 업체별로 과거 조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5년간 고정된 “산업쿼터”를 배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간 협정에 의한 조업쿼터 확보가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정부간 명태쿼터 20,500톤을 확보하고, 2005. 9월 6,000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6,004톤을 소진(98%)하였고, 2006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정부간 명태쿼터 20,500톤을 확보하고, '06.11월 5,750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6,250톤을 전량 소진하였다.

따라서, 금후 명태 트롤어업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한 수산외교를 강화하여 어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07년 12월 제17차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에 필요한 정부쿼터를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와 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쿼터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할 계획이다.

또한 합작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러시아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러시아의 일방적 조업규제에 대한 우리 조업선 보호를 위해 조업규제 소위원회에서 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간협력사업 및 수산과학기술 분야 교류확대 등 양국의 어업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해외트롤어업

뉴질랜드수역과 인도네시아수역을 중심으로 조업중인 태평양 트롤어업은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에 따라 어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기존어장의 지속적 유지확보와 병행하여 남태평양 동부 공해 “전쟁이” 어장 개발 등 새로운 어장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부아프리카 및 앙골라수역, 남서대서양공해 및 포클랜드수역에 조업중인 대서양 트롤어업은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업협정 체결 등을 통한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2. 원양업체 경영 지원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어업의 경영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 출어경비 일부를 영어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료, 항만 체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인 ‘해외자원생산 지원자금(20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였으며,

원양어업 출어자금 운용규모는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2,130억원(원양어업

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650)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150억원 증가한 2,280억원 (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800)을 원양어업 출어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3.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393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이 240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61%에 이르고 있고,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어업중 참치어업은 핏감용 및 가공용 참치를 주로 태평양 중서부수역에서 연간 약 29만여 톤을 생산하여 원양어획물 수출액의 68%를 점하고 있는 수출 주력업종이며, 또한 참치류의 자원은 대체로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등 조업여건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위와 같이 원양어업 중 경쟁력이 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산 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도 사업비로 선망어선 1척의 건조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건조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는 최근 유가급등 등에 따라 원양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대규모 건조사업의 수요가 미흡하므로 중고선 대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4. 해외 신 어장 개발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과 공해 조업규제 등 국제 어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공해 수산자원 관리는 공해자유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역 수산기구의 분할 관리시대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서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에 대한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2007년에는 2006년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한 해외어장 자원조사 예비조사 연구용역 및 해외어장개발 업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북태평양 미드웨이 참치어장과 중부베링공해 명태어장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자원조사 수역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향후 자원조사 예상 수역에 대한 예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도에 수립한 “해외어장개발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2005~2007년간 7억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해외어장 정보관리 및 조사를 위한 해외어장종합정보시스템을 국립수산과학원내에 구축하여 원양업체들에게 종합적인 해외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연안국과 입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

1. 수산물 수출 진흥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WTO 체제의 출범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17억\$ 내외의 수출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 수출 효자산업의 역할을 해 왔으나 1997년도 7월 1일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된 이후부터는 수출실적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부터 무역수지적자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매년 12억\$ 내외의 수출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는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의 증가 등 국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유가 및 환율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수산물 수출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세계수산물 수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산물 수출 진흥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인 수출정책 도입 및 투자확대보다는 단편적인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에 그쳐 수출 신장에 한계를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내외적인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WTO 및 FTA 협정 등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을 기회로 삼아 수산물 수출 진흥을 통한 잘사는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고자 2016년까지 수산물 수출 20억\$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수산물 수출 진흥종합대책을 수립(2006. 12)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동 대책은 「현장 맞춤형 수산물류무역 인프라 확충」 「수산물 가공·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마케팅전략 강화로 해외시장 저변 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수출 촉진」 「수출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활성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각 과제별 이행과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다.

2007년도에는 현장 맞춤형 수산물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남 해역에서 다량 생산되는 전복의 원활한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해 저장-선별-포장까지 일관 처리하는 수출용 전복 물류센터(3개소/15억원) 건립을 추진하고, 대미 활넙치 수출증대를 위한 물류비 절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가공·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수출주력업체 등에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우수수산물 수출 지원자금 1,366억원을 융자하고, 수출 주력 상품인 김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김(물김, 마른 김) 이물질 선별기(34대) 및 금속 탐지기(30대) 설치를 지원하며, 우수 수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수산물 물류비 지원방안 및 원가 산정에 관한 용역도 실시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8개소 → 11개소)와 함께 Road Show 등 별도의 기획 마케팅 활동을 전개(동경, 상해, 미 서부)하고,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우수 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출상품 카탈로그(KOREA EXPORT SEAFOOD) 제작·배부(5,000부), 다양한 홍보매체(신문, 공항광고, 기내잡지, 박람회 가이드북 등)를 활용한 직간접 광고를 실시하며, 중국 등 주요 타깃시장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 상설판매장 개설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대 중국 수출전략 마련을 위한 「대 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한·일간 무역현안 해소를 위한 「한·일 무역실무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농유공 및 무역협회 등 해외지사 주재원을 「명예 수산통상 협력관」으로 위촉(12명), 체계적인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고객에게 제공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수출 주력품목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수출정보 교환 및 수출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품목별 수출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학계·연구기관·지자체·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수출정책 협의를 위한 「수산물 수출진흥회의」를 설치·운영(반기 1회)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중장기 수산물 수출 진흥 종합대책에 의한 정책 로드맵 및 투자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수출 1억불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수산물 수출확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2007년도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TRQ)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TRQ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수산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의 적절한 운용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계획이다.

국내 수산물수출업체 및 유관관련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여 수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수산물은 품명, 품질, 생산시기 등에 따른 규격차이로 가격이 다양한 것을 구실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활홍민어·복어·조미오징어 등 수산물 45개 품목에 대한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질물품의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입수산물의 저가신고 근절을 위해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정보 조사, 저가신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명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IV 편

제도와 체제의 정비·개선

제 1 장

제도의 정비

제1절 행정규제 개선*

2006년도 수산분야 규제개혁은 지식정보화·전자 정부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규제 등 총 26건의 규제를 폐지, 완화하였다.

우선, 법인등기부등본 등 일정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담당공무원이 열람 가능해 짐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산물 검사기관 지정신청 등에서 요구하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둘째, 수산물 포장과 용기의 각종 기준 및 검사사항을 규정하던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그간 수산물의 규격화, 선진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규제사항을 없앴다.

셋째, 일부어망의 그물코규격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완화하고, 동해 일부 지역의 어로한계선을 확대하였으며 강원도 등 일부지역의 어업금지구역 및 기간을 조정하여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하던 어장정화정비의 수익자 부담금을 폐지하였으며, 기존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던 2톤

*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

미만 어선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도 수산분야 규제개혁은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정비로 규제개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규제건수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법의 제정 및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에 따른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규제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장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실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규제정비 사례의 적극적 홍보도 병행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강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타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조건으로 하는 규제 리모델링제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서 시범 작성을 통하여 비용편익 분석 및 규제대안 검토 등 규제타당성 판단의 기초자료 작성에 충실성을 기할 예정이다.

금년 수산분야는 경제적 규제(정부가 시장기능에 개입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 질서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규제)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주요 규제정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연안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을 대체건조, 개조할 경우 기존어선의 톤수와 같거나 그 이하의 어선만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톤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적용되도록 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을협동양식어장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낚시행위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허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 촉진 및 양식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 가공시설 등의 조사점검 시 피 조사기관에 합동 조사권 부여 및 조사주기 설정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업자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2절 수산통계 조사 활용*

수산통계(어업생산통계, 어류양식현황조사) 조사방법 및 문제점 개선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한편, 수산정책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신규 수산통계를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매월 조사 공표되고 있는 어업생산량 통계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일반해면어업의 표본수를 현행 2,000개에서 2008년까지 2,5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양식어업의 주요품종을 매년 확대 발굴하여 전수·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어류양식어업의 실태과약을 위하여 양식방법별·시설면적(수면적), 입식·폐사·출하량, 현사육량, 사료투입량 등을 2006년도에 조사 공표하였으며, 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또는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fs.fips.go.kr>)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확하고 다양한 수산통계 제공으로 실효성 있는 수산정책을 수립하고자, 향후 어류 양식어가(사업체)에서 양식에 필요한 「어류양식생산비 통계조사」와 수산물가공업, 유통업, 어획물운반업 등을 포함한 수산인 통계 조사를 개발한 후 정부승인통계로 확대 지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제3절 수산관계 법령 개정·폐지

1. 개 정

가. 어장관리법[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0호]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어업활동 중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게 하는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하며, 그 밖에 규제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되 그 요건을 보완하였다.

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27. 대통령령 제19305호]

「낚시어선업법」의 개정(법률 제7642호, 2005.7.29. 공포, 2006.1.30. 시행)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의무의 대상이 되는 소형 낚시어선의 규모를 3톤 미만으로 정하고,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 어선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경감하였다.

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605호]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품에 대하여 동 물품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직접 표시를 부착하는 외에 다른 물품과 구분·진열한 후 구별이 가능한 표시를 하도록 하여 지리적 표시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나타나게 하는 한편,

원양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 “원양산”의 표시 외에 해당 해역 명 또는 관할 국가 명을 함께 표시하게 하고, 그 밖에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였다.

라. 수산자원보호령[일부개정 2006.7.14. 대통령령 제19611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효과적인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구(漁具) 또는 어법(漁法)이 유사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데 사용하는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산동물의 생물학적 특수성과 지역에 따른 어획특성을 고려하여 조기류·대게 등에 대한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수온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맞추어 어구의 사용금지 구역과 기간을 일부 조정하고, 어린 물고기 등 수산동식물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포획이 금지되는 수산동식물의 체장(體長) 또는 체중(體重)의 기준을 강화하며, 그 밖에 「측량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리학적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그 표기방식을 개선하였다.

마.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27. 해양수산부령 제325호]

「낚시어선업법」의 개정(법률 제7642호, 2005.7.29. 공포, 2006.1.30. 시행)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게시 방법 및 게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태풍주의보·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게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낚시어선 및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2.6. 해양수산부령 제327호]

총 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포획량 보고를 함에 있어 어업자가 포획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때에도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총 허용어획량의 관리대상 어획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한편,

총 허용어획량의 관리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교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10. 해양수산부령 제33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비율과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및 어선원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2006년도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의 기본요율을 평균 10.3%(100톤 미만 9.2%, 100톤 이상 20.6%) 인상하여 반영하고,

보험급여 지급율 등을 반영하여 업종에 대한 할인·할증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어업재해보상보험의 수지개선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적합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9. 해양수산부령 제339호]

국무총리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농수산물유통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범위와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경매사의 교육부담을 완화하였다.

2. 폐 지

가.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폐지 2006.4.28.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부실용기의 유통에 따른 수산물의 훼손 및 가치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일부 규정이 포장재질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되는 한편,

수산물의 규격화 및 위생관리 등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그 유효성이 상실되어 이 규칙을 폐지하였다.

3. 2007년 입법계획

가. 제정법률

(1)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국내 양식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수산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외국산 수입 수산물의 병원균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양식어업의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양식수산물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피해예측이 곤란하며, 재해발생시 지원되는

복구비로 원상회복이 어려워 안정적인 영어활동이 곤란함에 따라 국가가 관여하는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보험대상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범위 및 재해종류를 정하고,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 및 양식재해보험기금 설치, 보험료지원 근거마련, 보험자와 관리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나. 개정법률

(1)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지정권자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 및 준공 전에 허가를 받아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하고,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재량행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내수면어업법

일부 민물양식장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이후(2005년 후반기)에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기술지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한 양식장 위생관리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용어 정의(패류채취 어구·어법 중 “기기”)를 구체화하여 조문해석에 대한 분쟁발생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3)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물 지리적 표시·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표시방법 및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표 119〉

2007년 수산분야 입법계획

구분	법안명	담당부서	비고
제정(2건)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양식개발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수산경영과	
개정(3건)	어촌어항법	어촌어항과	
	내수면 어업법	자원관리과	
	수산물품질관리법	품질위생팀	
증장기 입법(2건)	수산자원관리법(제정)	수산자원회복팀	
	낙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낙시관리팀	

제 2 장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및 정비*

제1절 배 경

금년 들어 해양수산부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그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해 온 동북아물류기획단을 정규직제화하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통합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해양 환경분야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수산물의 급속한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산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과 제도의 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현 조직체계의 철저한 진단분석에 근거한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와 신규 기구의 신설 등 조직, 인력의 확충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계 5위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략적, 거시적인 조직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나아가 새로운 해양시대를 선도할 선진 해양수산행정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혁신기획팀

제2절 주요 내용

1. 2006년 개편내용

2006년 3월 3일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인력개발본부를 해양수산인력개발원으로 독립시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산분야 협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대책팀을 국제협력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국제협력관실 조직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전 담당관 체제를 팀제로 전환하였다.

수산자원의 회복과 해양환경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근해 수산생물의 유전육종 및 생명과학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을 두는 등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연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센터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4본부13팀2단을 4본부13팀2단1소2 센터로 개편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2. 2007년 개편계획

주변국간에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수산·어업 분야에서도 WTO/DDA, FTA 등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대내외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성과중심의 강력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통합’과 ‘경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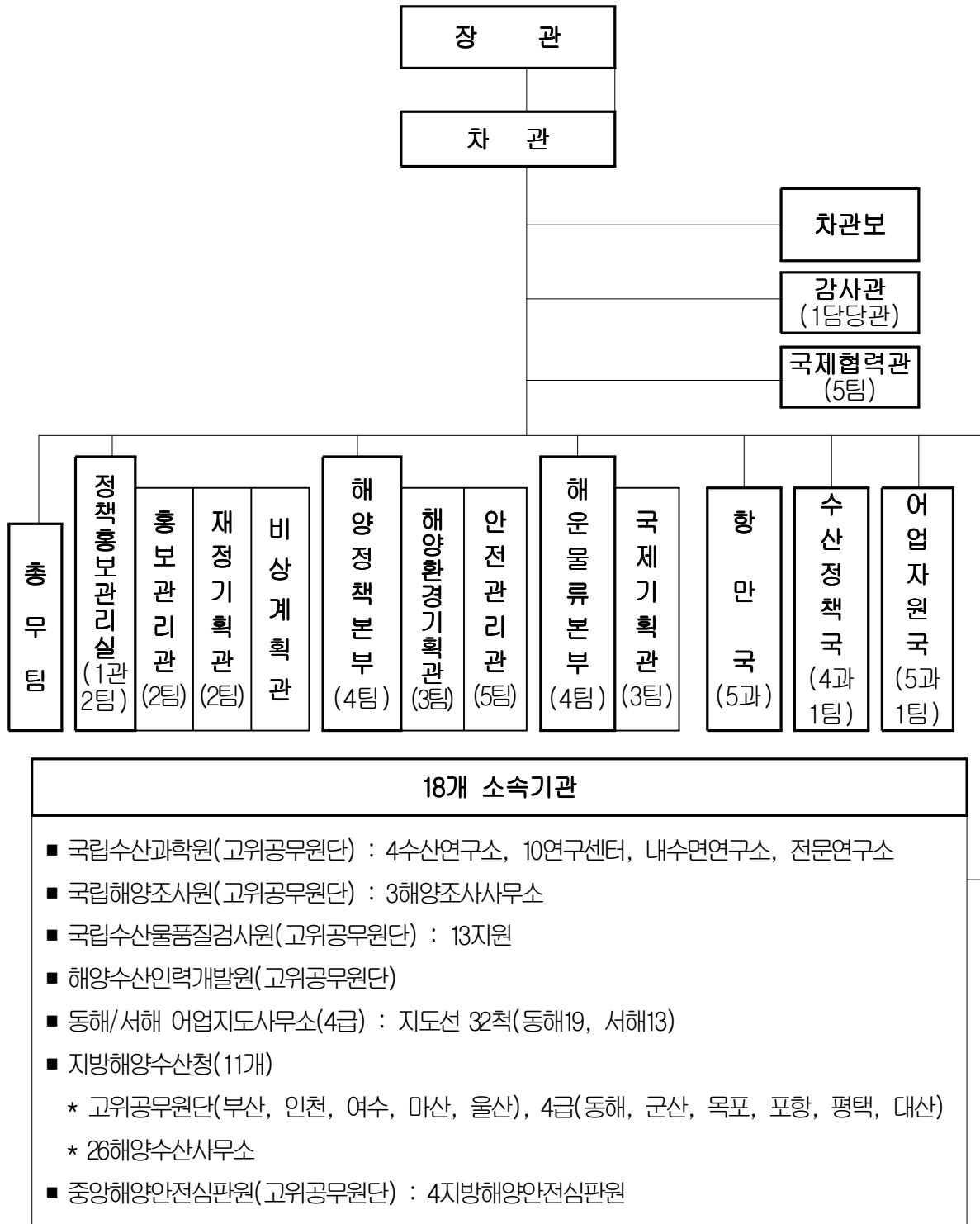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해양정책본부 및 해양환경기획관 신설을 계기로 통합해양체계를 구축하여 해양환경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FTA 등 개방화의 확대로 수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수산보조금 감축 등이 본격화 될 경우 어촌지역개발 및 어업인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개발에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패턴 및 유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공급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검사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동식물관리법, 수산업·어촌기본법, 낚시관리법 등 수산관련 법령이 정비된 이후 새로운 정책, 제도의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구의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7년 5월 현재, 해양수산부의 조직은 ‘1차관보 1실 2본부 3국 8관 49과 팀’으로서 총 정원은 4,225명이며, 이중 본부는 529명, 소속기관은 3,696명이다.

[해양수산부 조직도]

(2006년 6월 말 기준)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1. 국 민 경 제 주 요 지 표
2. 경 제 활 동 별 경 제 성 장 륜
3. 생 산 구 조
4. 총 인 구 와 어 가 인 구
5. 어 선 세 력
6. 수 산 물 생 산
7. 수 산 물 수 급
8. 수 산 물 수 출
9. 어 가 소 득
10. 어 업 총 수 입 및 경 영 비

1. 국민경제 주요지표

연도별	국민총소득 (GNI)		1인당GNI		디플레이터		성장기여율 ('00불변 %)	
	경상 (10억원)	경상 (억\$)	경상 (만원)	경상 (\$)	GDP ('00=100)	농림어업 ('00=100)	농림 어업	광공업
1980	38,117.7	627	100	1,645	27.9	36.0	177.8	16.1
1985	82,033.2	942	201	2,309	41.5	48.6	7.0	19.6
1990	186,559.8	2,635	435	6,147	58.2	71.3	△5.4	20.7
1991	225,659.7	3,076	521	7,105	64.4	75.7	1.4	20.5
1992	257,107.7	3,293	588	7,527	69.3	76.7	9.7	13.2
1993	290,087.7	3,614	656	8,177	73.7	82.7	△6.2	17.0
1994	339,343.1	4,223	760	9,459	79.5	93.3	0.3	28.1
1995	397,458.7	5,155	881	11,432	85.4	97.9	3.0	27.1
1996	446,856.4	5,553	982	12,197	89.8	100.5	1.6	20.2
1997	488,457.4	5,136	1,063	11,176	93.9	95.8	4.7	22.9
1998	476,245.4	3,404	1,029	7,355	99.4	95.7	4.4	26.3
1999	523,355.3	4,400	1,123	9,438	99.3	100.3	3.0	50.2
2000	576,160.0	5,096	1,226	10,841	100.0	100.0	0.7	48.6
2001	621,027.9	4,811	1,312	10,160	103.5	98.0	1.3	14.7
2002	685,069.0	5,475	1,438	11,493	106.5	101.0	△2.1	27.7
2003	725,420.3	6,086	1,516	12,720	109.4	104.4	△6.4	46.2
2004	779,380.5	6,809	1,625	14,193	112.3	103.0	5.6	65.1
2005	810,515.9	7,913	1,681	16,413	112.1	96.8	0.6	47.2
2006p	847,876.4	8,874	1,756	18,372	111.7	98.7	△1.8	48.7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2000년 기준

2. 경제활동별 성장률

연도별	국내 총생산 (GDP) ('00불변%)	농 립 어 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업	서비 스업
		(%)	농업	임업	어업				
1980	△1.5	△19.4	△26.2	18.4	4.0	△1.3	23.2	△3.6	3.4
1985	6.8	4.5	6.2	△6.9	5.1	6.4	11.1	4.3	7.9
1990	9.2	△6.5	△7.3	△7.8	0.1	8.3	17.0	25.5	7.8
1991	9.4	2.0	2.7	△16.2	9.9	8.5	10.1	14.0	8.6
1992	5.9	9.3	10.2	5.5	6.1	3.5	8.6	△0.1	7.1
1993	6.1	△6.0	△5.3	△14.8	△6.1	4.8	12.4	9.5	6.8
1994	8.5	0.4	△0.1	6.0	0.7	11.1	13.2	5.7	7.7
1995	9.2	5.3	8.2	△6.7	△8.1	11.2	6.1	7.7	8.1
1996	7.0	2.3	3.3	1.4	△4.8	6.2	10.3	8.9	6.2
1997	4.7	4.6	3.5	4.1	13.9	4.7	10.0	2.8	5.1
1998	△6.9	△6.4	△6.4	1.0	△10.1	△8.0	△0.3	△10.0	△3.9
1999	9.5	5.9	7.7	1.6	△6.1	21.5	9.0	△7.9	6.6
2000	8.5	1.2	3.0	△12.2	△7.0	16.7	12.8	△3.4	6.1
2001	3.8	1.1	1.3	△0.8	0.4	2.1	7.2	5.5	4.8
2002	7.0	△3.5	△3.2	△1.8	△7.6	7.4	7.7	2.8	7.8
2003	3.1	△5.3	△5.7	△6.5	0.3	5.5	4.7	8.6	1.6
2004	4.6	9.2	10.7	2.6	△2.6	11.0	6.6	1.8	1.9
2005	4.2	0.7	0.5	3.2	0.2	7.0	7.8	△0.1	3.4
2006	5.0	△2.6	△3.7	1.9	5.8	8.3	3.5	△0.1	4.2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2000년 기준

3. 생산구조

연도별	국내총생산 (GDP) (경상10억원)	농림어업 (%)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 업	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				
1980	38,774.9	16.2	13.8	1.1	1.2	26.4	2.2	8.0	47.3
1985	84,061.0	13.5	11.6	0.8	1.1	28.7	3.0	7.3	47.4
1990	186,690.9	8.9	7.8	0.4	0.8	28.1	2.1	11.3	49.5
1991	226,007.6	7.9	6.8	0.3	0.8	28.2	2.0	12.4	49.4
1992	257,525.4	7.7	6.7	0.3	0.7	27.2	2.1	12.0	51.0
1993	290,675.6	6.9	5.9	0.3	0.7	27.3	2.2	12.2	51.4
1994	340,208.3	6.7	5.7	0.3	0.7	27.8	2.2	11.6	51.7
1995	398,837.7	6.3	5.5	0.2	0.6	28.2	2.0	11.6	51.8
1996	448,596.4	6.0	5.2	0.2	0.5	27.2	2.0	12.1	52.8
1997	491,134.8	5.4	4.7	0.2	0.5	26.8	2.0	12.3	53.4
1998	484,102.8	5.1	4.3	0.3	0.5	27.8	2.3	10.6	54.2
1999	529,499.7	5.2	4.5	0.3	0.4	28.5	2.5	9.2	54.5
2000	578,664.5	4.9	4.2	0.2	0.4	29.8	2.6	8.4	54.4
2001	622,122.6	4.5	3.9	0.2	0.4	28.0	2.7	8.6	56.3
2002	684,263.5	4.1	3.6	0.2	0.3	27.2	2.6	8.6	57.5
2003	724,675.0	3.8	3.3	0.2	0.3	26.8	2.7	9.6	57.2
2004	779,380.5	3.8	3.2	0.2	0.3	28.9	2.4	9.3	55.5
2005	810,515.9	3.4	2.6	0.2	0.2	28.7	2.3	9.2	56.3
2006p	847,876.4	3.2				28.2	2.3	9.1	57.2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2000년 기준

4. 총인구와 어가인구

연도별	총 인 구		어 가 인 구			어 업 가 구	
	인 원 (천명)	증가율 (%)	인 원 (천명)	구성비 (%)	증가율 (%)	인 원 (천명)	가구당 인구(명)
1975	35,281	1.70	751	2.1	△2.0	128	5.88
1980	38,124	1.57	725	1.9	9.4	134	5.41
1985	40,806	0.99	602	1.5	△3.8	127	4.75
1990	42,869	0.99	496	1.2	0.0	122	4.08
1991	43,296	0.99	470	1.1	△5.2	120	3.92
1992	43,748	1.04	425	1.0	△9.6	116	3.66
1993	44,195	1.02	405	0.9	△4.5	114	3.56
1994	44,642	1.01	382	0.9	△5.7	110	3.46
1995	45,093	1.01	347	0.8	△9.2	104	3.32
1996	45,525	0.96	330	0.7	△4.9	102	3.25
1997	45,954	0.94	323	0.7	△2.1	100	3.24
1998	46,287	0.72	322	0.7	△0.3	99	3.26
1999	46,617	0.71	315	0.7	△2.2	98	3.22
2000	47,008	0.84	251	0.5	△20.3	82	3.08
2001	47,357	0.73	234	0.5	△6.7	78	3.00
2002	47,662	0.56	215	0.5	△8.2	73	2.95
2003	47,859	0.50	212	0.4	△1.4	73	2.92
2004	48,039	0.38	210	0.4	△1.4	73	2.89
2005	48,138	0.21	221	0.5	5.2	80	2.77
2006p	48,297	0.33	212	0.4	△4.1	77	2.75

자료 :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2006 농림어업총조사잠정집계결과(통계청)

주 : 총인구 및 어가인구는 추계치임

5. 어선세력

연도별	합 계			동 력 선			무동력선	
	척수 (천척)	톤 수 (천톤)	척 당 평균톤수 (톤)	척수 (천척)	톤 수 (천톤)	마 력 (천HP)	척수 (천척)	톤 수 (천톤)
1975	67.7	648	9.57	19.7	581	1,587	48.0	67
1980	77.6	771	9.94	51.1	740	2,462	26.5	30
1985	90.9	858	9.43	71.8	836	3,353	19.1	22
1990	99.7	977	9.80	79.4	955	5,449	20.3	22
1991	103.8	983	9.46	84.0	962	6,198	19.8	21
1992	94.1	959	10.19	76.8	940	6,910	17.3	19
1993	87.5	920	10.52	72.9	904	7,279	14.6	16
1994	77.4	940	12.15	70.1	930	8,135	7.3	10
1995	76.8	959	12.48	71.0	951	8,842	5.8	8.0
1996	75.2	972	12.92	69.2	965	9,192	6.0	7.0
1997	81.0	965	11.91	73.8	958	12,700	7.2	6.3
1998	91.0	978	10.75	82.8	972	13,067	8.2	6.6
1999	94.9	992	10.46	87.5	986	11,796	7.4	5.6
2000	95.9	923	9.63	89.3	918	13,597	6.6	5.1
2001	94.9	885	9.32	89.3	880	14,766	5.6	4.0
2002	94.4	817	8.65	89.3	813	17,274	5.1	4.0
2003	93.3	754	8.09	88.5	751	17,094	4.7	3.7
2004	91.6	729	7.96	87.2	725	16,743	4.4	3.6
2005	90.7	701	7.72	87.5	698	12,949	3.2	2.9

자료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6. 수산물 생산

(단위 : 천톤)

연도별	계	연근해	원 양	양 식	내수면
1965	637	554	9	74	-
1970	935	726	90	119	-
1975	2,135	1,208	566	351	9
1980	2,410	1,372	458	541	39
1985	3,103	1,495	767	788	53
1990	3,275	1,542	925	773	35
1991	2,983	1,304	874	775	30
1992	3,289	1,296	1,024	936	34
1993	3,336	1,526	741	1,038	31
1994	3,477	1,487	887	1,072	31
1995	3,347	1,425	897	997	29
1996	3,244	1,624	715	875	30
1997	3,244	1,367	830	1,015	32
1998	2,834	1,308	723	777	27
1999	2,910	1,336	791	765	18
2000	2,514	1,189	651	653	21
2001	2,665	1,252	739	656	18
2002	2,476	1,096	580	782	19
2003	2,487	1,096	545	826	20
2004	2,519	1,077	499	918	25
2005	2,714	1,097	552	1,041	24
2006	3,032	1,109	639	1,259	25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7. 수산물 수급

(단위 : 천톤)

연도별	공 급			합 계	수 요			1인당 소비량 (kg)
	생 산	수 입	재 고		국내소비	수 출	이 월	
1980	2,410	41	68	2,519	1,746	696	77	27.0
1985	3,103	91	85	3,279	2,318	867	94	37.2
1990	3,275	380	276	3,931	2,583	1,058	290	36.2
1995	3,348	948	395	4,691	3,150	1,170	371	45.1
1996	3,244	1,205	371	4,820	3,202	1,191	427	43.3
1997	3,244	1,189	427	4,860	3,187	1,193	480	43.6
1998	2,834	753	480	4,067	2,394	1,354	319	34.7
1999	2,911	1,332	319	4,562	2,748	1,232	582	38.3
2000	2,514	1,420	582	4,516	2,668	1,338	510	35.6
2001	2,665	1,806	510	4,981	3,260	1,080	641	42.9
2002	2,476	2,226	641	5,343	3,433	1,140	770	44.5
2003	2,486	2,268	769	5,523	3,578	1,202	743	44.7
2004	2,519	2,477	573	5,569	3,922	1,116	531	48.7
2005	2,714	2,557	531	5,802	4,169	1,121	512	48.1
2006	3,032	2,646	512	6,190	4,568	1,047	575	-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주 : 1인당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자료이며 순식품 기준임

8. 수산물 수출

(단위 : 백만\$)

연도별	합 계	활선어	냉동품	해조 염신품	통조림	원양어류	기타 수산물	어망류
1970	90	11	6	17	-	38	11	7
1975	429	62	58	32	10	183	54	30
1980	871	128	103	27	28	352	63	112
1985	970	155	124	97	55	328	132	79
1990	1,637	328	202	156	85	475	267	124
1991	1,634	349	272	156	95	513	258	-
1992	1,518	356	160	156	99	504	243	-
1993	1,497	343	144	154	123	454	279	-
1994	1,647	376	214	171	117	477	292	-
1995	1,722	395	237	157	127	489	316	-
1996	1,635	328	253	128	107	468	351	-
1997	1,493	299	167	119	100	495	313	-
1998	1,369	307	148	127	82	458	247	-

연도별	합계	활어	신선 냉장	냉동	훈제	건조	염장	조제	밀폐 용기	기타
1999	1,521	91	266	679	1	86	32	203	57	106
2000	1,505	85	270	670	1	80	28	193	46	132
2001	1,274	73	230	544	1	81	21	183	48	92
2002	1,160	68	153	549	1	79	20	156	43	91
2003	1,129	79	142	532	1	77	22	137	42	97
2004	1,279	92	144	655	5	80	24	147	40	92
2005	1,193	90	137	595	1	64	23	135	30	118

자료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9. 어가소득

(단위 : 천원)

연도별	어가 소득	어 업 소 득			어 업 외 소 득			이 전 소 득	비경상 소득
		순수익	어 업 총수입	어 업 경영비	소 계	겸 업 소 득	사업외 소 득		
1980	2,596	1,752	3,090	1,338	844	392	452	-	-
1985	4,869	2,815	6,047	3,232	1,553	1,045	508	501	-
1990	10,023	5,216	10,367	5,151	3,192	2,200	992	1,615	-
1991	11,309	5,285	10,255	4,970	3,776	2,431	1,345	2,248	-
1992	12,371	6,036	11,021	4,985	4,217	2,441	1,776	2,118	-
1993	14,432	6,222	12,276	6,054	4,685	2,583	2,102	3,525	-
1994	17,110	8,665	15,214	6,549	5,719	4,007	1,712	2,726	-
1995	18,780	9,437	17,152	7,715	6,075	3,975	2,100	3,268	-
1996	19,039	10,526	18,015	7,489	5,410	3,394	2,016	3,103	-
1997	20,331	11,768	19,389	7,621	5,820	3,822	1,998	2,743	-
1998	16,794	9,254	15,604	6,350	5,201	3,495	1,706	2,339	-
1998	16,794	9,254	15,604	6,350	5,201	3,495	1,706	2,339	-
1999	18,401	8,475	16,745	8,270	6,243	4,415	1,828	3,683	-
2000	19,618	8,428	17,011	8,583	7,431	5,175	2,252	3,756	-
2001	21,463	8,556	18,980	10,424	8,425	5,586	2,838	4,482	-
2002	21,590	9,060	17,846	8,786	7,944	4,724	3,220	4,586	-
2003	23,916	10,741	23,114	12,373	8,619	4,176	4,443	861	3,695
2004	26,159	11,959	25,144	13,185	9,168	4,350	4,817	1,477	3,555
2005	28,028	11,950	26,576	14,626	9,399	4,559	4,840	2,245	4,434
2006	30,006	11,603	25,910	14,307	10,361	5,082	5,279	2,728	5,315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① 어가소득=경상소득(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② 2004년 조사에서 비경상소득 중 직계혈연 타 가구에서 받은 일회성 보조금은 이전소득으로 분리

10. 어업총수입 및 경영비

□ 어업총수입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어 업 수 입				재고증감
		소 계	어 로	양 식	기 타 (수산가공)	
1980	3,090	3,092	2,133	848	111	△2
1985	6,047	6,035	4,588	1,211	236	12
1990	10,367	10,003	6,008	3,043	952	364
1991	10,255	10,241	5,613	3,517	1,111	14
1992	11,021	11,031	6,746	2,747	1,538	△10
1993	12,276	12,285	8,075	2,627	1,583	△9
1994	15,214	15,202	10,651	3,287	1,264	12
1995	17,152	17,180	11,740	3,896	1,544	△27
1996	18,015	18,014	12,683	3,750	1,581	1
1997	19,389	19,392	13,217	4,641	1,534	△3
1998	15,604	15,602	10,383	3,747	1,472	2
1999	16,745	16,745	8,784	6,690	1,271	-
2000	17,011	17,011	8,868	7,068	1,075	-
2001	18,980	18,980	9,579	7,424	1,977	-
2002	17,846	17,846	9,515	7,375	956	-
2003	23,114	23,114	14,421	8,012	681	-
2004	25,144	25,144	16,116	8,419	609	-
2005	26,576	26,576	15,942	10,090	544	-
2006	25,910	25,910	16,198	9,229	483	-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수산물 가공수입 '02년까지 어업수입의 기타로 분류, '03년부터 겸업수입으로 분류 변경 ('99 이전) 어업조수입 → ('99 이후) 어업총수입으로 변경

□ 어업경영비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어 업 지 출				감 가 상각비	재고생산 자재증감
		소계	어 로	양 식	기 타		
1980	1,338	1,225	985	221	19	114	△1
1985	3,232	3,031	2,592	362	77	198	3
1990	5,151	4,792	2,779	1,609	404	365	△6
1991	1,9700	4,557	2,550	1,569	438	369	44
1992	4,985	4,502	2,702	1,233	567	487	△4
1993	6,054	5,573	3,745	1,306	522	477	4
1994	6,549	5,979	3,954	1,737	288	546	24
1995	7,715	7,212	4,525	2,330	357	510	△7
1996	7,489	6,801	4,649	1,739	413	648	40
1997	7,621	6,930	4,829	1,654	447	697	△5
1998	6,350	5,567	3,678	1,346	543	673	111
1999	8,270	8,270	3,318	3,661	1,291	-	-
2000	8,583	8,583	3,292	4,083	1,208	-	-
2001	10,424	10,424	4,092	4,670	1,662	-	-
2002	8,786	8,786	3,579	3,924	1,283	-	-
2003	12,373	12,373	7,732	4,641	-	-	-
2004	13,185	13,185	8,534	4,651	-	-	-
2005	14,626	14,626	9,007	5,619	-	-	-
2006	14,307	14,307	8,683	5,624	-	-	-

자료 : 통계청, 2006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수산물 가공지출 '02년까지 어업지출의 기타로 분류, '03년부터 겸업지출로 분류 변경

2007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7년 9월 일 인쇄

2007년 9월 일 발행

편집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발행 : 해양수산부(☎(대) 02-3674-6813)

인쇄 : 크리디자인(☎2273-1775)

〈비매품〉